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2026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집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GYEONGGIDO ASSEMBLY

2026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집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CONTENTS>

Ⅰ. 경기도의회 관련 자치법규

총무과 소관

1.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9
2.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 11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 15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19
5.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22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24
7.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 25
8.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8
9. 경기도의회 위임전결규정 ····· 30
10.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 ····· 51
11. 경기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 58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62
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 66
1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운영규정 ····· 71
15.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 73
16.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76
17.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 78
18.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 82
19.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84
20.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 88
21.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9
22.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91
2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 93
24.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94
25.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 96
26. 경기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 99
27.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 102
28.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05
29.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108
30.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110
31.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112

인사과 소관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 114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123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133
4.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137
5.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139
6.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 ····· 140
7.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 141
8. 경기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142
9.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147
10. 경기도의회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예방 지침 ····· 151
1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159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167
1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169
1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172
15.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규정 ····· 183
16.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84
17.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87
18.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188
19.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190
2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94
2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200
22. 경기도의회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 202
23.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204
24. 경기도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206
25. 경기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209

언론홍보과 소관

1.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 ····· 217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 219
3.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 222

디지털의사과 소관

1. 경기도의회 건의안 ·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229
2. 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230

3.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234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236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45
6.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249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 250
8.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277
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279
10.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289
11.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 291
12.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 294
1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297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299

공간정보화과 소관

1.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305
2.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 ····· 308
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 309
4.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 318

법제과 소관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321
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 326
3.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시행규칙 ····· 331
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 332
5.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341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346
7.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규정 ····· 349
8.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50
9.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규정 ····· 352
10. 경기도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 354
11.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평가지침 ····· 356
12.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 361
13.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364
14.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367
15.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 369
16.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372

예산분석과 소관

1.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74
2.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379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81

의정지원과 소관

1.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383
2.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385
3.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 389

경기도청 소관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 391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394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401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04
5.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405
6.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 407
7.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410
8.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 411

II. 헌법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 423
2. 지방자치법 ····· 439
3. 지방자치법 시행령 ····· 496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528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1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45
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560
8. 지방공무원법 ····· 563
9. 지방재정법 ····· 605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 640
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80
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681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13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745

I

경기도의회 관련 자치법규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1. 경기도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및 경기도민이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및 보조금)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경기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경기도의 사회복지문제·환경문제·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의 발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

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1.1.8.>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전문개정 2021.1.8.]
3.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비치한다. [전문개정 2021.1.8.]

⑤ 삭제 <2021.1.8.>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8.]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8.>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1.1.8.>

제7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비치 및 관리) ① 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과에, 상임위원회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과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5.9.26.>

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1.1.8.]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처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6.>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		규 격
청인	경기도의회인	3.6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	경기도의회의장인	3.0센티미터 정사각형
	경기도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경기도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각종 경기도의회위원회위원장인	2.7센티미터 정사각형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인	2.7센티미터 정사각형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2.0센티미터 정사각형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 · 일상경비 · 세입세출외현금 · 물품 등)		1.8센티미터 정사각형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시행 2025. 7. 18.] [경기도조례 제8547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 과정에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
2.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도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 실현 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의회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도민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정과 관련된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의회

제5조(의회의 사명)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6조(의회의 역할) 의회는 기본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및 의사 결정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3.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하여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4.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운영 상황 감시 및 평가
5. 그 밖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제7조(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도민의 의정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정책 입안과 정책 실행 등 각 단계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경제 상황,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 활동에 자주성을 존중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의회 운영의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도민이 제출한 청원 또는 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도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의회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정책 입안, 정책 제언과 같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한 조사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회의
2.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정책 제언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조사·연구
3. 의원의 조사·연구와 도정 운영에 필요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자료 등의 구비
4. 결산 심사 시 필요한 시정요구 등

제10조(의회사무처) ① 의회는 의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회 활동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및 조직 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의회도서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11조(회의일수)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매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13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제14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나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안의 제출·발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1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장 의원

제16조(의원의 사명) 의원은 도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17조(의원의 역할)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1. 의회의 본래 기능인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
2.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3.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제18조(윤리와 품위의 유지) 의원은 도민의 선거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직자임을 인식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의회와 도지사 등과의 관계

제19조(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도지사, 교육감과의 권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제20조(감시 및 평가) 의회는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관하여 감시하는 책무를 가지며, 안건 심의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도지사, 교육감의 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책무가 있다.

제21조(의회에 대한 설명) 도지사,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도정에 관한 기본 계획 등 중요한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하여 기본 방침, 기본 계획 등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고 의회에 그 내용을 설명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2조(인사청문회)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도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회의 예산)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요구 등) ① 의회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의회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0.] [경기도조례 제7977호, 2024.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4조(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제5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21.10.6.>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록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 둘 것 <개정 2015.3.3.>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개정 2015.3.3.>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정보 공표) ①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 내용에는 집행 일시, 집행 내용, 사용처, 집행 대상자, 지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전문개정 2015.3.3.]

제7조(정보공개 범위)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 참석 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 결재 서류 <개정 2015.3.3.>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명 자료 <개정 2015.3.3.>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개정 2015.3.3.>

② 청구인이 사본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21.10.6.>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전문개정 2021.10.6.]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본조신설 2021.10.6.]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9.07.01., 2023.1.2.>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3.1.2.>

제3조(지원신청) 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4.11.7., 2023.1.2.>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개정 2023.1.2.>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신설 2023.1.2.]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1.7.] [제3호에서 이동 <2023.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4. 22.] [경기도의회규칙 제13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및 처리)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빙자료와 함께 도의회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의한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보조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4., 2025.4.22.>

부칙 <202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행하는 표창과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발전 또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지원에 공헌이 있는 경기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기도외 거주자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②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개정 2023.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기도정 또는 의정활동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9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경기도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처장, 각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회 의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1.8.1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5.5.7.>

② 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 의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인사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인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7.3.13., 2025.5.7., 2025.9.26.>

③ 공무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 의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8명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0., 2025.5.7.] <개정 2025.9.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국장이 위원장이 되며, 의정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26.>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5.5.7.]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 수상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7조(표창취소) 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별도 규정 등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운영을 체계화 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이 조례에서 “현장 의정활동”이라함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서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도민의 민원·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 활동을 말하고, 현장 의정활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참여활동
2. 의회(도의회 의장, 교섭단체,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불우이웃 돕기, 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
3.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

제3조(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의회 교섭단체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의회 현장의정활동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한다.

② 의회사무처장은 1월중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현장의정활동운영계획을 의원에게 홍보하며, 솔선 참여를 권장한다.

③ 연간 현장의정활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등
2. 의회사무처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처는 의회현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수요조사와 자료의 유지관리, 참여의원의 안전대책, 언론홍보, 현장 활동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처장은 연간 현장의정활동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연도 말에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현장의정활동 성과가 우수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2. 현장의정활동 지원 및 관리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

제6조(여비)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의 여비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경기도의회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6. 4. 1.] [의회훈령 제82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2021.5.25., 2025.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의장, 위원장, 사무처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 “전결”이라 함은 의장, 위원장, 사무처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개정 2021.5.2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와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의 결재는 의장,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 1, 사무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개정 2021.5.25.>

②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 1, 별표 2의 공통사항 전결권자 중의 과장은 동일 직급에 상응하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2.10.31., 2021.5.25., 2021.5.25., 2025.9.19.>

제5조(협의)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5.>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 위원장, 사무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5.25.>

제7조(전결권자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조신설 2021.5.25.]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4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9.]

부칙 <2026.4.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26.4.1.>

의장, 위원장 권한사무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공통사항>						
1. 방침	1. 주요업무 기본방침결정 및 변경					○
	2. 방침 결정사항 및 변경사항 통보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계획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수립		○			
	다. 자료수집	○				
3. 각종 위원회 · 협의회 관련 사항	1. 운영계획 수립					○
	2. 위원회 · 협의회 구성 및 위 · 해촉					○
	3. 회의 개최계획 수립				○	
	4. 회의 결과보고				○	
	5. 기타 위원회 ·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문서	1. 접수문서 공람					
	가. 의회관련 주요문서					○
	나. 기타 일반문서					
	1) 중요사항				○	
	2) 일반사항		○			
	3)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				
	2.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 경미사항		○			
	3.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조회, 회람	○				
	4.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처리					
	가. 중요사항 보고				○	
	나.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보고		○			
5. 법규	1.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 정비					○
	2.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			
	3. 고시문, 공고문의 결정				○	
	4. 의안검토 및 과제 처리 의뢰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6. 휴가, 출장 등	1. 연가·공가·특별휴가·유연근무 등의 허가(병가 제외)					
	가. 사무처장				○	
	나. 의정국장			○		
	다. 과장급(4급) (단, 4급 전문위원은 처장 전결)			○		
	라. 팀장급(5급)		○			
	마. 6급 이하	○				
	2. 병가·출장 허가					
	가. 사무처장					○
	나. 의정국장				○	
	다. 과장급(4급) (단, 4급 전문위원은 처장 전결)			○		
	라. 5급 이하		○			
	3. 직원 복무 관리		○			
	4.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계획, 결과보고, 허가신청)					
	가. 사무처장					○
	나. 의정국장				○	
	다. 4급(단, 4급 전문위원은 처장 전결)			○		
	라. 5급 이하		○			
7. 지침관련	1. 지침, 수칙(일반행정 관련사항)등의 제정 및 개정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8. 기타일반	1. 사무분장 조정					
	가. 사무의 신설				○	
	나. 부서 간 사무조정			○		
	다. 소관 부서의 사무분장		○			
	2. 사무 인계·인수					
	가. 의정국장				○	
	나. 4급간			○		
	다. 5급간		○			
	3. 공무직 관리		○			
	가. 채용계획 수립			○		
	나. 고용 및 관리		○			
	4. 공무직의 연금부담금 납부		○			
	5. 직원 비밀취급인가 요청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총무과>						
1. 의회운영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					○
	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정					○
	3.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운영					○
2. 위임전결규정 개정	1. 위임전결규정 개정				○	
3. 의정활동지원	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
	2. 의원 행사 추진(체육행사, 개원기념식)					○
4. 각종 국내 의전에 관한 사항	1. 의전업무 계획 수립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 대외행사 의전 수행		○			
	3. 다른 기관 및 부서의 의전행사 협조		○			
	4. 오찬 또는 만찬 행사의전		○			
	5. 의회 관련 축사, 격려사 등 작성					○
	6.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 수립					○
	7. 의장 ·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			
	8. 기념품 · 의전물품 관리		○			
5. 국제교류 운영	1.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					○
	2.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					○
	나. 심사위원 위·해촉					○
	다. 심사위원회 운영					○
	3.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사무처장)					○
	나. 공무국외출장 허가(사무처장 외)				○	
	다. 심사위원 위·해촉				○	
	라. 심사위원회 운영				○	
6. 상벌	1. 의장 포상수여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다. 상장(후원명칭사용) 승인				○	
	2. 대외기관 표창대상자 추천					
	가. 의원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6. 상벌	나. 직원				○	
7.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무처 내 부서 간 정원 조정				○	
	2. 부서 내 6급이하 정원 재배치				○	
8. 총무일반	1.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
	나. 출입증 발급		○			
	다. 보안점검	○				
	라. 당직명령 및 대직관리	○				
	2. 민방위 업무					
	가. 민방위 대원의 전·출입 통보	○				
	나. 민방위대 편성	○				
	다. 비상소집				○	
	3. 청사 방호 종합계획 수립					○
	4. 청원경찰 임용				○	
	5. 간부회의 운영				○	
	6. 의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			○		
	7. 각종 의원 연찬회 지원				○	
9. 사무관리	1. 기록물 보존관리					
	가. 기록물 보존		○			
	나. 기록물 폐기		○			
	2. 공인관리					
	가. 공인 신조 및 폐기		○			
	나. 공인 관리일반	○				
	3. 행정정보공개 일반		○			
10.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	
	2. 성과관리 평가결과보고				○	
11. 후생복지	1.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가. 후생복지제도 종합계획 수립				○	
	나. 후생복지제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다.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라. 후생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			
12.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	1.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					
	가. 현장 도의회 계획 수립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2.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	나. 현장 도의회 조치결과보고					○
13. 청원 및 진정 처리	1. 청원의 접수 및 처리					
	가. 청원 접수 및 수리 여부 결정					○
	나. 청원 보완요구		○			
	다. 청원 회부					○
	라. 청원 처리결과 보고					○
	마. 청원 처리결과 통지				○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	
	2.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가. 다수인 관련 민원(5인 이상) 등 중요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		
	나. 일반 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		○			
	다. 진정서 불수리		○			
14. 경기도의회 지역 상담소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2. 공공 · 민간건물 허가사용 · 임대차 이전 계약체결			○		
	3. 공공건물 사용허가 신청		○			
	4. 민간건물 임대차 계약 연장		○			
	5. 사무직원 채용 기본계획				○	
	6. 사무직원 채용 · 관리 등		○			
	7. 상담관 위 · 해촉 등					
	가. 상담관 위 · 해촉			○		
	나. 상담관 사임원 접수		○			
	8. 상담소 직원 및 상담관 직무 역량강화(교육) 관련			○		
	9. 도민민원 접수 · 이송 · 처리 등		○			
15. 서울사무소 지원 및 관리	1. 서울사무소 임대차 계약			○		
	2. 서울사무소 직원 채용 · 관리		○			
<인사과>						
1. 공무원 임용 등	1.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5급 이상 공무원 임용(복직 · 복귀, 퇴직 포함)					○
	3. 5급 이상 공무원 휴직 · 파견 · 교육 발령					○
	4. 5급 공무원 승진교육 대상자 선발					○
	5. 6급 이하 공무원 임용(복직 · 복귀, 퇴직 포함)				○	
	6. 6급 이하 공무원 휴직 · 파견 · 교육 발령				○	
	7. 일반임기제 5급 이상 임용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 공무원 임용 등	8. 일반임기제 5급 이상 휴직 · 복직 · 퇴직 임용					○
	9. 일반임기제 6급 이하 임용				○	
	10.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휴직 · 복직 · 퇴직 포함)			○		
	11. 일반임기제 6급 이하 휴직 · 복직 · 퇴직 임용				○	
	12. 공무원(임기제 등 포함) 재발령			○		
	13.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			○		
	14.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시행					○
	15.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			
	16. 도의회 전입시험 운영			○		
	17. 대우공무원 발령		○			
2. 공무원 인사교류	1. 5급 이상 공무원 인사교류					○
	2. 6급 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	
3. 공무원 징계	1.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처분 등)					○
	2. 6급 이하 공무원 징계(처분 등)				○	
4. 비위문책에 관한 사항	1. 공무원 비위행위혐의 조사의뢰		○			
	2. 비위공무원 관련 문책					
	가. 5급 이상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문책					○
	나. 6급 이하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문책				○	
	3. 징계의결 요구					
	가. 5급 이상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
	나. 6급 이하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	
	4. 심사 또는 재심청구				○	
	5. 문책 생략(훈계, 주의 등)			○		
5. 공무원 평정 및 평가	1.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 가산점 평정				○	
	2. 5급 이하 공무원 경력평정				○	
	3.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					○
	4. 6급 이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				○	
	5.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	
	6. 공무원 역량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6. 포상	1. 의장 포상수여(공무원)				○	
	2.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3. 대외기관 표창대상자 추천(공무원)				○	
7. 공무원 보수 · 연금	1. 5급 이상 성과연봉 책정 및 확정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7. 공무원 보수·연금	2. 6급 이하 성과상여금 결정 및 지급				○	
	3.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책정 및 확정				○	
	4. 공무원 호봉 획정(정기승급)		○			
	5. 공무원 각종 수당 관리		○			
	6. 퇴직(유족)급여 청구 및 연금부담금 납부	○				
	7. 사망조위금 청구 및 지급	○				
	8. 학자금 연금 대부	○				
	9.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				
	10. 재직기간 합산 승인 신청		○			
	11.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 등 지원		○			
8. 인사제도 개선 등	1. 인사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계획 수립					○
	2. 공무원 고충처리 사무			○		
	3. 공무원 센서스 실시		○			
	4.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대장 관리	○				
	5. 인사기록의 이관 및 인수	○				
	6. 인사관리 전산 및 통계	○				
	7. 공무원 전력 조회		○			
	8. 공무원증,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9.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			
	10. 신원조회 의뢰		○			
9. 공무원 임용 시험 등	1. 기본계획(위탁 계획) 수립					○
	2.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
	3.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	
	4. 필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5.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지정			○		
	6. 필기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7. 시험위원(면접위원 등) 위촉		○			
	8. 임용시험 문제 심의 및 폐기		○			
	9.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				
10. 공무원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장·단기 국외훈련 추진				○	
	3. 국내 장기교육 추진				○	
	4.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추진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0. 공무원 교육훈련	5. 상시학습 운영지침 수립			○		
	6. 직무교육훈련 추진		○			
	7. 교육 수료 통보	○				
	8. e-HRD 시스템 운영			○		
	9. 자체교육 계획 수립			○		
11. 복무 관리	1. 직원 복무관리 및 점검 계획				○	
	2. 기타 복무 관리			○		
	3. 공무원 겸직 허가					
	가. 4급 이상			○		
	나. 5급 이하		○			
12.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1.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
	2.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4. 청탁금지제도 운영			○		
	5.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6. 부패영향평가 운영		○			
	7. 갑질 행위 근절계획 수립				○	
	8.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시책 추진			○		
	9.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청렴, 갑질행위근절,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교육 추진			○		
13. 의원신분변동	1. 공직자 등 재산등록 관련 사항		○			
	2. 의원 등록관리					
	가. 의원등록 안내 및 서류 접수		○			
	나. 의원 기록카드 관리	○				
	다. 의원 배지 제작 배부	○				
	라. 의원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				
	3. 의원 사직허가					○
	4.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가. 신고의무고지 및 신고서 접수		○			
	나. 신상변동사항 일반	○				
	5. 의원 궐원 통지		○			
	6. 의원 겸직 관련 사항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4. 의정활동 지원	1. 의원 교육 및 연수 운영					
	가.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
	나. 의원 교육연수위원회 운영				○	
	다. 의원 자체교육(법정의무교육) 등 운영			○		
	라. 의원 공공 · 민간위탁교육 운영		○			
	마. 의원 맞춤형교육 운영		○			
	2. 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 국 · 내외활동, 외부강의 · 회의, 영리행위, 금전 거래(부동산대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접수 및 처리					○
	나. 자문위원회 자문의뢰					○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
	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운영					○
	마. 의원 징계요구					○
	바. 수령금지 금품 등의 반환처리					○
	사.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 관리 및 처리결과 통보		○			
<언론홍보과>						
1. 도의회 언론(홍보) 종합계획	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운영					○
	2. 언론홍보 종합계획 수립 운영				○	
	3. 언론사 광고계획 추진				○	
2. 의정활동 홍보 및 인터뷰	1. 홍보매체 활용 의정현안 홍보(언론,방송,인터넷)			○		
	2. 의정 인터뷰 및 대담자료 작성		○			
	3. 언론 보도자료 관리	○				
	4. 보도자료 작성 제공	○				
	5. 기타 의정 홍보자료 작성 관리	○				
3. 간행물 발행	1. 의정간행물 제작 기본계획 수립				○	
	2. 의회소식지 편집 최종시안 보고				○	
	3. 기타 간행물 제작에 관한 사항				○	
4.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1.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		
5. 의정활동 사진 · 영상촬영 및 기록관리	1. 홍보 사진 및 영상물 관리		○			
	2. 의정활동 홍보영상 촬영 및 자료관리	○				
	3. 스튜디오 및 영상 장비 운영 관리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6.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1. 미디어 및 모바일을 통한 홍보					
	가. 웹진 제작			○		
	나. SNS등 미디어 및 모바일 홍보			○		
	2. 홍보대사 구성 및 위촉					
	가. 홍보대사 운영계획				○	
	나. 홍보대사 운영결과 보고				○	
	3.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소셜TV, 의정뉴스 등)	○				
	4. 홍보콘텐츠 제작			○		
	5. 대표영상 제작				○	
7. 미디어홍보 기획	1. 뉴미디어분야 의정홍보 전략계획 수립				○	
	2. 뉴미디어분야 의정홍보 방안 세부실행계획 수립			○		
	3. 생활매체 활용 의정홍보			○		
8. 출입기자 취재지원 및 브리핑룸 운영 관리	1. 브리핑룸 및 언론사 취재지원		○			
9. 도민인식 조사	1.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기본계획				○	
	2.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세부추진 계획		○			
<디지털의사과>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2. 집회요구서 접수처리					○
	3. 회의소집 공고					○
	4. 본회의 업무지원					
	가. 의장단 선거					○
	나.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
	다. 의사진행자료 작성		○			
	라.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
	마. 본회의장 의석 배정					○
	바. 일상적인 사항의 본회의 보고		○			
	5. 의원의 신분변동					
	가. 상임(특별)위원 임명추천 및 사임					○
	나. 의원의 교섭단체 변동에 관한 사항					○
	6. 의원 출결					
	가. 본회의 출석사항		○			
	나. 청가허가 및 결석처리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 의사관리	다. 장기 결석의원 출석요구					○
	7. 본회의 집행부 출석답변					
	가.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 통지					○
	나. 질문요지서 송부		○			
	8. 본회의 및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관리					
	가.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나.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관리		○			
	9.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다. 운영결과 보고			○		
	10. 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운영관리				○	
	11. 의회 견학신청 접수 및 안내		○			
	12. 청년행정인턴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운영결과 보고			○		
	13.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
	14. 본회의장 질서유지 및 방청허가					
	가.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		
	나. 경호요청			○		
	다. 장기방청 허가			○		
	라. 일반방청 허가		○			
	마. 단체방청 허가		○			
2. 의안관련	1. 의안의 접수 및 처리					
	가. 의안 접수 및 철회					○
	나. 의안 배부(우편)		○			
	다. 의안 회부					○
	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
	마. 의안 이송 및 철회 통지		○			
	바. 의안 정보시스템 의안 등록	○				
	사. 이송의안 조치(공포 등) 결과 접수처리	○				
	2. 위원회 활동지원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가. 서면질문서 및 서류제출요구서 송부			○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가. 감사 및 조사계획서 통지					○
	나. 감사 및 조사자료 제출 요구		○			
	다. 감사 및 조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		
	라. 감사 및 조사 현지확인실시 통보			○		
	마. 감사 및 조사 결과보고					○
	바. 감사 및 조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접수·배부		○			
	사.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 위촉승인			○		
	4. 의정 도민참여단 운영					
2. 의안관련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다. 모니터 교육 훈련		○			
	5.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가. 인사청문 요청 접수 및 보고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다. 인사청문 결과 보고 및 통지					○
	6. 경기도의회 사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7. 의정백서 발행				○	
	1. 회의록 발간 및 의결문서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원고복사 및 열람허가(비공개 회의록 제외)		○			
	다. 회의록 통보		○			
3. 기록업무	라. 전자회의록 등록·관리		○			
	마.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열람					○
	바. 폐회 중 회의록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					○
	사. 보존회의록 확정 및 영구보존					○
	아. 불게재 신청					○
	자. 자구정정 신청 접수처리(본회의 제외)		○			
<공간정보화과>						
1. 청사관리	1. 청사 시설물 등 관리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 청사관리	가. 청사공간 추가확보 계획 수립					○
	나. 의원실 배정 계획 수립					○
	다. 청사시설 관리계획 수립			○		
	라. 청사시설 유지관리·보수계획 수립 및 추진		○			
	마. 도의회 생활관 관리		○			
	바. 청사 청소 관리		○			
	사. 청사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지기록	○				
2. 의정연수원 조성에 관한 사항	1. 의정연수원 기본계획 수립					○
	2. 의정연수원 세부계획 수립				○	
	3. 의정연수원 관련 위원회 운영		○			
	4. 의정연수원 그 밖의 사무		○			
3. 의정정보화	1.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나. 의정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다. 의정정보화 사업현황 관리		○			
	2.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					
	가.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 계획 수립			○		
	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 업무 추진		○			
	3.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관리		○			
	나. 정보시스템 성과관리 및 데이터 품질 관리		○			
	다.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4. 의정포털시스템 운영관리					
	가. 의정포털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나. 의정포털시스템 중요 기능개선			○		
	다. 의정포털시스템 운영관리		○			
	5. 의회홈페이지 운영관리					
	가.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		
	나. 의회홈페이지 중요 기능개선			○		
	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관리		○			
	6.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운영관리					
	가.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중요 기능개선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3. 의정정보화	다.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운영관리		○			
	7. 회의중계 및 회의록시스템 운영관리					
	가. 회의중계 및 회의록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나. 회의중계 및 회의록시스템 중요 기능개선			○		
	다. 회의중계 및 회의록시스템 운영관리		○			
4. 방송·음향 장비 관리	1. 방송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가. 방송통신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나. 방송통신시스템 운영관리		○			
	2. 방송 음향장비 운영관리					
	가. 방송 음향장비 운영계획 수립			○		
	나. 방송 음향장비 운영관리	○				
5. 정보통신 장비 관리	1.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가. 정보통신장비 운영계획 수립			○		
	나.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		○			
	2. 통신망 유지관리		○			
	3. 문자전송시스템 및 팩스관리	○				
	4. 도의원 휴대용컴퓨터(태블릿, 노트북) 지원					
	가. 도의원 휴대용컴퓨터 운영계획 수립			○		
	나. 도의원 휴대용컴퓨터 운영관리		○			
	5. 도의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가. 도의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계획 수립			○		
	나. 도의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6. 차량관리	1. 차량관리					
	가. 차량 관리계획 수립			○		
	나. 배차결정	○				
	다. 차량불용 결정		○			
	라. 차량승인신청 및 차종변경		○			
<법제과>						
1. 의회 연구활동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
	2.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가.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나. 연구단체 운영 및 관리		○			
	3. 연구활동 지원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1. 의회 연구활동 지원	가. 연구용역 계획 수립		○			
	나. 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			
	다. 연구용역 결과 활용실적 및 계획서 보고		○			
2. 법제사무 처리	1. 도의회 규칙의 공포					○
	2. 도의회 훈령 · 예규의 발령					○
	3. 도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4. 도의회 규칙 · 훈령 · 예규의 공포 · 발령대장 관리		○			
	5.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			○		
3. 의회 입법 · 법률 고문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
	2.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
	3. 법률자문 수행		○			
4. 도의회 쟁송 및 의원 소송비 지원	1. 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
	2. 도의원 피소시 소송비 지원					○
5. 의원 및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1. 지방의회 입법관련 자료의 수집 · 분석		○			
	2. 의원(상임위)발의 자치법규안 및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		○			
	3. 자치법규 자체 발굴		○			
6. 입법정책자료 발간 및 배포	1. 최근 입법동향 조사 및 책자 발간 · 배포		○			
	2. 기타 입법정책자료의 작성 및 발간 · 배포		○			
7. 입법토론회 지원	1. 조례 및 정책 입안관련 세미나 · 토론회 개최		○			
8. 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
	2. 전문가 위 · 해촉					○
9. 자치분권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
	2. 자치분권 토론회 기획 및 지원			○		
	3. 자치분권 교육			○		
10.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	1.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관리		○			
	2. 도서류 구입 및 관리		○			
	3. 도서 대출과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				
11. 주민조례청구	1. 주민조례청구 접수 및 처리					○
<예산분석과>						
1. 예산 및 결산분석	1. 기본계획 수립				○	
	2. 예산 · 결산 분석 및 분석보고서 발간		○			
	3. 예산 및 결산 분석 관련 교육, 행사 등 개최		○			
2. 의안의 비용추계	1. 비용추계 작성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사무처장	
2. 의안의 비용추계	2.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			
3. 의회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2.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위·해촉					○
	3. 자문의뢰 및 결과 관리		○			
4.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1. 결산검사위원 위·해촉					○
5.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분석	1. 기본계획 수립			○		
	2. 재정정책 사업분석 및 자료 요구		○			
	3. 예산정책정보 수집·제공		○			
<의정지원과>						
1. 정책지원관 배치·운영	1. 정책지원관 배치 기본계획 수립					○
	2. 정책지원관 배치(수시)에 관한 사항			○		
	3. 정책지원관 운영 지침(매뉴얼) 관리				○	
2.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1. 자체 직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2. 자체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3. 정책지원관 자체평가	1. 정책지원관 자체 평가 계획 수립					○
	2. 평가지표(자체) 개발 등			○		
4.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1.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	
5. 정책제안 추진	1. 정책제안 추진					
	가. 정책제안 추진계획 수립					○
	나. 정책제안 계획서 작성		○			
	2. 집행부·시군 정책정담회 개최					
	가. 정책정담회 개최계획 수립					○
	나. 정책정담회 추진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위원장	의장
		팀장*	전문위원		
<전문위원>					
1. 위원회 활동 지원	1. 의사진행 및 일반행정 처리		○		
	2.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	
2. 의안, 청원 등 심사	1. 심사 관련 자료 요구		○		
	2. 심사 관련 검토 보고		○		
	3. 심사 결과 및 경과보고서 작성 · 제출			○	
	4. 본회의 부의 안건 의뢰			○	
3. 자료작성	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	
	2. 위원회 관련 각종 자료 작성		○		
	3. 위원회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		○		
4. 위원회 행사	1. 국외출장, 연찬회 등에 관한 사항				○
	2. 기타 일반 행사(현장방문,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행사 관련 자료 준비		○		
5. 방청허가 및 출입증 교부	1. 위원회 방청 허가			○	
	2. 위원회 방청대장 관리 및 방청권 교부		○		
6.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	1. 교섭단체 일반행정 등 지원	○			
	2. 일상경비 집행 품의	○			
7. 교섭단체 지원 직원 복무 관리	1. 관내 및 관외 출장				
	가. 5급		○		
	나. 6급 이하	○			
	2.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 등의 허가				
	가. 5급		○		
	나. 6급 이하	○			

*교섭단체 관련은 각 교섭단체 지원 주무팀장을 말함

별표 2 <전문개정 2025.9.19.>

사무처장 권한사무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사무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공통사항>					
1. 회계	1. 예산집행품의				
	가. 예정금액 1건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산집행 품의사항 단, 다음사항은 담당관 전결로 한다. 1)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2) 품의내용이 모두 포함된 계획서를 집행품의 전결사항에 맞게 결재한 문서를 첨부한 경우				○
	나. 예정금액이 1건당 3,000만원 이하 예산집행 품의사항		○		
<총무과>					
1. 회계 관련	1. 지출서류심사		○		
	2.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3. 물품검수 입회확인	○			
	4. 회계관련 법규정비				
	가. 회계 및 예산집행 관련 질의응답		○		
	나. 회계에 관한 지침 및 지시		○		
	5. 예산집행				
	가. 예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 (단, 봉급 ·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과 조달물품의 구매는 분임재무관 처리)				○
	나.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		
	6. 세입 ·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가. 결산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		○		
	나. 세입 · 세출 결산 보고				○
	7. 급여 지급 ·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및 공무직원 급여 지급		○		
	나. 기여금 등 원천징수 및 불입		○		
	다.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및 신고		○		
	라. 연말정산 실시		○		

단위사무	세부항목	전결구분			사무처장
		팀장	과장	의정국장	
1. 회계 관련	8.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		
	9. 회계관계 직인 관리	○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련				
	가.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보관		○		
	나.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11. 지출계산서 제출 보고		○		
	1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결정				○
	나. 지체상금 부과결정		○		
	다. 입찰집행		○		
	라. 현장설명 결정(현장설명 : 사업주관부서)	○			
	마. 계약변경내용 통보		○		
	바. 공사 · 물품 · 용역 실적 확인(증명발행)	○			
	13. 기성 · 준공 입회공무원 지정		○		
	14. 물품관리				
	가.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		
	나. 재물조사 실시결과 보고		○		
	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관리		○		
	라.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		○		

10.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 · 보안 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해 출입 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2. “출입증”이란 언론인,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으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3. “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과 접견하는 의원, 공무원,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가 관리하는 청사와 청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보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청사 방호계획 수립)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경기도의회 청사 방호계획(이하 “청사 방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사 방호계획에는 방문자 출입 통로 제한, 출입증 교부 및 취약지역의 방호 강화 등 세부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개방구역과 업무구역) ① 청사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구역과 신분 확인 등 출입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개방구역은 지상 1층 홀과 카페라운지로 하고, 개방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의 모든 구역은 업무구역으로 한다.

③ 개방구역의 개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개방하지 아니한다.

④ 개방구역 내에서의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전기·수도 등 설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방문증 또는 출입증은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발급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무원 외 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민원인 등 청사를 방문하는 외부인(이하 “방문자”라 한다)은 방문 신청 및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청사방호 담당자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및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자가 방문증을 반납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개방시간 외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통제한다.

제7조(방문신청) ① 청사의 업무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방문자는 사전에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방문자는 당일 안내데스크 등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경우 방문일 전일까지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알리기 불가능할 경우 방문 당일 알릴 수 있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자의 방문 시 사전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방문증 또는 출입증을 교부한다.

④ 업무담당 공무원은 방문신청을 받은 방문자의 청사 출입 및 퇴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제한)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 및 출입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방역, 위생 및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청사방호·관리상 위해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명백한 경우

제9조(출입증 관리)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분기별 현황조사를 통해 출입증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유효기간 경과, 퇴직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된 경우 해당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방문증 관리) 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는 안내실에 갖춰놓고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관리한다.

제11조(출입관리) ① 청사방호 담당자는 방문증 및 출입증 패용자에 한하여 청사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방문증 및 출입증 패용자라 하더라도 청사방호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방문자가 퇴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환하고 방문증을 회수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방시간 외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제1항에 따라 통제한다.

제12조(방문자 출입 시 주의의무) ① 방문증 및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 및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 및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문증 및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증 사용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13조(청사출입의 제한 등) ①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방문자에게 도민접견실에서 업무담당 공무원과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청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로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및 물품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7. 제16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 조치를 받은 자
2.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제16조(목적 외 사용허가) ① 경기도의회 청사 업무 구역을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관한 절차는 청사방호 담당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방호직 공무원의 임무) 방호직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방문자의 신분 확인 및 방문증 교부
3. 소란 민원 발생 시 방문자를 접견할 수 있는 도민접견실 안내 및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
4. 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당직실 근무자에 한정한다)
5. 청사 내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및 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18조(청원경찰의 임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소란 민원 발생 시 도민접견실 안내 및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연락
3. 청사 내 차량의 주차와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4. 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
5. 청사 내 직원의 안전과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6. 사무실 보호조치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 통제
7.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19조(도민접견실) ① 방문자 접견은 도민접견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견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에서 접견 가능한 방문자는 방문증 교부 후 사무실에서 접견이 가능하다.

② 사무실에서 접견 중인 방문자의 소란 등으로 사무실 내에서 접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도민접견실로 이동 후 접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접견실은 민원 담당 업무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청사방호 등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는 청사방호 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

제20조(소란 민원 대응) ① 소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소란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로 연락하고 청사방호 인력의 지원을 요

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소란민원 발생 시 도민접견실로 안내하고 민원관련 해당 업무담당 부서와 접견하도록 한다.

③ 접견 중 다시 소란이 발생하는 등 방문자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청사방호 담당자는 해당 방문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호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집회·시위 대응) ① 청사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집회 현장에 상주하여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자는 집회의 양상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여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④ 청사방호 담당자는 불법 집회,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 시 불법행위를 촬영 또는 녹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테러 대응) ① 테러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무원 및 상시출입자 외 출입인원을 전면 통제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 내 방송 등을 통해 방문객의 대피 및 귀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테러발생 시설(장소)의 가스, 유류 및 전기 등과 같은 화재 위험원을 차단하여 추가 사고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입보안교육)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방호 인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출입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입보안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공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방호 인력 및 출입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요령 및 예절교육
2. 출입관리
3. 그 밖에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청사방호 담당자는 규칙 및 청사 방호계획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9.16.>

출입증 발급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발급대상	세부기준	비고
1. 상주근무자	① 용역근로자(전산기기 유지관리 요원 등) ②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해당 부서장 요청에 따라 발급
2. 일반인	① 입주업체 근무자(도 금고, 매점 등) ② 교육강사 등 한시적 출입자(1개월 이상, 월 8회 이상) ③ 건강식품 배달원 등 2주 이상 월 15회 이상 출입자	
3. 출입기자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기자	
4. 기타	발급부서장(총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2

청사 내 반입금지 물품(제8조제9호 관련)

구 분	반입금지 물품	
① 법 정 위해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② 기 타 위해물품	총기류	압력총, BB권총, 섬광총 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칼, 기타 도검류
	곤봉류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폭발물 및 탄약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 혼합제품
	인화물질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가스 및 화학물질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 물질
	기 타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별표 3

출입증 사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위반사항	처리 기준
1	기간 만료 미반납	ㆍ출입증 발급 제한(15일) ㆍ(심각한 경우) 재발급 금지 * 방문증 교부받아 출입
2	분실 후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ㆍ출입증 발급 제한(1개월) ㆍ(심각한 경우) 재발급 금지 * 방문증 교부받아 출입
3	출입증 대여 및 타인 출입증 사용 (대여자, 사용자)	ㆍ출입증 회수 및 해당 부서 통보 ㆍ출입증 발급 제한(3개월)
4	출입증 패용 지시 불응	ㆍ회수 조치 * 방문증 교부받아 출입

1) '공무원증 사용 위반자'에 따른 의무·벌칙은 별도 규정 적용
2) 분실신고 후 나중에 찾게 된 경우, 분실신고 된 출입증은 반드시 반납

11. 경기도의회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5. 15.] [훈령 제67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방문자를 통제하여 시설물의 보호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방호 담당부서”란 경기도의회의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청사방호 담당자”란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행정실무자, 방호직 공무원 및 공무직원, 청원경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5.]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청사에 출입하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출입기자 등 관계자 외 청사방문자(이하 “방문자”라 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개방구역과 업무구역) ① 청사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구역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지상 1층 홀·카페라운지는 개방구역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청사 내의 전 구역은 업무구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5조(방호원의 임무) 방호원(방호직 공무원, 공무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방문자의 신분 확인 및 방문증 교부·회수
3. 소란 민원 발생 시 민원실 또는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하“민원접견실”이라 한다) 안내 및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연락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
5. 청사 내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및 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본조신설 2023.5.15.]

제6조(청원경찰의 임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출입자 통제
2. 소란 민원 발생 시 민원실 또는 민원접견실 안내 및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연락
3. 청사 내 차량의 주차와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통한 특이사항 관리
5. 청사 내 순찰을 통한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6. 사무실 보호조치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 통제

7. 그 밖에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본조신설 2023.5.15.]

제7조(출입절차) ① 청사 출입구 및 안내실에 배치된 방호원과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제한다. <개정 2023.5.15.>

1. 방문자에 대한 신분 확인과 방문자 기록부 등재 및 신분증을 보관하고 방문증을 교부하여 패용 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에게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방문자가 퇴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환하고 방문증을 회수한다.

② 근무시간외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책임하에 제1항에 따라 통제한다. <개정 2023.5.15.>

제8조(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는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5.]

② 방문자는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5.]

③ 방문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5.]

④ 방문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5.15.]

⑤ 방문증 및 방문자 기록부는 안내실에 갖춰놓고 방호원과 청원경찰이 관리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5.15.>]

제9조(청사출입의 제한 등) ①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5.15.>

2. 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방문자에게 민원접견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 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허가) 청사를 도의회의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청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로 반입하거나 이를 휴대하는 행위

3.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 및 물품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7. 제10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3.5.15.>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의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행위의 중지, 장해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 조치를 받은 자

2.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23.5.15.]

제13조(소란 민원 대응) ① 소란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소란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청사방호 담당부서로 연락하고 청사방호 인력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자는 소란 민원 발생 시 민원접견실로 안내하고 민원 관련 해당 업무 담당 부서와 접견하도록 한다.

③ 접견 중 다시 소란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청사방호 담당자는 해당 민원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호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5.]

제14조(집회·시위 대응) ① 청사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집회·시위 시 청사방호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집회현장 상주를 통한 상황파악 및 관리

2. 집회의 양상에 따른 출입문 통제, 청사 내 진입 시도 및 무단 점거 등 불법행위 차단

3. 불법행위 발생 시 촬영·녹취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

[본조신설 2023.5.15.]

제15조(테러 대응)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테러상황 발생 또는 발생 예상되는 경우 출입 차량 및 상시출입자 외 출입인원 전면 통제

2. 청사 내 방송 등을 통한 방문객의 대피 및 귀가를 유도

3. 테러발생 시설(장소)의 가스, 유류 및 전기 등과 같은 화재 위험원 차단

[본조신설 2023.5.15.]

제16조(자체 방호계획 수립)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자체 방호계획에는 방호원·청원경찰 배치계획 및 근무요령,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 출입증 교

부 및 취약지역의 방호 강화 등 세부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17조(출입보안교육) ①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방호 인력에 대하여 출입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은 청사방호 인력 및 출입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요령 및 예절교육
2. 출입관리
3. 그 밖에 출입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청사방호 담당자는 이 규정 및 자체 방호계획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18조(감독) 방문자 통제의 감독은 근무시간내에는 청사방호 담당부서의 장이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행한다. <개정 2023.5.15.>

[제11조에서 이동 <2023.5.15.>]

부칙 <2023.5.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도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도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및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이나 파견되는 사람(이하 “출장자”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출장 또는 파견을 가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③ 의장은 국가에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심사대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

계획

3. 10명(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단체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언론홍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의회운영전문위원 등은 내부위원이 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인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사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⑤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8조(소양교육) 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

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무 등)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진 등 별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항공마일리지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출장자가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1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1. 1.] [경기도조례 제8707호, 2025. 10.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출장을 말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친선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 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는 때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허가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따른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환수금액 등을 고려하는 등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소속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에 행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6조제6항에 따라 환수조치된 공무국외출장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계

획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심사 및 재심사
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심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2명
2.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8명
3.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위촉 후 처음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과장이 된다.

⑦ 간사는 제8조제1항의 심사기준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모위원 선정)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부공모 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기준)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경기도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9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작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출장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에는 사전회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의견청취 및 제출) ① 대표의원은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이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의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2. 전액 자부담인 공무국외출장
3. 제12조에 따른 재심사
4. 의정활동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④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을 제안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이 계획이 미흡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가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게시)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심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지체없이 공개하며,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①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비용 관련 정보,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

③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심의와 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16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친선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정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5.10.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무국외출장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휴일제외)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 단체 · 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수행인원 최소화)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14.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운영규정

[시행 2022. 11. 29.] [훈령 제65호, 2022. 11.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외부 공모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모자격) ① 외부공모위원(이하"공모위원"이라 한다)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선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공모위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의회와 관련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모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4조(제출서류) 공모위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선정방법 및 기준) ① 공모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심사에 의한다.

② 자격심사 위원별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은 별지 제5호 서식(배점표) 및 별지 제6호 서식(평가표)과 같다.

③ 심사당일 참석한 자격심사위원 전원의 총합계 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6조(자격심사위원회) 공모위원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2.11.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경기도의회장(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도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 (이하 “장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부의장,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의식·재무 및 연락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을 두되,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사무처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5.9.16.>

제6조(준용) 의회장의 기간과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도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제비 기준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신 문 공 고	3단 15㎝	1개사	지방일간지
영결식장 설치	○ 건물면적 7.2m×3.2m = 23.4㎡ ○ 높이 3.6m	1식	7평
영 구 차	중 형	1대	1일간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 화	특 대	1개	장의위원장용
	대	15개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나. 흉 화	특 대	1개	장의위원장용
	대	30개	집행위원장 및 위원용
다. 국 화	헌화용	200개	헌화용
라. 근조리본	흑 색	300개	조객용
마. 장 갑	백 색	50족	종 사 원 용
바. 넥 타 이	흑 색	20개	종 사 원 용
사. 영구차 리본	대 형	1개	
조 화	대 형	1개	의 장 명 의
안 내 문 인 쇄	모조32절 180g/㎡	500부	
장의행사 협조기관			
가. 조 악 대		1대	
나. 경호 및 경비		5팀	

16.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08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7.18.>]

[제3조에서 이동 <2025.10.10.>]

제3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0.10.>

[제5조에서 이동 <2023.7.18.>]

[제4조에서 이동 <2025.10.1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7.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7.18.>]

[제5조에서 이동 <2025.10.10.>]

부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49호, 2025.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5.19., 2007.12.3., 2014.12.31., 2022.3.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

④ 삭제 <2024.1.10.>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개정 2023.1.2.>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

[전문개정 2006.5.19.]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2.5., 2015.12.31.>

③ 외국에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④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9.1.14.]

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9.1.14.]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7조 삭제 <2019.1.14.>

제8조 삭제 <2006.5.19.>

부칙 <20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24.3.20.>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지 급 액	월 1,500,000원	월 500,000원

별표 2 <전문개정 2023.1.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3항 관련)

연도별	월정수당
2023년	연 49,273,820원
2024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100%)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3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23.7.18.>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비고 :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전문개정 2019.1.14.>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5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일당)	식비(1일당)
의장·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	가등급 282 나등급 207 다등급 162 라등급 108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의원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18.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의 직무대리)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
2.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부의장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순위에 따른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5.4.22.]

제3조(법정대리) 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결원,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6.>

② 의정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9.16.]

③ 과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9.5.>] <개정 2025.9.16.>

④ 수석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9.16.>]

[제2조에서 이동 <2025.4.22.>]

제4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4.22.>]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에서 이동 <2025.4.22.>]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기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도의회 의원과 도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카페(매점), 휴게실,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
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의 건강증진시설
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장 어린이집 지원
5.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시찰
6.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지원(국내의 경우 배우자 포함)
7.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8.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10.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1. 통근버스 지원
12.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13. 직원복지회 운영 지원
14. 기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과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6.>

1. 도의회 의원 2명
2.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3명

3.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도의회 의원 제외) 중 업무별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 2명

4.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와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

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5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통합 운영) 의장과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경기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시행 2025. 9. 19.] [훈령 제79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직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직종 : 일반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
2. 대상공무원 : 과 및 전문위원실 4급(상당), 5급(상당) 및 6급(상당) 이하 <개정 2025.9.19.>

제3조(대외직명) ① 법제과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5.9.19.>

② 예산분석과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분석관으로 한다. <개정 2025.9.19.>

③ 전문위원실 4급(상당)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상당) 전문위원은 입법전문위원으로,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입법활동 지원요원)은 입법조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전문위원실 5급(상당) 사무관은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대외직명 활용·관리) ① 제3조에 따른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79호, 2025.9.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부분원의 운영 원칙) 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하 “북부분원”이라 한다)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북부분원은 인력·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북부분원의 기능) 북부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2. 의회 정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회의
3. 의회 의원 의정 활동 지원
4. 의회 민원 응대
5. 그 밖의 의회 관련 업무 사항

제4조(북부분원설치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북부분원과 경기도청 간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북부분원의 규모, 소요재원 등의 설치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3. 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 건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15명 이내
2. 경기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1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 제출 및 의견제시, 관계자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방문외교활동”이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란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제3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를 말한다.

제3조(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등) ① 의장은 의원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맹 활동과 관련한 외교활동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으로 본다. <개정 2025.5.7.>

③ 연맹의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사무)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의 적용) 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 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

[시행 2025. 7. 18.] [경기도조례 제8545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소 설치·운영)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상담소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관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현직 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6조(이송)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직원 근무수칙 등) ①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에 배치되는 사무직원은 의회사무처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 사무직원은 일일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3조(위촉장 교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3.9.>

제4조(상담 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상담을 하려는 사람은 각 상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무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일정을 안내한다. <개정 2017.3.9.>

②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결과를 총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제5조(정책건의 등 접수) ① 상담소의 사무직원은 도민의 정책건의 등이 접수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②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제6조(이송 및 분류처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송 처리 시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한다.

제7조(처리기간 및 절차) ①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건의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불수리사항) ①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건의사항 등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민원
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시행 2025. 4. 22.] [경기도의회규칙 제13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의 처리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되,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86조 또는 「청원법」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2.4.1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신설 2014.4.25.]
4. 지방자치단체(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용
[신설 2014.4.25.]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가 반려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② 의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을 접수하고,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제6조제3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

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설명의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각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의 진술) ① 각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규칙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청원에 대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4.2.>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각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각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각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 있으나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4.25.>

② 각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알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청원의 접수와 각 위원회로 회부한 사항
2. 각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사항
3. 청원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사항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경우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4.22.>

부칙 <2025.4.22.>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6. 경기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5.] [훈령 제51호, 2019. 7.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서”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진정서·건의서·탄원서·질의서·호소문·의견서 등을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15.]

제3조(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07.15.>

② 3명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진정서의 반환) 진정인이 진정을 철회하고 진정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진정서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사무처장이 접수하고,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07.15.>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것 [전문개정 2015.9.24.]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전문개정 2015.9.24.]
3.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07.15.]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07.15.]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

정 2019.07.15.]

6.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5.]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단서신설 2019.07.15.]

③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19.07.15.]

제6조(처리 및 회부 등)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서를 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07.15.> [단서신설 2019.07.15.]

② 진정서의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진정서를 처리할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개정 2015.9.24., 2019.07.15.>

③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④ 삭제 <2019.07.15.>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 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이 처리하는 진정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7.15.]

1. 설명, 질의 등의 진정서 : 7일 이내
2.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진정서 : 14일 이내
3. 건의, 탄원, 호소 등의 진정서 : 14일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그 진정서를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07.15.]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진정 인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5.]

제8조(처리) 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진정서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지체 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07.15.>

②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진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07.15.]

③ 위원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24.]

1. 도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신설 2015.9.24.]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신설 2015.9.24.]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신설 2015.9.24.]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신설 2015.9.24.]

제9조(진정서의 심사) 위원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할 수 있다.

1. 도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7.15.]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진정서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9.24.]

부칙 <2019.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지원자료”란 경기도의회 총무과장, 인사과장, 언론홍보과장, 디지털의사과장, 공간정보화과장, 법제과장, 예산분석과장, 의정지원과장(이하 “각 과장”이라 한다)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한 사무의 수행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보존·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2. “정책자료”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3. “자료 제공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자료 및 정책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담당부서 장을 말한다.
   가. 경기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출연한 법인
4. “자료 요구서”란 각 과장이 자료제공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3조(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각 과장은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4조(자료요구) ① 각 과장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한 사무의 수행 또는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과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5조(자료요구 절차) ① 각 과장은 제4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요구서를 자료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자료요구서에는 수신자, 자료제출기한, 요구 목적, 요구 내용, 요구 일자, 요구자 성명, 자료제공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②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요구서를 교부받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자료요구서를 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경우 각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④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내용이 난해한 경우 각 과장은 자료제공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6조(자료의 제출) ① 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2.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에 수록된 정보
3. 그 밖에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요구서의 자료제출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예외) ① 요구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자료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5. 그 밖에 각 과장이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공자는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각 과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8조(기록유지) 각 과장은 각각 소관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9조(정책자료 제출) 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자료 발행기관 및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 목록을 분기마다 각 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② 제출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10조(사적이용금지 의무) 자료를 취급하는 각 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용무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2018.11.13., 2025.1.2., 2025.5.7., 2025.9.26.>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11호, 2025. 10.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2.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직원의 분리 또는 일시적 업무 중단
3.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설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비상벨
   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시스템
   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4.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응대 1회당 권장시간 설정
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민원응대 종료 조치
6. 그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의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조(현장대응 매뉴얼 구축)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민원업무별 현장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직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신체·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지원
5. 피해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6. 그 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직원 지원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에 소요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10조(법적대응 지원) 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 제7조 관련)

지원구분	근거	지원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50만원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신체 ·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휴식시간 2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	※ 심적고통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가능 ※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의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법률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범위 내	
안전시설 · 장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3호	예산의 범위 내	필요시
그 밖의 사업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예산의 범위 내	

29.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84호, 2025.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경기도의회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4.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①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우선구매 대상 부서의 구매실적이 제5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매 증대 요청을 받은 우선구매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의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의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관련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88호, 2025.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상을 알리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검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의 부담)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친선결연 등의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교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서류를 최소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상호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친선결연 등의 범위) 각종 친선결연 등의 활동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한다.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25.5.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31.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2호, 2023. 8.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5조(편의지원)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장애인 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6. 2. 25.] [경기도의회규칙 제145호, 2026. 2.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행정 사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인사제도 운영)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 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인사기관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도의회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의장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의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신설 2024.7.4.]
8.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7.4.>]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4.>

③ 의장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신설 2024.7.4.]

④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7.4.]

⑤ 의장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이내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7.4.]

⑥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7.4.>]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7.4.>]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목개정 2026.2.25.]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시험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기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2.7.]

③ 의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2.7.>

1. 삭제 <2025.2.7.>
2. 삭제 <2025.2.7.>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2조에 따른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 기간의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후단개정 2026.2.2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후단신설 2026.2.2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2.25.>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5의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대

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단서삭제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7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7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④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및 별표 8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에 대한 계산은 최종 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

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4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4의5와 같다.

⑨ 영 제1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2.25.]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과 같다.

제2절 신규임용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의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승진임용 및 전보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점 100분의 70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 제2차 시험성적 100분의 20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또는 의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29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의장은 격무·기피업무 등 의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관리

제30조(역량평가제의 운영) ① 의장은 영 제8조의5에 따라 4, 5급 승진임용 후보자를 대상

으로 관리자로서의 능력 및 자격 등을 평가하여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역량평가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다면평가의 실시) 의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점의 부여기준 등은 별표 11와 같다.

제33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산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3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4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5점

②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1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08점

③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34조(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의장이 따로 정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비율 및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제35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경우 평정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은 평정자의 등급, 점수 및 종합 평정의견에 한정한다.

제5장 전문인력 등 기타 제도 운영

제36조(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하여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시행 2025. 11. 19.] [의회훈령 제81호, 2025. 11.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등의 원칙) 인사를 운영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공개) 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의회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2.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계획
3.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
4. 성과평가,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6.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사청탁의 금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관 내·외부 관계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를 통해 부당하게 인사 청탁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

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신이 쇠약하여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그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후단개정 2025.8.29.]

제10조(비밀유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누구든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임용

제11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수행능력, 업무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하위직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승진임용 방법) ① 승진임용은 임용하려는 직위의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 따라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근무실적, 경력,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5급 공무원에서 4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임용한다.

④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법정배수 범위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임용한다.

2.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시기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5급 승진과정의 교육 일정이 확정된 후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대상자가 총 결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직제 개편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의 결원 발생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추가로 심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5.2.28.>

제13조(결원보충) ① 도의회 소속 5급 공무원 결원은 별표 1의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따라 충원한다.

② 도의회 소속 6급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하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7급 이하 및 연구직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자체 충원과 제5장에 따른 도의회 전입으로 충원한다.

③ 특수분야 및 업무의 긴급성으로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선발·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별승급)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

②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별도로 지명한다.

③ 그 밖의 특별승급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범위 내에서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15조(기본원칙) ①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 그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6개월 이상 국내·국외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특수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장기근속 경력자는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하여 같은 분야의 부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주요직위 임용기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별표 1의 주요직위 임용기준에 따른다.

제17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순환전보) ① 의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함에 있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근무기간 1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며, 동일 부서에서 근무기간 4년이 지나면 의무전보 대상이 된다. 다만,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가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28.>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속 공무원의 전보임용에 관한 사항은 영 제27조를 따른다.

제19조(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원인과 관련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비위문책사항 관리) 본인의 비위와 관련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사항 및 담당업무의 착오·부당 처리 등으로 경고·훈계 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훈계·주의 기록 카드에 기록·관리한다.

제5장 도의회 전입

제21조(7급 이하 전입 요건 및 자격) ① 7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시·군의회(시·군 포함)의 공무원 중 도의회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시·군의회의 의장(시장·군수 포함)이 추천한 사람 중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도의회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총 경력 3년 이상인 사람(휴직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제2호 경력기간 산정 시에도 같다)
2. 7급의 경우 임용(승진)후의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다만, 7급 신규임용자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함)
3.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보·전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4.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5.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사람
6.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7.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 아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이 아닌 사람

③ 의장은 균형 선발을 위하여 시·군의회 의장(시장·군수 포함) 추천 시 모집 단위별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시험주관 및 시행) ① 도의회 전입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전입시험은 결원 예상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할 때 실시한다.

③ 전입시험 계획은 시·군의회(시·군 포함)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공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의회 의장(시장·군수 포함)은 시험시행 계획의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등의 협조와 응시하려는 공무원이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공가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23조(전입시험 방법) ① 전입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일반상식을 시험과목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도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고, 평가방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전입시험 위원 및 출제) ① 전입시험 위원으로 출제편집위원 2명, 면접위원 2명(1개조 3명 중)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도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정하며, 면접위원 1명(1개조 3명 중)은 외부위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② 필기시험 문제는 도의회 채용 담당 부서에서 출제한다.

제25조(합격 결정 및 합격자 관리) ①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50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최종 합격자는 직급별·직렬별로 성적 순위에 따라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부서에 임용한다. 다만, 임용예정 부서, 전입후보자 소속기관 등의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순위에도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③ 최종 전입후보자 명부 작성 시 해당 후보자의 임용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시·군의회 의장(시장·군수 포함)에게 확인하며, 승진, 면직, 징계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 전입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한다.

제26조(전출 제한) 도의회에 전입하는 공무원은 3년의 전출 제한 기간 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제6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27조(평정대상 및 시기) ① 이 장의 근무성적 평정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공무원(이하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평정 시기는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별정직 5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 할 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5월 31일과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제28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자는 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확인자는 의회사무처장 및 의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9., 2025.11.19.>

② 기구·직제의 변경 또는 신설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지정 운영한다.

제29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31조의4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평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정국장 및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과장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3.28.> [후단개정 2025.9.19., 2025.11.19.]

제30조(평정위원회 운영) ① 평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때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정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31조(기능) 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 심사·결정

2.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실적 가산점 기준 심의
3. 실적 가산점 부여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추천 <개정 2024.5.28.>
4. 공무원 평정에 관한 임용권자 요청사항 심의

제32조(실적 가산점 평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요건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3조(비밀유지) 평정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누구든지 평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제34조(운영방침)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직무 분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명확한 업무성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직무 분야 등에 따라 그 규모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제35조(근무실적 평가 시기 및 방법) ①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최종평가로 구분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평가 : 연 2회 실시하되, 임용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임기제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2. 수시평가 : 임용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실시
3. 최종평가 : 근무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 실시

③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채용기간을 연장 하는 경우에 연장 전 채용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점 부여, 가감점 부여 등 근무실적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성과계획의 작성 및 관리방법) ① 소속 부서장은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성과 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성과계획 당시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6개월 단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 평가에 반영한다.

제37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 제21조의5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근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정국장 및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과장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후단개정 2025.9.19., 2025.11.19.]

제3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운영) ①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의 경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근무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기제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목표 평가서로 갈음한다.

제39조(교육훈련)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6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무 분야 및 의정지원 역량 제고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0조(근무실적 평가결과의 반영 등) 의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비밀유지) 근무실적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사평가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누구든지 심사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제4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장이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25.11.1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25.11.19.]

주요직위 임용기준(제16조제1항)

구분	직급별	주요직위	임용대상
지방직	2급	의회사무처장	◦ 지방2급 ◦ 지방3급 중 승진요건을 갖춘 사람
	3급	의정국장	◦ 지방3급 ◦ 지방4급 중 승진요건을 갖춘 사람
	4급	과장 수석전문위원	◦ 지방4급 ◦ 지방5급 중 승진요건을 갖춘 사람
	5급	팀장 전문위원	◦ 지방5급 ◦ 지방6급 중 승진요건을 갖춘 사람

비고 : 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의 경우 이 표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2 [전문개정 2025.11.19.]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제32조 관련)

(단위 : 점)

대상 분야	부 여 기 준	부여 가점	산 정 방 법	비고
1. 업무 관련 제안 (창안)	1-1. 정부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	3.0 2.5 2.0 1.5 1.0	○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 도의회 공무원이 타 시·도, 민간 기관 등의 제안에 채택된 경우 가점 제외	주관 부서 신청 (공문)
	1-2. 의회 제안에 채택된 다음 해당자 - 금 상 (특별상) - 은 상 (우 수) - 동 상 (우 량) - 장려상 (격려상) - 노력상	3.0 2.5 2.0 1.5 1.0	○ 주관부서에서 명단 통보 또는 수상자 본인이 증빙자료 첨부, 신청	주관 부서 신청 (공문)
2. 업무 추진 우수	2-1. 업무 추진 성과 우수자 ○ 평정대상 일반직 현원의 4% 이내 - 과 현원의 4% - 전문위원실 현원의 4%	각 1.5	○ 업무성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 선발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개별 신청 (부서장 확인)
	2-2. 기타 격무 근무자 등 ○ 평정대상 일반직 현원의 1%	각 1.5	○ 업무의 특수성 및 난이도, 의정기여도, 노력과 성과, 업무추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선발	-
	2-3 전문위원실 장기 근무자 ○ 정기평정 대상기간 내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중 현부서임용일로부터 동일 직급 2년 이상 경과한 자 ※ 휴직·파견 기간 제외 ○ 현직급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부여	각 1.5	○ 업무 성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 선발 ※ 부여기준 충족 후, 최초 도래되는 근무성적평정에 가점 부여 가능	개별 신청 (부서장 확인)
3. 다자녀 공무원	3. 다자녀 공무원 ○ 남성·여성 구분 없이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공무원 ○ 도의회 부부 공무원인 경우 1인에 한하여 부여 - 3자녀 이상 - 2자녀	1.5 0.7	○ 2번째 이상 자녀를 출산 후, 최초 도래되는 근무성적평정에 가점 (1자녀 당 1회) 부여	개별 신청 (부서장 확인)

※ 대상 분야 1, 2번 내 중복하여 가점 신청 불가

별표 3 [전문개정 2025.6.9.]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처리기준
(제35조제4항 관련)

1. 평가방법

구분	평 가 방 법
평가방법	· 임기제공무원이 작성한 자기평가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장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 · 평가한다.
평가점 부여	· 평정점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70%), 특별성과(30%) 평가 + 가감점
가감점 부여	· 평정자(부서장)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 할 수 있음 ·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일시 ·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함
평가요소의 추가	·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목표달성도, 특별성과 외의 평가요소를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음
미제출자의 평가	· 근무실적평가 · 성과계획서 · 성과목표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2. 평가결과 처리기준

구분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등급으로 구분함 ·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S(탁월) : 100점 이상 105점 이하 (2) A(우수) : 95점 이상 100점 미만 (3) B(보통) : 90점 이상 95점 미만 (4) C(미흡) : 85점 이상 90점 미만 (5) D(부진) : 85점 미만
인사운영 반영기준	· '임용약정서'의 임용기간 동안 반기별 정기평가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B등급 이하 연속 3회 이상 - C등급 이하 2회 이상 - D등급 1회 이상 · 단,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 · 향응수수,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방법으로 조정한다.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3.] [경기도의회규칙 제112호, 2021. 12.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재직 기간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계급별로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

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같은 계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한다.

4.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3.] [경기도의회규칙 제113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 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31.] [경기도의회규칙 제111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칙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6.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 3. 4.] [경기도조례 제7368호, 2022. 3.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재검·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심사,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그 밖의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해서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시행 2022. 3. 4.] [경기도조례 제7369호, 2022. 3.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의장이 지급한다.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칙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기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5. 9. 19.] [의회예규 제21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5.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은 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② 인사과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③ 인사과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인사과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사과장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 2025.9.19.>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인사과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④ 인사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⑤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인사과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9.2., 2025.9.19.>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

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인사과장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인사과장은 의회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인사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인사과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인사과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5조(종결처리) 인사과장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인사과장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7조(교육) ① 인사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② 인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사과

장과 상담할 수 있고 인사과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 2025.9.19.>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제21호, 2025.9.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1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1호 하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 7. 18.] [경기도조례 제8544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 내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회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5.7.18.]
   가. 신고·조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4.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7.18.>]

5.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6.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5.7.18.>]

제3조(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행위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

4.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5.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갑질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책 등 정책방안 연구

4. 피해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련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지원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유급휴가명령 [신설 2025.7.18.]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2025.7.18.>]

② 의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8.]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25.7.18.>]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① 의장은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의회 인사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15조(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시행 2026. 5. 12.] [의회예규 제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24.]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24.]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24.]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4.12.24.]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2.24.]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의원 및 직원(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12.24.>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신설 2023.5.8.]

제4조(경기도의회 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과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4.]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등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4. 성희롱등 예방 홍보
5. 성희롱등 피해자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6. 성희롱등 관련 예산 확보
7.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추진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4.]

③ 의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등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 피해자에게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개정 2024.12.24.>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23.5.8.]

제6조(구성원의 책무) 상급자와 행위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은 직장 내 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1.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고충처리 신청 철회를 유도하거나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개정 2024.12.24.>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
5.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개정 2024.12.24.>
6.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5.8.]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등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성희롱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4.>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3.5.8., 2024.12.24.>

③ 고충상담원의 성희롱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개정 2024.12.24.>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등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개정 2023.5.8., 2024.12.24.>
2. 성희롱등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23.5.8., 2024.12.24.>
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4.>
4.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8., 2024.12.24.>
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23.5.8., 2024.12.24.>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5조에서 이동 <2023.5.8.>]

제8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초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 2024.12.24.>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개정 2023.5.8., 2024.12.24.>
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3.5.8., 2024.12.24.>
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개정 2023.5.8., 2024.12.24.>
4. 성희롱등 및 2차 피해를 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3.5.8., 2024.12.24.>
5.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에 의한 성희롱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개정 2024.12.24.>
6. 기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3.5.8., 2024.12.24.>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⑤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조에서 이동 <2023.5.8.>]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의원 및 직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8., 2024.12.24.>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④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개정 2026.5.12.>

⑤ 고충상담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⑥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직장 내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12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제7조에서 이동 <2023.5.8.>]

제10조(조사) ①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등 고충 사건 접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8., 2024.12.24.>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2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5.8., 2024.12.24.>

⑥ 성희롱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⑦ 성희롱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⑧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등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⑨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등이 접수한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등의 행위자(피신청인)와 다를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⑩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8.]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개정 2024.12.24.>
7.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희롱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개정 2024.12.24.>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1조(고충상담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고충상담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사건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고충상담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8.]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② 의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등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장소 및 일정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4.]

④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등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휴가 부여,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⑤ 의장은 피해자등에게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24.]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무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可用資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내버려 두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처우

⑥ 의장은 직장 내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⑦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2.24.>]

[제9조에서 이동 <2023.5.8.>]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2024.12.24.>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③ 삭제 <2024.12.24.>

[제10조에서 이동 <2023.5.8.>]

제14조(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성희롱등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기관의 부서장, 성희롱등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12.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2.24.>] <개정 2024.12.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희롱등 예방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⑥ 성희롱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제11조에서 이동 <2023.5.8.>]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의장이 구성·소집하며, 심의를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2항제1호의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하며,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4.]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판단 [전문개정 2024.12.24.]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4.>

③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24.]

④ 사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자신이 제3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⑤ 제4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4.]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2.24.>]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12.24.>]

[본조신설 2023.5.8.]

제1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5.8.>]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본조신설 2023.5.8.]

제18조(징계) ① 의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성희롱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4.12.24.>

③ 의장은 성희롱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④ 성희롱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5.8.>] <개정 2024.12.24.>

[제15조에서 이동 <2023.5.8.>]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12.24.>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8.>

③ 의장은 성희롱등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④ 의장은 피해자에게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5.8.]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8.] <개정 2024.12.24., 2026.5.12.>

⑦ 삭제 <2024.12.24.>

[제16조에서 이동 <2023.5.8.>]

부칙 <2026.5.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0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경기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등을 하는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비상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상황근무 등을 포함한다)를 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

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 정자 채취일에 1일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받은 여성공무원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난임치료 안정휴가를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2.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3.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4. 난임치료시술에 따른 심리적 회복 및 상담을 위한 경우 : 연 2일

⑤ 여성공무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20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

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⑪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자녀 1명 당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자녀 1명 당 연 5일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⑭ 공무원은 부모,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가족사랑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⑯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14.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제2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⑳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㉓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㉔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㉕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㉖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의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㉗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4호 따른 피해자는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기도의회 및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9.26.]

제3장 보칙

제13조(평가 및 포상)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2.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경기도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개정 2023.10.11.>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하지 않음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개정 2023.10.11., 2025.9.2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경기도조례 제7202호, 2021. 10. 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기도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2021.10.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행정	의회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별표 2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의회
6급 및 7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방자치론, 행정학, 행정법
			선택	지역개발론, 헌법 중 1과목
	경력경쟁임용· 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방자치론
		제2차	필수	행정학
			선택	행정법,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행정
			직류	의회
8급 및 9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지방자치론, 행정학개론
	경력경쟁임용· 전직·승진	제1차	필수	지방자치론
		제2차	필수	행정학개론

1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 기간에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6.>
2. “의회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원이 재임기간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2장 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실천규범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과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3.>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13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13.]

제13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정해양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3., 2025.5.7.>

[본조신설 2009.8.13.]

제14조(재산의 등록과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의 등록과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 또는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경조사나 선거구의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과 찬조금이나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이나 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식의 주례나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8.13.>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53호, 2025. 1.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 삭제 <2022.10.31.>

제4조의3 삭제 <2022.10.31.>

제4조의4 삭제 <2022.10.31.>

제4조의5 삭제 <2022.10.31.>

제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경기도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의원 자신,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0.>]

제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10.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10.31.>
   가. 경기도의 집행기관 [신설 2022.10.31.]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설 2022.10.31.]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신설 2022.10.31.]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10.31.>

제1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0.>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개정 2022.10.31.> [단서신설 2022.10.31.]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22.10.31.>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개정 2022.10.31.>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개정 2022.10.31.>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개정 2022.10.31.>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도의회 풍토의 조성

제11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의장의 승인 대상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제외한다.

③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포함) 및 제3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5., 2022.10.31.>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2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자신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의장과 제1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서면으로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경기도 소속 공무원
3. 정당의 당원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22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 제2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1.10.>

⑤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24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 소관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28조(자문료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9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서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을 금지·제한하는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이 타 법령에 의해 4대 폭력 방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6.]
6. 그 밖에 부패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3.6.>]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0.31., 2024.1.10., 2025.1.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 · 단서 및 제3호 본문 · 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 · 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 ·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4.1.10.>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2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5.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규정

[시행 2022. 12. 29.] [훈령 제66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품 등 수수 신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무관련자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 등 수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3조(국내외 활동 사전승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사전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4조(국내외 활동 보고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보고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6조(초과사례금 신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초과사례금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7조(반환비용 청구 신청) 조례 제12조제6항,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8조(영리행위 신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9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0조(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1조(금품 등 인도확인) 조례 제17조제5항에 따른 금품 등 인도확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2조(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 조례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3조(금품 등 관리대장)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금품 등 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2022.12.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를 감안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의회 정책(정치)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정책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과정별 적정성 및 평가환류
4. 의회 정책(정치)교육원 설치 추진 방안
5. 그 밖에 의원의 교육연수에 관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 4.] [경기도의회규칙 제90호, 2018.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경기도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
2. 의원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지방의회와 관련 있는 자 6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부칙 <2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경기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시행 2017. 3. 9.] [경기도의회규칙 제86호, 2017. 3.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색상) ① 신분증에는 증명서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전면과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발급자명의) 신분증은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한다.

제4조(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신분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수와 반납)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3.9.>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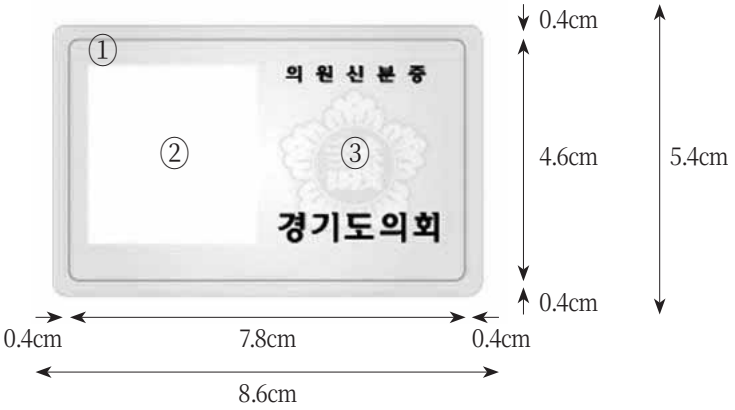

<뒷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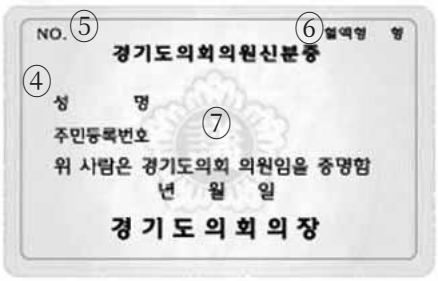

※ 비고 위의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④ 황금색 라인 : 굵기 0.5㎜, 바깥면과의 간격 4㎜

② 사진 : 반명함판 크기

③ 성명 : 한글 성명과 그 아래 한자성명 병행표기, 의회마크

(예) 홍 길 동 洪 吉 童	의회마크	의회

⑤ 발급번호

⑥ 혈액형

⑦ 성명, 생년월일, 의회마크, 발급일자, 경기도의회의장 직인 날인

19.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0.] [경기도의회규칙 제121호, 2023. 7.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②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경기도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7.22.>

③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테두리 “의회”자와 “경기도의회” 글자는 각각 금색으로 하며,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개정 2015.7.22.>

④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⑤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⑥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7분의 1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개정 2015.7.22., 2021.3.17.>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1.3.17.]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③ 그 밖의 의회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17.]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17.]

제5조(의원배지) ①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7.22.>

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2.>

③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0.]

④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신설 2023.7.10.]

제6조(경기도의회 영문표기) ①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는 “Gyeonggido Assembly” 로 한다.

②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공식 서한문, 홍보물, 안내판, 명함,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1항의 영문표기를 따른다.

③ 의회사무처장은 도로표지판 등에 경기도의회 영문표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5.10.5.]

[제8조에서 이동 <2023.7.10.>]

부칙 <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15.07.22.] <개정 2015.10.05.>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 및 규격

(단위 : 센티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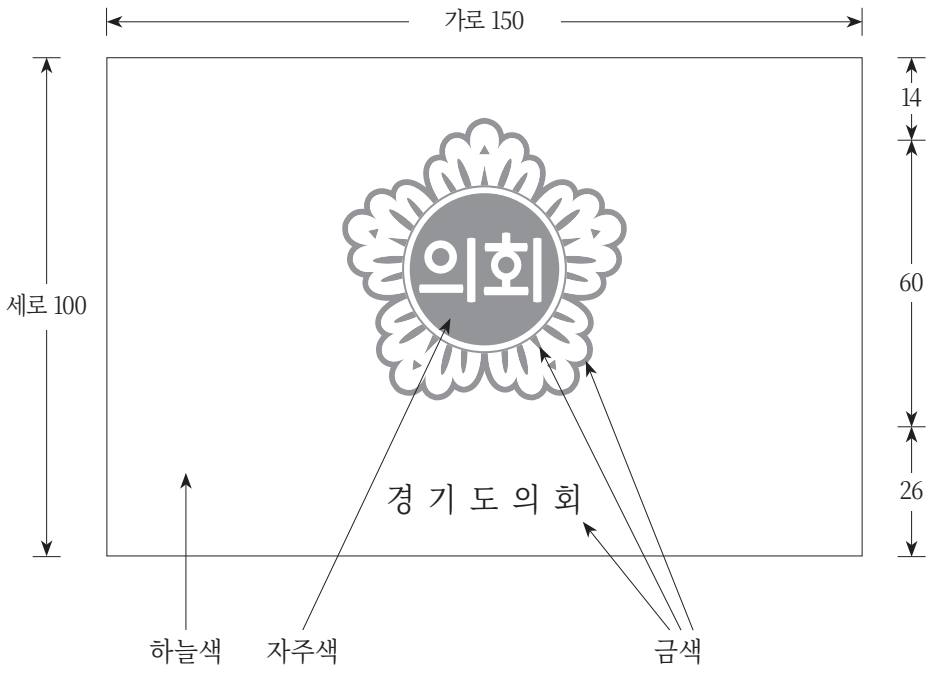

2. 세부규격

◦ 깃면의 크기 :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가로 : 세로=3 : 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60센티미터 (깃면 세로의 5분의 3)
◦ 원형 꽃술의 직경 : 33.3센티미터 (무궁화 모형 직경의 1.8분의 1)
◦ “의회”자의 크기 : 26.6센티미터 (꽃술직경의 1분의 0.8)
◦ “경기도의회” 각 글자의 크기 : 8.3센티미터 (깃면 세로의 12분의 1)
◦ “경기도의회” 글자 전체의 폭 : 75센티미터 (깃면 가로의 2분의 1)

(비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다.

별표 2 [전문개정 2015.07.22.] <2015.10.05.>

<의원배지의 모형도 및 규격>

1. 모형 및 규격

(단위 : 밀리미터)

2. 세부규격

(단위 : 밀리미터, CMYK)

모형내용	규격	색채 (CMYK)
무궁화 5지	직경 18	금색(C:0, M:16, Y:100, K:0)
원형 꽃술	직경 10 바탕 8 테두리 1	자주색(C:0, M:97, Y:100, K:50) 금색(C:0, M:16, Y:100, K:0)
“의회”자	글자크기 6	금색(C:0, M:16, Y:100, K:0)
배지두께	4	금색(C:0, M:16, Y:100, K:0)

20.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8.] [경기도의회규칙 제140호, 2025. 7.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2025.4.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윤리강령"이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3.>

③ 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8.3., 2025.7.8.]

④ 삭제 <2018.8.3.>

⑤ 삭제 <2018.8.3.>

[전문개정 2010.10.5.]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징계 사유) 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1. 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12.31.>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의규칙 제105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의원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징계요구 및 회부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

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1.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 <개정 2025.2.27.>

제7조(회의에 부치는 시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징계요구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2.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 지체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자문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③ 위원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20.>]

제9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계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위원장·의원

2. 징계대상의원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1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2조(발언과 변명) ①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자나 징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18.8.3.>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3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영상정보 등의 자료를 의회사무처 및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5조(징계의 의결과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12.20.]

제17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1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8.>

[본조신설 2021.7.7.]

[제17조에서 이동 <2024.12.20.>]

제2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21조(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9조에서 이동 <2024.12.20.>]

부칙 <202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3.12.29.] <개정 2025.2.27.>

징계기준(제5호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영리거래금지(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제명
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8.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9.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1.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12호, 2025. 10.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4.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조례」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 관련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이행서약제) ① 의장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로부터 매년 1회 의장이 정한 때에 청렴실천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또는 의회사무처와”를 “과”로 한다.

22. 경기도의회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7. 24.] [의회훈령 제76호, 2025. 7. 2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 등의 처분 근거 및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의회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직접적인 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복무 태도 불량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고 또는 유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처분권자) ① 제4조에 따른 처분은 의장이 한다.

② 의장은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처분의 종류 및 적용 기준) ① 의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경고
   가.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다.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비위를 반복한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처분은 위반행위의 성격, 직위,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조직적 또는 관리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대해 별도로 부서경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처분대상) 경고, 주의 처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무태만 또는 복무규정 위반이 경미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3. 각종 점검(직무감찰, 복무점검 등) 결과 경미한 부주의나 소홀 등으로 조직 기강 차원에서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각종 점검 결과나 수사기관 등의 수사개시 통보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위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직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경고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처분의 효력 및 절차 보장)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포상 대상자 추천, 근무성적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상 각종 조치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의장은 사전에 해당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절차) ① 의장은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당사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확인된 경우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 내용은 문서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통보서에는 위반 내용, 처분 사유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보존) ① 경고 또는 주의 처분에 관한 기록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 처분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 기간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기록을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5.7.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시행 2025. 8. 21.] [의회훈령 제77호, 2025. 8.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발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 대상) 고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1.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호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제4조(고발 주체) ① 부서 책임자 및 복무 담당자는 직무 수행 중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인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 여부의 판단) 의장은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고의성, 중대성,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등 직무상 이득을 취한 경우
   가. 2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
   나.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으로 징계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경우
   라. 인사·계약 등 직무 관련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4. 범죄의 파급력이 크거나, 수사를 통해 추가 비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징계 기록 말소 기간 내 재차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수법,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범죄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발할 수 있다.

③ 고발은 의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인사과장은 고발 사실의 요지 및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 및 경과를 문서화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고발 미이행에 대한 조치)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보고·고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직무태만으로 보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 타 기관에서 경기도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장은 관련 사실을 문서로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또는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5.8.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경기도의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5. 8. 21.] [의회예규 제20호, 2025. 8. 2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인 인사과장으로 정한다.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신고기록)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종결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을 아니 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 1항에 따라 종결처리의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 징계절차의 진행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에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 금품등 인도확인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물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금품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반환한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반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5.8.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경기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시행 2025. 7. 24.] [의회예규 제19호, 2025. 7.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의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회계·법령·복리후생·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의회 소속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을 제외한다)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

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1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무원은 민원 등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조사·평가 관련 장소·사무기기 제공 외 불필요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에게 신고

③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승인 요청하고, 의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

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등)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이 있는 다음 연도부터 복지점수 지급 제한
2. 모범공무원 국내 격려연수 제한
3.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제한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역할을 겸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5.7.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를 두고 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의정의 수행을 도모하여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홍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홍보물”이란 도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홍보를 위한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정홍보물의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홍보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의정홍보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홍보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정홍보위원회 운영) ①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홍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장과 디지털의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9.26.>

④ 의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언론기관이나 대학 학회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회 사무처의 의정홍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의회 사무처 의정홍보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 2024. 3. 20.] [경기도조례 제7973호, 2024.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무가 홍보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임무를 결정한다. <개정 2024.3.20.>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08.06.>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 및 단체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대사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9.08.06.]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8.06.]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언론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공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9.08.06.>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9조에서 이동 <2024.3.20.>]

부칙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상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장, 마스코트, 슬로건, 브랜드, 심벌마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

1. 삭제 <2025.1.2.>
2. “문장”이란 의회를 상징하는 도안(심벌마크)를 말한다.
3. “마스코트”란 의회를 대표하기 위해 제작된 형상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장 : 별표 1
2. 마스코트 : 별표 2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의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의 개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 [단서신설 2025.1.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1.2.]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① 의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징물의 적합성과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

③ 의장은 상징물을 의회와 관련 있는 주요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

제6조(상징물 심의위원회) ①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상징물의 추가·변경 및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적합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점검
3. 제8조에 따른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3명
2. 경기도민 5명
3. 지방자치 및 디자인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7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26.>

[본조신설 2025.1.2.]

제7조(상징물 심의기준) 위원회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적합성 등의 점검을 위하여 상징물을 심의할 경우 조형, 소재, 색상, 서체, 의미, 어휘 등에 관하여 경기도의회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상표 출원, 저작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

제9조(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1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의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공무원 신분증
2. 그 밖에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에서 이동 <2025.1.2.>]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활용
2. 마스코트 홍보, 브랜드 마케팅 사업
3.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4. 주요 행사 및 의정활동 등에 활용

5.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1.2.>]

제11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

1.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용계획서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25.1.2.]
2.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25.1.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 사용변경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용변경계획서에 따른 상징물의 활용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신설 2025.1.2.]
2. 법인의 경우 : 사용변경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25.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 신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의 목적 및 조건 등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상징물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5.1.2.>]

제12조(사용료) ① 제11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② 상징물의 사용료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

제13조(상징물의 사용방법) ①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작도법 및 색상, 사용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상징물의 응용은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2.>]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및 지식재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
2. 제12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
3. 제13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1.2.>
4.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에서 이동 <2025.1.2.>]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

[제13조에서 이동 <2025.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2.>]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호 관련)

1. 문장(심벌마크)

(1) 기본형

(2) 문장+로고타입(국문+영문)

2. 문장의 의미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문장의 규격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순 내부에 '의회'자를 표시하며, 무궁화의 꽃잎과 꽃순의 테두리, 꽃순 내부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꽃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색상

경기도의회 노랑 (Gyeonggido Assembly Yellow)		PANTONE 115C R245 G231 B41 C7 M4 Y86 K0
경기도의회 자주 (Gyeonggido Assembly Reddish Purple)		PANTONE 1815C R125 G40 B44 C50 M93 Y84 K24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 마스코트 '소원이

(1)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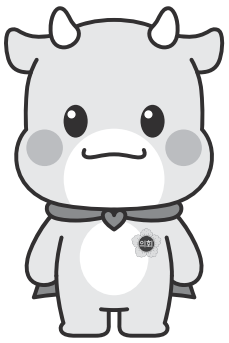

(2) 마스코트 슬로건형

2. 스토리

경기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재치와 성실함으로 소문난 소, 소원이가 살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뚝딱 해내는 소원이는 곤경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보면 두 발로 달려가 도와주며 어느새 마을의 든든한 해결사가 된다.

마을의 해결사 소원이에 대한 소문은 마을의 '소퍼 히어로'라는 별명으로 마을 밖, 경기도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도의회는 소원이에게 의회에서 함께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제안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소원이는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인다.

의회의 구성원이 된 소원이는 경기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경기도의 '소퍼 히어로'가 되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중이다.

3. 성격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재주가 많고 지식이 풍부해 어떤 문제든 뚝딱 해결한다. 정의로운 성격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빡빡한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철저한 계획형!

이웃들의 미소와 칭찬은 소원이의 열정을 무한히 솟아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4. 색상

소원이 베이지 (Sowonee Beige)		PANTONE 7507C R254 G223 B179 C0 M15 Y35 K0
소원이 주황 (Sowonee Orange)		PANTONE 2026C R228 G102 B72 C0 M70 Y70 K5

5. 턴 어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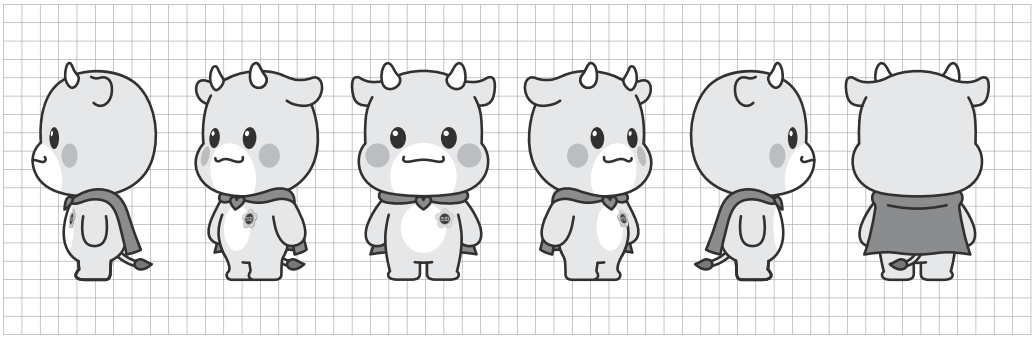

6. 응용동작

1. 경기도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17.] [경기도조례 제4938호, 2015. 6.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6.17.>

제3조(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의정 도민참여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의회 의정 도민참여단(이하 “도민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도민을 말한다. <개정 2022.7.19., 2025.1.2.>

제3조(역할) ① 도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 도의회 및 경기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개정 2022.7.19.>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개정 2025.1.2.>
3. 도정, 교육행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개정 2022.7.19.>
4.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신설 2022.7.19.]
5. 도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개정 2022.7.19.>
6.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② 도민참여단이 그 활동을 완료한 때에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개정 2025.1.2.>

제4조(구성) ① 도민참여단은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

② 도민참여단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2.7.19.] <개정 2025.1.2.>

③ 도민참여단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④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민참여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의원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2.7.19., 2025.9.26.>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도민참여단은 제3조에 따른 각종 제안·건의 등을 할 수 있고, 제10조의 도민참여단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전문개정 2022.7.19.]

② 제1항의 제안·건의 및 의견 등은 우편·전화·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민참여단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전문개정 2022.7.19.]

③ 도민참여단이 제출한 제안·건의 및 의견 등은 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도민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개정 2025.1.2.>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건의 및 의견 등을 심사하기 위해 도민참여단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

② 제안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사무처 5급 상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제안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내·외부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도민참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5.1.2.>

[본조신설 2022.7.19.]

제8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다른 시·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도민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25.1.2.>
4. 그 밖에 도민참여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도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

제9조(도민참여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분기별 1회 회

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② 의장은 도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민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③ 의장은 도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④ 의장은 도민참여단의 위상과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

[제목개정 2025.1.2.]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효율적인 도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제4조에 따른 도민참여단 중 심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7.19., 2025.1.2.>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7.19.>

1. 도민참여단의 세부 역할 부여 <개정 2025.1.2.>
2. 분과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도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

④ 삭제 <2022.7.19.>

제11조(신분증) ① 의장은 도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9.]

제12조(수당 등) ① 도민참여단이 제3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원고료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도민참여단의 제안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제안에 대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본조신설 2022.7.19.]

[제목개정 2023.8.7.]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제14조(기록관리) 간사는 도민참여단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5.1.2.>
제15조(포상) 의장은 도민참여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7.19.]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5.7.>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도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참여 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운영)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등)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 개인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0.20., 2022.1.6.>

제2조(감사)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4.10.21., 2022.7.19.> [단서삭제 2022.7.19.]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시행 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7.7.17., 2022.7.19.>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4.10.21.>

제3조(감사계획서의 변경) ①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장소의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변경요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안한다.

[본조신설 2022.7.19.]

제3조의2(감사시기의 변경) ① 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사기간 내로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③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시기의 변경을 제의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5일 전까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변경시기를 정하여 각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7.19.>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④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① 감사특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② 감사특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부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21., 2018.8.1., 2022.7.19., 2025.5.7.>

제6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②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제8조(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개정 2014.10.2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경기도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11.10.20., 2022.1.6.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개정 2010.11.8., 2014.10.21., 2022.1.6.>
4. 법 제16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2.1.6.>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6.>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14.10.21., 2015.4.8., 2022.1.6.> [단서신설 2015.4.8.]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도의 사무 <개정 2014.10.21., 2022.1.6.>
2. 도 및 도지사,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4.10.2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나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② 제1항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나 서류의 제출,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5.5.7.>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제12조의2(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①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7.]

제13조(신문사항의 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이나 위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제14조(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 일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신문순서) 신문의 순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희망하는 의원이나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각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1., 2018.8.1., 2022.7.19.>

제16조(의장이나 위원장의 신문) 의장이나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제17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6.>

② 증인은 제1항의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9조(증인선서) ① 의장이나 위원장(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과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0., 2022.1.6.>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

제20조(증언의 범위와 방식) ① 증인 등의 증언·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 등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진술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 등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 등이 이미 증언·진술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21조(증인 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방송이나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③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등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④ 제3항에 따라 증인 등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장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나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일당과 여비 등 비용지급)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일당과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3.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도지사 및 교육감이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22.1.6.]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도 및 교육청이 직·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개정 2014.10.21.>

③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일당,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7., 2022.1.6.>

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당과 여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개정 2022.1.6.>

⑥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감사나 조사의 장소) 감사와 조사는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24조(공개의 원칙) 감사와 조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주의의무)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감사나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보고나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감사보고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대상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대상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4.10.21., 2022.7.19.>

③ 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2.7.19.>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 한다. [신설 2015.4.8.]

제29조(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4.10.21.>

②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 등의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4.10.21.>

③ 삭제 <2019.10.31>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10.21.>

⑥ 삭제 <2014.10.21.>

⑦ 삭제 <2014.10.21.>

제32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7., 2014.10.21., 2025.5.7.>

제3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위반내용 및 횟수	부과기준 금액
서류 미제출	미제출 1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미제출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불응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 서 거 부	거부 1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부 2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증 언 거 부	일부거부 1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	3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비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4. 22.] [경기도의회규칙 제13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4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7.7.5., 2018.8.3., 2022.10.21.>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집회일 3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7.5., 2022.10.21.>

③ 제1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위원회간 경합감사의 조정 <개정 2022.10.21.>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해당 감사위원회 소관 여부 <개정 2022.10.21.>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0.21.>

⑤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서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조사 실시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2018.8.3., 2022.10.21.>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에 부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감사위원회의 취지설명을 듣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감사나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7.22.>

제7조의2(사무보조자 위촉 및 해제)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라 함은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7.7.5.>

②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업무 수행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하고,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전후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22.] <개정 2017.7.5.>

제7조의3(준용규정) 사무보조자의 복무와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7.22.]

제8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요구,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과 단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해당 조사위원회나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이나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와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와 서류 등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이나 감사·조사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1조(감사와 조사의 장소) 의장이나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반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이나 사무보조자 또는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과 그 밖의 참가자석이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12조(통보와 보고·제출 및 출석요구서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제4항에 따른 불출석이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소명절차) 조례 제17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려면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4조(소명의 수락) 제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으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5조(송달방법) 조례 제18조제1항의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선서서)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선서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나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나 조사의 중지를 의결하려면 의장이나 감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감사나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나 위원이 감사나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8조(감사와 조사의 결과보고)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와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와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29.>

③ 제2항의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 이란 감사나 조사결과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감사와 조사의 기록과 보존) ① 감사와 조사에 관한 기록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감사와 조사에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해 위촉된 사무보조자의 수당은 위원회 감사·조사 계획서에 따른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중 기본료를 일비로 지급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07.22.]

제21조(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의원 10명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2025.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51호, 2025.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2021.7.14.>

제2조(범위)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6., 2021.7.14.>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좌기관, 실·국장,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5.1.2.>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5.17.,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8.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 [신설 2013.11.6.] <개정 2021.7.14., 2022.1.6.>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실장·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개정 2021.7.14.>
[전문개정 2019.4.29.]
1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체나 기관의 임원, 실장·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
[전문개정 2021.7.14.]

부칙 <20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시행 2025. 10. 2.] [경기도의회규칙 제144호, 2025. 10.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0.20., 2021.12.31.>

제2조(등록) 경기도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3.17.>

제4조(개회식)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20.> [단서개정 2021.3.2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14.6.30., 2021.12.3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4.6.30.]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3.] <개정 2021.12.31.>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5.13.] <개정 2021.12.31.>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1.12.31.>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3.>

제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개정 2021.3.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이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4.7.4.]

제9조의2(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교섭단체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공휴일 제외)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은 별도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당일 등록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10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3.17., 2024.6.14., 2024.7.4.> [단서개정 2024.6.14.]

제11조(의장의 직무협의)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미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21.12.31.>

②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려면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이하 "대표회의" 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보고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대표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나 그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의는 의안관련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1.>

④ 대표회의의 협의결과나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이나 관련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발언내용은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 정리권이나 질서 유지권 등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6.30., 2021.12.31.>

제13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4.5., 2021.12.31.>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3조제1항의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4.6.30.]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5조(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과 부의장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0., 2021.3.17.>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

③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제1항의 해당의원은(또는 직무대행 의원은) 의장과 부의장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6.30.>

제16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와 공개

제17조(회기) ① 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의결로써 연장한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7조의2(국민의례 시 정보접근성 보장) 본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실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8.]

제18조(개의) 본회의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나 정회 또는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7조에 따라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나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0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20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0.>

[본조신설 2011.10.20]

제21조(회의의 공개) ① 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22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한 1일의 의사일정(이하 “당일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한 회기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3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7.01.>

1.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개정 2020.07.01.>
2.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경우 <개정 2020.07.01.>

②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0.07.01.]

③ 제1항제1호의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0.07.01.]

제24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과 미처리 안건) 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회기연장이나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단축에 관한 건
5.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6.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안건 회부에 관한 건
7. 선결 동의
8.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

② 의장은 당일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에 관하여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거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절 의안과 동의

제25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나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전문개정 2024.7.4.] <개정 2025.10.2.>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는 연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날인(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인장에 한한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 2021.12.31., 2024.7.4.> [제2항에서 이동 <2025.10.2.>]

④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6.30.] [제3항에서 이동 <2025.10.2.>]

⑤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8.] [제4항에서 이동 <2025.10.2.>]

제2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발의 등) ① 주민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②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3.7.10.>] <개정 2023.7.10.>

③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10.>]

④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7.10.>]

[본조신설 2021.12.31.]

제26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1.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결의안
3.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개정 2014.6.30.>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개정 2014.6.30.>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개정 2014.6.30.>
8. 의원 청가 (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하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의의 건 <개정 2025.9.16.>
9.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2.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재의의 건
14.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5. 위원회의 제출의안
16.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7.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③ 삭제 <2021.3.17.>

④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7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의2(입법예고) ① 의회의 심사대상인 조례안 중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위원회에서 법제과장에게 의뢰하여 경기도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0.20]

제28조(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이하 “관련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 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외한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교섭단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3.>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29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9.]

1. 천재지변의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안건을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⑦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30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3조(의안과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청구하고,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안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0.>

제34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6.]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2.12.26.]

제3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③ 의장은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6조(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37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의결로써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8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또는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하면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40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안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41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4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7.10., 2025.9.16.> [단서신설 2023.7.10.]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제45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와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발언원칙) ① 집행부에 대한 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또는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과 그 밖에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6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장과 협의하는 경우 발언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단서신설 2025.10.2.]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와 발언자를 정한다.

④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와 발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9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50조(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와 토론이 끝난 경우에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0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

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12.29.]

제5절 표결

제51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52조(표결의 참가) 표결하는 경우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3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전문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1.12.31.] [후단신설 2021.12.31.]

제55조(기명투표·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전문개정 2022.4.14.]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③ 투표 시 각 의원은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카드를 카드함에 넣은 다음 투표결과지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신설 2022.4.14.]

④ 투표결과지나 투표용지의 수가 전자카드의 수나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4.14.>

⑤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단서신설 2008.1.7] [단서삭제 2021.3.17.]

제57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8조(회의록의 구분)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임시회의록 :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임시회의록
2. 전자회의록 : 전자적 형태로 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배부회의록
3. 배부회의록 :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회의록
4. 보존회의록 : 배부회의록 중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장 등의 서명날인 후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5. 비공개회의록 :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전문개정 2008.5.16]

제59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등의 회의를 여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와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와 회의중지 또는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8. 의장의 보고
9. 위원회의 보고서
10.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2. 의사
13.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
14.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5. 서면질문과 답변서
16. 의원의 발언보충서
17.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하되,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④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게재 요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보존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의회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보존회의록의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6.30.>

1. 법조문이나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③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5.16]

제62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전자회의록 형태로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31.] <개정 2025.9.16.>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이를 타인에게 열람이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정례회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 회기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5.9.16.]

[전문개정 2008.5.16]

제63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반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08.5.16]

제7절 원격영상회의

제64조(원격영상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 방지
2. 천재지변

[본조신설 2021.5.11.]

제65조(원격출석·발언·표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41조와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66조(원격표결방법)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54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67조(준용)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68조 삭제 <2008.5.16>

제69조 삭제 <2008.5.16>

제70조 삭제 <2008.5.16>

제4장 위원회

제7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71조의2(조례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3.]

제72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위원회 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나 공청회의 장소는 위원회의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회의실로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 수 있다.

제74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5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7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나 토론 또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제안자의 취지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9.0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신설 2025.10.2.]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2항에서 이동 <2025.10.2.>]

④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0.2.>]

제7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를 듣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7.10.]

제76조의3(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7.4.]

제77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관하여 회수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9조(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부위원장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9.]

④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1.9.>]

[전문개정 2011.10.20]

제79조의2(위원회의 표결방법) 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0조(연석회의)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이 있으면, 그 안건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② 소관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관련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로 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6.>

④ 연석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관련 위원회의 출석위원수에 상관없이 소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러나 관련위원회의 위원이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유회된 것으로 본다.

⑤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위원회의 회의차수에만 산입한다.

⑥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교환만 할 수 있으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다만, 연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결정은 할 수 있으며, 소관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81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81조의2(청문회)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2.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
3. 조례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단, 인사와 예산에 관한 안건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8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사한 경우 제84조 후단에 따라 소위원회의 회의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6., 2021.12.31.>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8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84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제안설명·보고·질의·답변·토론·소수의견의 요지와 표결결과 등 회의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와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14.6.30.>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86조(연석회의 회의록)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연석회의의 회의록은 소관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4.6.30., 2018.8.3.>

제8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88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나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위원이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경과나 결과 또는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8조의2(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8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5]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9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관하여 의결한다.

제92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5.16>

제6장 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질의응답

제94조(도지사 등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교육감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나 교육감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

의나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18.8.3.>

제95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96조(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7조(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이나 도정 및 교육행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대집행부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질문자의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제5항의 질문자의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0>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⑨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질문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는 회기 중에 의결로써 도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99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97조에 따라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5.16>

② 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에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9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16>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100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1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한 후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02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하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12.31.>

제103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

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장 질서

제10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105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20.07.01.>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반입
6.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폭력행사 등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10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07.01.>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9.]

제107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0.07.01.>

②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 단체는 방청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

제108조(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이나 단체방청권 또는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109조(방청권의 교부와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수석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0.07.01.>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

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나 성명, 직업과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때에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개정 2020.7.1.>

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또는 일부)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 있다.

[신설 2014.6.30.]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9.16.]

[제목개정 2025.9.16.]

제11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전문개정 2021.3.17.]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20.07.01., 2021.3.17.>
5. 삭제 <2021.3.17.>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개정 2021.3.17.>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이용 행위 [신설 2021.3.17.]
9. 그 밖의 소란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1.3.17.>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3.17.]

제112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내(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7.>

③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4.6.30.]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6.30.]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⑥ 제1항과 제5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0.>

제9장 징계

제11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10.16, 2009.9.24.,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05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의원이 경고 또는 제지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여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114조(징계에 대한 자문)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08.10.16]

부칙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기도의회 회의록의 발간과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5. 31.] [의회훈령 제63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과 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와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경우에도 같다.

②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규칙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록 원고가 규칙 제6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회기에 관계없이 일련호수로 작성·발간한다. [신설 2020.03.17.] <개정 2022.05.31.>

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회의록은 피감사기관별, 일자별로 작성·발간한다. 다만,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감사한 경우 또는 당일의 감사가 자정을 지나 끝난 경우에는 한 호의 회의록으로 작성·발간한다. [신설 2020.03.17.]

제3조(보존회의록의 열람과 복사) 의원이 보존회의록을 열람이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과 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존하되 규칙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3.17.]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회의록의 공표 등)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면 인터넷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된 후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제6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발언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의원이 참고문서나 발언 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참고문서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록 자구를 정정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요구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 및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기재한다. [전문개정 2020.03.17.]

제9조(회의록 원고의 열람과 복사) 의원이나 발언자가 회의록 발간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이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녹음)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속기업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제11조(발언내용의 불게재) ① 의장이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은 ----------, ----------으로 표기하고 산회시간 표기 다음에 줄을 바꾸어 “(----------, ----------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라 표기한다. 이 경우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내용을 게재하지 아니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존회의록에는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게재하되 밑줄을 그어 표시하고 산회시간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 표기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임시회의록·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3.17.]

제12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배부와 보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2.5.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1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9., 2024.5.16.>

제2조(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의 수)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7.19., 2024.7.18.>

1.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3.2.28.>
3. 경제노동위원회(이하 “경제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08.06.>
4.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4.29.>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원회”라 한다)
6.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원회”라 한다)
7.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
8.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
9.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라 한다)
10.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 한다) [신설 2024.7.18.]
1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원회”라 한다)
[제10호에서 이동 <2024.7.18.>]
12. 교육기획위원회(이하 “교기위원회”라 한다)
[제11호에서 이동 <2024.7.18.>]
[전문개정 2019.10.01.]
13. 교육행정위원회(이하 “교행위원회”라 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24.7.18.>]
[전문개정 2019.10.01.]
[전문개정 2018.4.11.]
[제4조에서 이동 <2024.5.16.>]
[제목개정 2024.7.18.]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대변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2024.7.18.>]
바.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2018.11.13.>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3.5.>[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차.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2. 기재위원회 <개정 2023.2.28.>
가. 행정(1)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2.12.30.]
다. 행정(2)부지사 소속 평화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10.1.] <개정 2018.11.13., 2022.7.19.>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라. 경기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바. 경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5.3.31.>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3. 경제위원회
가. 행정(2)부지사 소속 노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19.8.6., 2022.7.19., 2022.12.30., 2024.7.18.>
[전문개정 2014.9.24.]
나. 경제부지사 소속 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2.12.30.] [제파목에서 이동 <2024.7.18.>]
다. 경제부지사 소속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17.] <개정 2020.10.1.> [제타목에서 이동<2024.7.18.>]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9.29.] <개정 2018.11.13.> [제하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기도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08.06.] [제거목에서 이동<2024.7.18.>]

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08.06.]

[제너목에서 이동<2024.7.18.>]

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4.7.18.>

카. 삭제 <2024.7.18.>

4. 안행위원회 <개정 2019.4.29.>

가. 행정(1)부지사 소속 안전관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4.7.18.>

[전문개정 2015.6.17.]

나. 행정(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2018.4.11., 2018.11.13., 2021.8.10., 2024.7.18.>

다. 행정(1)부지사 소속 인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8.6.] <개정 2022.7.19., 2022.12.30.> [차목에서 이동 <2024.7.18.>]

라. 행정(2)부지사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22.12.30.] [제자목에서 이동 <2024.7.18.>]

마.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바.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아.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개정 2025.9.26.>

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6.17.] <개정 2018.11.13., 2021.8.10., 2024.7.18.> [제아목에서 이동 <2024.7.18.>]

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8.10.]

타. 경기푸른미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08.06.>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5. 문체위원회 <개정 2017.3.13.>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기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아트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03.16.>

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한국도자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기도체육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3.13., 2019.4.29.>
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4.19.]

6. 농정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나. 행정(2)부지사 소속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2.12.30., 2023.2.28.>
다. 경제부지사 소속 기후환경에너지국 사무 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7.19., 2022.12.30., 2024.7.18.> [제가목에서 이동 <2024.7.18.>]
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마.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19.>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바.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4.19.>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2024.7.18.>]
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사목에서 이동<2024.7.18.>]
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4.12., 2020.12.31.>
차. 경기도종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7.17.]
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4.19.]
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8.10.] <개정 2023.2.28.>

7. 복지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4.19., 2019.8.6., 2024.7.18.> [전문개정 2014.9.24.]
나. 행정(1)부지사 소속 보건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의 행정지원팀·식품분석팀·미생물검사팀·감염병조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2017.4.19., 2018.11.13., 2019.8.6., 2021.8.10., 2025.9.26.>
라.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0.8.]

8. 건설위원회
가. 행정(2)부지사 소속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2018.11.13., 2019.8.6., 2024.7.18.>

다. 행정(2)부지사 소속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제부지사 소속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바.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만, 제3조제2항제6호타목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 [신설 2019.08.06.] <개정 2021.8.10.>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8.6.] <개정 2020.7.15., 2021.8.10.>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9. 도시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주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나.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5.9.26.]

다. 경제부지사 소속 기후환경에너지국 사무 중 기후환경정책과·기후환경관리과·에너지산업과·에너지관리과·대기환경관리과·환경보건안전과·자원순환과·정원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1.10., 2024.7.18.> [제나목에서 이동 <2025.9.26.>]

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북부지원의 대기환경팀·토양분석팀·수질환경팀·먹는물검사팀·환경생태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1.3.16., 2025.9.26.> [제다목에서 이동 <2025.9.26.>]

마.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24.] [제라목에서 이동 <2025.9.26.>]

바. 삭제 <2016.7.19.>

사. [제아목으로 이동 <2025.9.26.>]

아.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4.11.] <개정 2019.8.6., 2020.7.15., 2021.8.10.> [제사목에서 이동 <2025.9.26.>]

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8.10.]

[제아목에서 이동 <2025.9.26.>]

10. 미래위원회 [신설 2024.7.18.]

가. 경제부지사 소속 AI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부지사 소속 국제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부지사 소속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여가교위원회

[제10호에서 이동<2024.7.18.>]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9.24.] <개정 2018.11.13., 2024.7.18.>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나. 행정(1)부지사 소속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2017.4.19.> [제가목에서 이동 <2024.7.18.>]

다. 행정(1)부지사 경기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5.9.26.]

라. 행정(2)부지사 소속 이민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제다목에서 이동 <2025.9.26.>] <개정 2025.9.26.>

마.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5.9.26.>]

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11.12.>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제마목에서 이동 <2025.9.26.>]

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아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8.14.> [제바목에서 이동 <2025.9.26.>]

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08.06.> [제차목에서 이동 <2024.7.18.>] [제사목에서 이동 <2025.9.26.>]

12. 교기위원회

[제11호에서 이동<2024.7.18.>]

가. 제1부교육감 소속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나.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4.11., 2019.2.28., 2023.2.28., 2024.7.18.> [가목에서 이동 <2024.7.18.>]

다.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3.20.]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라.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13. 교행위원회

[제12호에서 이동<2024.7.18.>]

[전문개정 2023.2.28.]

가. 제1부교육감 소속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나.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4.3.20., 2024.7.18.>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다. 제2부교육감 소속 융합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라. 제2부교육감 소속 인재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16.>]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0.10.8.]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에서 이동 <2024.4.25.>]

[제6조에서 이동 <2024.5.16.>]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4.6.24.]

③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6.24.>]

[제7조에서 이동 <2024.5.16.>]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후단신설 2025.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이하 "의장 등의 보궐선거"라 한다)에 따라 의장·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6.>]

제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허

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16.>]

제8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16.>]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특별위원회의 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1.6.>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2.1.6.]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

제10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마다 1명의 특별위원장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16.>]

제11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4.7.18.>

②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5., 2018.8.1., 2024.7.18.>

③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9조제3항, 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6.>

[제13조에서 이동 <2024.5.16.>]

제12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6.>]

제13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임 또는 교체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4.3.20.]

[제15조에서 이동 <2024.5.16.>]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16.>]

제1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

명의 부위원장(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예산, 정책 등)운영 등의 임무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6.>

⑤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위원장, 비교섭단체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교섭단체 위원수가 같거나 부위원장이 동일한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최다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때 다선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9.>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변경 2018.8.1.]

[전문개정 2018.8.1.]

[제17조에서 이동 <2024.5.16.>]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단서신설 2024.7.18.]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정하는 범위내로 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5.16.>]

부칙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조례 제7549호, 2023. 1. 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경기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사에 관한 사료 수집·전시, 디지털 전시 체험, 회의 모의 체험 및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등 체험형 전시로 도의회의 역사를 보존·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도민과의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2. “사료(史料)”란 도의회가 개원한 날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생성한 것 중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문서, 도서, 사진, 금석문, 서화, 시청각물, 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이하 “경기마루”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경기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디지털 아카이브 체험 운영
3. 본회의 모의 체험 운영
4.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5. 경기마루 홍보 활성화
6. 그 밖에 경기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경기마루에 전시관, 체험장, 기념관, 정보센터 등 주요시설과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제6조(사료의 수집과 관리) ① 의장은 경기마루의 보존·관리 및 전시할 사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분야, 구입절차, 예산 등을 포함한 사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료의 기증) ① 의장은 보존, 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사료는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受贈)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는 기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기증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3명의 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평균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제3장 사료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료평가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료구입계획의 심의
2. 수집, 구입 및 기증받은 사료의 상태 및 가치 평가
3.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할 사료의 결정
4. 그 밖에 사료와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제11조에 따른 감정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마루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감정위원의 역할 및 위촉) ① 의장은 사료의 진위, 감정가 책정 등을 위하여 사료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2. 사료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 감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의장은 위원회 위원이나 감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4장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관리 및 위탁

제14조(개관시간 및 휴무일) 의장은 경기마루의 개관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대관) ① 의장은 경기마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대관 신청 및 허가, 그 밖의 사항 등은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탁) ① 의장은 경기마루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역사자료에 관한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사”란 경기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사료를 조사·연구하여 편찬한 결과물을 말한다.
2.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편찬”이란 경기도의회 관련 사료 또는 그 사료의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편찬)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사료를 정리하여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추가로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역사상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
2.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직전 의회까지의 사료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23.8.7.]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도의회사 사료 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3. 경기도의회 의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3.8.7.>]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역사 또는 간행물 편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2023.8.7.>]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8.7.>]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9.26.>

[제8조에서 이동 <2023.8.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

[제9조에서 이동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7.>]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의장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7.>]

제13조(협조요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사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7.>]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제13조에서 이동 <2023.8.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 16.] [경기도조례 제8060호, 2024.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 의원 명부 대신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의원)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교섭단체 대표의 직무 대행) ① 대표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교섭단체 내부규정으로 대표의원을 재선출하며, 선출되기 전까지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의원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섭단체 내부규정에 따른 직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대행자는 교섭단체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정책위원회) ① 교섭단체는 정책 및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정책위의 조직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책위의 활동은 도민의 복리증진 등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한정한다.

④ 정책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⑤ 정책위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하여 비상근 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정책위 및 비상근 위원의 기능, 구성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우수의원 표창 등)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의원을 대상으로 격려품 지급 또는 표창,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10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다)로부터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26.>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제2호에서 이동 <2025.1.20.>]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3호에서 이동 <2025.1.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⑧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26.]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시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참고하여 원활한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②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전문개정 2025.9.26.]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4.10.11.>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4.10.11., 2025.9.26.>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9.26.>

제12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기 전에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제1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9.26.>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경기도, 인사청문 대상기관, 국가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관등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5.9.26.]

제15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인사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

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6.>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개정 2024.8.14., 2024.10.11., 2025.9.26.>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제3조제2호 관련)

연번	기관명	직위	비고
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2	재단법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 장	
3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 표 이 사	
4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 표 이 사	
5	경기콘텐츠진흥원	원 장	
6	경기복지재단	대 표 이 사	
7	한국도자재단	대 표 이 사	
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 장	
9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사 장	
10	경기연구원	원 장	
11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12	경기문화재단	대 표 이 사	
13	경기도일자리재단	대 표 이 사	
14	재단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 장	
15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 장	
16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 장	
17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 장	
18	경기도교육연구원	원 장	교육청 출연기관
19	경기도의료원	원 장	

1.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5호, 2023.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도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도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1. 의회 회기 기간 중일 때
2. 그 밖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주, 5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도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735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의회 청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사"란 경기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청사)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사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제5조(청사 공간 배정) ① 청사 공간 배정은 의장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청사 공간은 해당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회의장, 교섭단체대표실(대표실, 회의실, 사무실), 소속 의원실 : 교섭단체 대표
2. 상임 및 특별위원회실, 전문위원실 : 해당 위원장
3. 부의장실 : 해당 부의장

② 처장실, 부서별 사무실, 회의실 등 기타 청사시설의 공간 배정 시 제1항 각호의 시설 변동을 초래하거나 의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관계자 및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9.16.>

제6조(의원실 배정 등) 의원실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청사 재배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의원실을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원실을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된 의원실을 변경할 수 있다.
2. 비교섭단체 의원 : 교섭단체에 배분한 의원실을 제외한 의원실을 대상으로 의장이 개별 배정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배정된 공간은 해당 직위 재직 중에만 사용 가능하며, 회의나 공무수행 등 통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을 사용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임차 청사 관리) 임차 청사 사용 부서의 장은 해당 사무실의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칙(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시행 2025. 9. 19.] [훈령 제79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이란 이용자가 상호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3. “서버”란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갖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관리”란 각종 자료를 수집·가공·처리·전달·저장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구성하고, 서비스 자료를 등록·변경·추가 또는 삭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5. “모바일 서비스”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버의 설치장소) 홈페이지의 서버는 경기도청 정보화부서 소관의 전산기계실에 설치한다.

제4조(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도의회 의장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주민에게 도의회를 소개하는 각종 정보 제공
2. 도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보 제공
3. 주민의 편익증진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 공간 조성
4. 청소년이 도의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

③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장은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및 홈페이지 정보관리부서(이하 “정보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개발·유지 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④ 홈페이지는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정보는「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한다. 다만, 정보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10., 2022.6.27.>

② 홈페이지의 서비스별 정보관리부서와 관리책임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

한 정보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10.>

③ 주관부서는 정보관리부서가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각 페이지별 정보관리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5.10., 2022.6.27.>

④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⑤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서비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⑥ 주관부서는 홈페이지 서비스별 담당자 현황 및 정보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관리부서가 해당 정보를 적정하게 갱신·추가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별 담당자 지정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0.>

⑦ 주관부서 및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하여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에 저촉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7.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실명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2021.5.10.>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명백한 오류 및 연습성·장난성 내용인 경우

제6조(게시판 설치·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7조(홈페이지 구성 변경) ① 주관부서 및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② 정보관리부서의 장이 별표의 1차 메뉴· 2차 메뉴·3차 메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내

용 등을 포함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관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5.10.]

제9조 삭제 <2021.5.10.>

제10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보관함으로써 사고가 있을 때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② 시스템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1.5.10.]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79호, 2025.9.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개정 2022.6.27., 2025.9.19.>

홈페이지 서비스별 정보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제5조 관련)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의회홈페이지				
의회소식	공고/소식		전체부서	-
의회소식	채용공고		인사과	인재개발팀장
의회소식	의정뉴스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장
의회소식	보도자료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의회소식	언론보도		의정지원과	의정지원 1 · 2 · 3팀장
의회소식	해명자료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의회소식	칼럼/기고문		의정지원과	의정지원 1 · 2 · 3팀장
의회소식	세미나 · 토론		전체부서	-
의회소식	의정갤러리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의정활동	의사일정	의정캘린더	디지털의사과, 전문위원실	의사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정활동	의사일정	연간회기일정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정활동	의사일정	본회의 / 상임위	디지털의사과, 전문위원실	의사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정활동	대집행부질문 / 답변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정활동	5분 자유발언 등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정활동	의원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소개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원연구단체	연구단체현황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보고서	법제과, 전문위원실	입법정책팀장, 정책지원팀장
의정활동	국제교류	국제교류지역 현황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의정활동	국제교류	활동보고서	총무과, 전문위원실	교류협력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회기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원겸직현황	인사과	의정교육팀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현황	전체부서	팀장, 행정지원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국제교류 현황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원정책연구 현황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학술연구용역 현황(의원)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학술연구용역 현황(사무처)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대외협력팀장, 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행사개최 현황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회의록	(내부 링크)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행정사무조사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방의회 질의답변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안 처리현황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교섭단체 운영 현황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위원회 안건 검토보고서	(내부 링크)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	(내부 링크)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정지원과	지원총괄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현황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예결산분석 지원현황	예산분석과	예산정책팀장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 민원처리현황	(내부 링크)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 발간물 현황	(내부 링크)	
의정활동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회 자료체계 구축 현황	(내부 링크)	
위원회	위원회 소식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위원회	위원회 의안처리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위원회	위원회 자료실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위원회	위원회 갤러리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위원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위원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전문위원
의원소개	의장단		총무과	비서실장
의원소개	현역의원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의원소개	역대의원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도민참여	진정민원		총무과	민원소통팀장
도민참여	청원		총무과	민원소통팀장
도민참여	주민조례청구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도민참여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도민참여	정보공개 청구방법 안내		총무과	총무팀장
도민참여	어린이의회		(내부 링크)	-
도민참여	청소년의회교실		(내부 링크)	-
도민참여	방청 / 견학 / 대관	방청안내	디지털의사과, 전문위원실	의사팀장, 행정지원팀장
도민참여	방청 / 견학 / 대관	견학안내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도민참여	방청 / 견학 / 대관	대관안내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장
도민참여	방청 / 견학 / 대관	신청내역 보기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도민참여	의정 도민참여단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도민참여	도민인식조사 결과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장
도민참여	사전정보공표		인사과	의정교육팀장
도민참여	자유게시판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의회소개	열린 의장실	인사말	총무과	비서실장
의회소개	열린 의장실	약력	총무과	비서실장
의회소개	열린 의장실	연설문 / 축사	총무과	비서실장
의회소개	열린 의장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외부 링크)	-
의회소개	부의장실		총무과	의전팀장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의회소개	의회상징	의회슬로건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의회소개	의회상징	의회마크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의회소개	의회상징	의회마스코트 소원이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의회소개	의회구성		총무과	총무팀장
의회소개	의회운영	의회권한 · 기능	총무과	총무팀장
의회소개	의회운영	회기운영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회소개	의회운영	의안처리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회소개	의회운영	예산안 심의 · 결산 승인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회소개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 · 조사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회소개	교섭단체	목적 및 구성요건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기획팀장
의회소개	교섭단체	교섭단체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기획팀장
의회소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총무과	총무팀장
의회소개	의회연혁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회소개	홍보영상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장
의회소개	홍보대사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의회소개	사무처	조직현황	총무과	총무팀장
의회소개	사무처	업무계획	총무과	총무팀장
의회소개	사무처	정책지원관 현황	의정지원과	지원총괄팀장
의회소개	청사안내	층별안내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장
의회소개	청사안내	찾아오시는 길	공간정보화과	공간기획팀장
의회소개	청사안내	북부분원안내	총무과	총무팀장
의회소개	경기마루	경기마루 안내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회소개	경기마루	경기마루 VR	(내부 링크)	의사팀장
의회소개	경기마루	경기마루 해설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의회소개	경기마루	소통창구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자료실	법규정보	입법예고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자료실	법규정보	경기도자치법규	(외부 링크)	-
자료실	법규정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외부 링크)	-
자료실	법규정보	현행법령	(외부 링크)	-
자료실	법규정보	선거법 사례	(외부 링크)	-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예결산 관련 분석 정보	예산분석과	예산정책팀장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예산안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결산안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예산서	(외부 링크)	-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결산서	(외부 링크)	-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교육청예산안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교육청결산안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교육청예산서	(외부 링크)	-
자료실	예 · 결산 정보	경기도교육청결산서	(외부 링크)	-
자료실	정책연구보고서	의원연구단체	법제과, 전문위원실	입법정책팀장, 정책지원팀장
자료실	정책연구보고서	의회사무처	전체부서	-
자료실	업무추진비공개		전체부서	팀장, 행정지원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월간 입법동향	법제과	입법운영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의회홍보책자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의회관련 법규집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의정백서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자료실	의회간행물	기타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자료실	용어해설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자료실	전자 · 영상회의록		(내부 링크)	-
자료실	의정지원정보센터		(외부 링크)	-
자료실	국회 · 지방의회 의정정보		(외부 링크)	-
회의록				
회의록	전자회의록	최근회의록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회기별 회의록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회의별 회의록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연도별 회의록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의원별 회의록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대집행부질문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5분자유발언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건의안 및 결의안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행정사무감사/조사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주제어검색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부록검색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인사청문회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전자회의록	소위원회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최근회의영상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본회의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상임위원회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특별위원회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행정사무감사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회의록	영상회의록	대집행부질문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5분자유발언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영상회의록	인사청문회영상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회의록	인터넷생방송		(내부 링크)	
회의록	회의록개요		디지털의사과	기록1 · 2팀장
인터넷방송				
생방송	생방송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생방송	생방송일정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영상회의록	최근회의영상		(내부 링크)	
영상회의록	본회의		(내부 링크)	
영상회의록	상임위원회		(내부 링크)	
영상회의록	특별위원회		(내부 링크)	
영상회의록	행정사무감사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영상회의록	대집행부질문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영상회의록	5분자유발언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의정뉴스	의정뉴스		언론홍보과	홍보팀장
기타영상	홍보영상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장
기타영상	생방송 다시보기		언론홍보과	뉴미디어팀장
기타영상	의회 유튜브		(외부 링크)	
상세검색	상세검색		공간정보화과	AI의정혁신팀장
의안정보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의의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종류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의안개요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의안검색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건의안 · 결의안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처리안 · 계류안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의안통계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의안통계	위원회별 의안현황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의안통계	의안 계류현황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의안정보	입법예고		법제과	입법정책팀장
어린이의회				
어린이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어린이의회	재미있는 어린이의회		언론홍보과, 디지털의사과	홍보팀장, 의사팀장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교실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어린이의회	견학하고 싶어요!		디지털의사과	의사팀장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지역상담소				
지역상담소	지역상담소란		총무과	민원소통팀장
지역상담소	상담민원 신청		총무과	민원소통팀장
지역상담소	우리동네 지역상담소		총무과	민원소통팀장
지역상담소	보도자료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e브리핑				
e브리핑	보도자료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e브리핑	주요일정	주간행사계획	총무과	총무팀장
e브리핑	주요일정	기자회견 일정/신청	언론홍보과	언론팀장
e브리핑	주요일정	세미나 · 토론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기획팀장
e브리핑	의정활동		디지털의사과, 전문위원실	의사팀장, 의안팀장, 행정지원팀장
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 소개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 활동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위원회홈페이지	의안검색		디지털의사과	의안팀장
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 회의록		디지털의사과, 공간정보화과	기록1·2팀장, AI의정혁신팀장
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 자료실		전문위원실	행정지원팀장
의원홈페이지				
의원홈페이지	의원소개		의원, 의정지원과	의원, 의정지원1·2·3팀장
의원홈페이지	의원동정		의원, 의정지원과	의원, 의정지원1·2·3팀장
의원홈페이지	의정활동		의원, 의정지원과	의원, 의정지원1·2·3팀장
외국어홈페이지				
외국어홈페이지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총무과, 공간정보화과	교류협력팀장, AI의정혁신팀장

4.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09호, 2025. 10.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디지털 의정 추진의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의정 데이터 관리, 연계·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장과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디지털 도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는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5.10.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정보화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의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19.06.18.]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①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7.17.>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0.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 / 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 / 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별표 2 <개정 2019.06.18.>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 분석지표	평가의견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 조례	
	위임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는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제외)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유효성 및 효율성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공평성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 분석지표	평가의견
4. 주민의견 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지원의 적정성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의 필요성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그 밖의 사유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2.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 운영 조례

[시행 2025. 10. 10.] [경기도조례 제8713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②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강사료 등 필요경비

③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법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서개정 2025.9.26.]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개정 2022.10.31.>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5명
3.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2명

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간사·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사업비·기간 등 적정성) 및 결과 평가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체 활동결과 평가
6. 우수 연구활동 연구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심사 시 연구단체별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0조(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9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1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3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회장 및 의회사무처장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해당 연구단체 회장과 의회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4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회수할 수 있다.

1. 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 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0.]

제15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는 소속 위원으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7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와 연구단체 구성 이후 의원 소속 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 의원은 3개까지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는 가입단체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단체는 1개 교섭단체 소속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의 경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있다.

⑥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3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⑦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단체의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하여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기 만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5.7.]

[제13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6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연구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이 경우 등록의 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7조(연구용역 등 관리) ①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관리한다.

④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5조에서 이동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제18조(포상)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평가지침에 따라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0.10.>]

부칙 <202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제13조제2항,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법제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22.]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

[시행 2025. 9. 16.] [경기도의회규칙 제143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경기도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경기도의회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8. “판결금 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의 절차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

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소장을 처리 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에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경기도의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 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경기도의회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 이라 한다)하고, 소송총괄부서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
   마.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방침(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3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5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의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0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 등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송총괄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 등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14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경기도의회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민사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국가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등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청구서·판결문 정본·판결확정증명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금 등의 변제 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 등(특별회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각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을 해태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었거나 예산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 및 판결금 등 지급 지체행위가 소송수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송총괄부서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17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18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민사소송·형사사건 모두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1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제23조(중재사건의 수행) 경기도의회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중재 또는 중재합의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수행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행정심판 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①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27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써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 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장 경기도의회 소송심의회

제28조(경기도의회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경기도의회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총괄부서가 상정하는 사건에 관한 화해 및 조정, 상소포기 등 중요사항의 결정
2.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3.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4.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5.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심의위의 기능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43호, 202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구분	내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소송·행정소송	1. 가압류, 가처분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30. 다만, 본안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2-1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한다.	1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2.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 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2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중재사건은 경제적 이익이 중재 목적 가액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 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 · 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2,000,000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0,000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0,000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0,000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0,000		
	바. 10억원 이상	10,000,000		
	2-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0,000		
	3. 환송심	원심의 1/2		
	가. 재항소심	항소심의 1/2		
	나. 재상고심	상고심의 1/2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3,000,000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10,000,000		
형사사건	1. 개인 단독사건	3,000,000		1.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2. 다수 관련사건	5,000,000		
	3.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0,000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기타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하되, 본안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제26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함

5.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와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2025.9.26.>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4.21.>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2.10.31.]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서 의장이 소송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2025.9.26.>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디지털의사과장을 통해,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중 발생한 사항은 의원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장에게 신청한다. [전문개정 2022.10.31.] <개정 2025.9.26.>

③ 삭제 <2022.10.31.>

④ 삭제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 또는 원고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디지털의사과장 또는 의원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개정 2025.9.26.]

[본조신설 2022.10.31.]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기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31.>

1. 제2조의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개정 2022.10.31.>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전문개정 2022.10.31.]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전문개정 2022.10.31.]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개정 2022.10.31.>

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전문개정 2022.10.31.]

③ 삭제 <2022.10.31.>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경기도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2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2.10.3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법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11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

제1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31.]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지급기준
사건별</th><th>착수금</th><th rowspan="2">소송비용
청구시의 구비서류</th></tr>
<tr><th></th></tr>
<tr><td rowspan="3">민사
소송</td><td rowspan="2">가. 본안
사건</td><td>(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td><td>◦ 300만원 이내</td><td rowspan="3">◦ 신청서
◦ 소가증명원</td></tr>
<tr><td>(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td><td>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td></tr>
<tr><td colspan="2">나. 환송심</td><td>◦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td></tr>
<tr><td>형사
소송</td><td colspan="2">수사단계, 형사재판</td><td>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td><td>◦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td></tr>
<tr><td rowspan="2">기타</td><td colspan="2">◦ 가집행정지신청</td><td>◦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td><td rowspan="2">◦ 신청서</td></tr>
<tr><td colspan="2">◦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td><td>◦ 1,000만원 이내</td></tr>
</table>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 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 · 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6.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제2조(고문의 역할· 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5.>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4.3.5.>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4.3.5.>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의 위촉)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단서신설 2014.3.5.] <개정 2014.3.5., 2015.1.5., 2017.4.12.>

1. 미성년자 [전문개정 2022.10.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설 2014.3.5.]

제4조(고문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정신적 제약으로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2.10.31.]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9.>

제6조(고문의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법제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3.5., 2025.9.26.>

② 의회 의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1.3.16., 2025.9.26.>

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전문위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3.5., 2021.3.16., 2025.9.26.>

④ 법제과장은 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5.] <개정 2025.9.26.>

제7조(자문 사항)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법자문, 정책개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의회 발전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자료의 관리) 법제과장은 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제9조(소송대리와 소송비용) ① 의장은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11.]

[전문개정 2021.3.16.]

[제목개정 2023.10.11.]

제10조(자문료의 지급) 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1.3.16.>

[전문개정 2021.3.16.]

1. 월 20만원
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초과 건당 20만원

② 자문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1.3.16.]

1.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

2. 법제과장의 요청으로 의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5.9.26.>

③ 자문료는 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3.16.]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규정

[시행 2025. 9. 19.] [의회훈령 제79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장의 수여)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23.10.27.]

제3조(사건위임계약서 작성) 의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경기도의회 소송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27.]

제4조(자문실적부의 작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

② 법제과장은 제1항의 자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3조에서 이동 <2023.10.2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79호, 2025.9.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의회에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8명 <개정 2022.10.31.>
2.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정책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입법정책 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과 그 인력의 확충에 관한 사항
7. 자치입법 실적 우수의원의 홍보에 관한 사항
8.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②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개정 2025.9.26.>

제9조(포상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입법 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
2.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입법 과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7.]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규정

[시행 2025. 9. 19.] [의회훈령 제79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입법정책 연구기능과 자치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무의 내용과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검토,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심사 등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라 함은 조례안·의회규칙안 및 연구과제·조사 과제·검토과제 등으로서 도의원 또는 도의회사무처의 다른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법제과장에게 연구·조사 또는 검토를 의뢰하는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5.9.19.>
2. “과제요구자”라 함은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장 또는 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9.19.>

제4조(과제의뢰절차) ① 도의원은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의뢰한다.

② 각 부서는 소관 과장 명의로 과제를 의뢰한다. <개정 2025.9.19.>

제5조(과제의뢰서식) ①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심사의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연구과제의 의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과제 및 검토과제의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의 검토·심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정·개정 이유 및 조례안·규칙안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보서식) ① 조례안·의회규칙안에 대한 검토·심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연구과제·조사과제·검토과제에 대한 결과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제의 접수 및 보고) ① 과제요구자로부터 과제를 접수한 법제과장은 과제접수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법제과장은 접수된 과제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8조(과제요구에 대한 불응) ① 법제과장은 과제요구자로 부터 접수된 과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1. 과제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2. 과제의 내용이 국가 및 도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과제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사항

4. 과제의 처리에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제과장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과제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9조(과제처리과정의 특례) ① 의원입법형식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조례내용의 소관과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법제과장이 작성한다. [단서신설 2006.1.31.] [단서개정 2025.9.19.]

② 의회규칙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당해 사무의 소관 과장이 작성한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상임 위원장 또는 과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이 검토·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④ 법제과장은 도정에 관한 조례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0조(입법예고) ① 제9조제1항의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한 때에는 법제과장이 그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19.>

②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도의회 의장 명의로 공고한다.

[본조신설 2006.1.31.]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79호, 2025.9.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경기도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시행 2025. 9. 19.] [의회훈령 제79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회 입법활동과 현안과제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입법활동과 현안과제 등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0.12.9.>
2. “자문부서”란 자문단에 자문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9., 2025.9.19.>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의 위촉 및 자문 등의 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9.>

제4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4.10.10.>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학과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4.10.1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4.10.10.]
3.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4.10.10.]
4.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 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4.10.10.]

②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0.10.]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9.>

제6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12.9.>

1. 경기도의회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12.9.>
2. 도의회에 현안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문) ①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장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4.10.10., 2025.9.19.>

②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자문단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법제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후단개정 2025.9.19.]

제8조(자문 검토보고서) ① 전문가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검토보고서를 원고형태로 자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법제과장은 자문 요청시 특정 전문가에게 자문의뢰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개정 2025.9.19.>

제9조(자문원고료 지급) ①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자문 검토보고서를 받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원고료 등급결정서를 법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5.9.19.>

② 법제과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료 등급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0조(자문단 관리) 삭제 <2024.10.10.>

제11조(자료관리 등) ① 법제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 내용과 제8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문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한다. <개정 2024.10.10., 2025.9.19.>

② 법제과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제출한 자문검토보고서를 자문 백서로 발간하거나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0.10.>] <개정 2025.9.19.> [본조신설 2020.12.9.]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79호, 2025.9.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평가지침

[시행 2020. 1. 6.] [의회예규 제13호, 2020. 1. 6., 일부개정]

Ⅰ. 평가목적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연구단체)을 평가하여 우수 연구단체를 선정하고 포상(상패)한다. 이는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이 저조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활동 실적평가

1. 연구보고서

1) 평가요건

연구보고서는 내용면에 있어서 그 주제가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과 상호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조례 제·개정 및 입법정책 제언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행사용 세미나 자료집, 소규모 용역에 의한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보고서로 취급되지 아니함.

2) 평가항목별 배점

주관적 평가대상으로서 다음의 4개 항목에 대하여 해당분야 평가위원이 각 항목별로 A~D등급으로 평가한다.

·연구의 창의성(8점~2점)

·내용의 우수성(8점~2점)

·연구의 활용가능성(9점~3점)

·경기도에의 유용성(10점~4점)

※ 등급별 점수

연구의 창의성·내용의 우수성 A(8점), B(6점), C(4점), D(2점)

연구의 활용가능성 A(9점), B(7점), C(5점), D(3점)

경기도에의 유용성 A(10점), B(8점), C(6점), D(4점)

3) 합계점수

연구보고서의 합계점수는 35점 만점으로 한다.

2. 입법 및 연구활동 등

연구단체 지원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연구단체에서 작성제출(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 평가대상으로써 입법활동(조례 제·개정, 결의안 등 채택) 및 연구활동(연찬회·세미나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입법활동(조례 제·개정 및 결의안 등 채택)

(1) 평가요건

조례안은 제정(전부개정 포함)과 일부개정(결의안 등 포함)으로 구분하되,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은 법안 발의연월일 당시에 당해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연구활동의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

(2) 제정 조례안의 단계별 배점

제정조례안은 제정완료시 35점, 제정중(상임위원회 심사단계 등) 진행 단계는 34점을 부여한다.

(3) 전부개정 조례안의 단계별 배점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부개정 완료시 33점, 전부개정중(상임위원회 심사단계 등) 진행 단계는 32점을 부여한다.

(4) 법령 개정안 배점

-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여 법령개정안 제시·건의한 경우 33점을 부여한다.

(5) 일부개정 조례안의 단계별 배점

일부개정 조례안(결의안 등 포함)은 개정(채택) 완료시 31점, 위원회 심사단계 등 개정 진행 단계는 30점을 부여한다.

(6) 정책제안 배점

- 정책제안을 도출하여 제시한 경우 25점을 부여한다.

(7) 입법활동의 합계점수

입법활동의 합계점수는 최대 35점으로 한다.

2) 연구활동(연찬회·세미나 등)

(1) 평가요건

세미나 등 모든 연구활동 관련 행사는 반드시 연구단체 명의로 주최된 것에 한하며, 목적·참가대상·결과보고·경비집행내역 및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세미나·토론회·포럼·연찬회

세미나(또는 토론회 등)는 1회 이상 개최한 경우 10점을 부여한다.

※ 세미나(또는 토론회) 등 개최에 대해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와 증빙할 수 있는 첨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 보고회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총 8점을 부여한다.

- 착수보고회 3점, 중간보고회 3점, 최종보고회 2점

※ 위의 사항이 평가항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단체 회원이 반드시 3인 이상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둘째, 내용은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시 활동현황의 주요내용 요약부분에 포함하고 보고회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현지출장조사·설문조사·자체간담회

연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와 현지출장조사(현장방문을 포함한다), 자체간담회를 실시한 경우 2점을 부여한다.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시 활동현황의 주요 내용요약 부분에 포함한 경우에 인정.

(5) 연구활동(연찬회·세미나 등) 가점

세미나·포럼·연찬회 개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현지출장조사(현장방문을 포함한다)·설문조사·자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 해당 항목별 연구단체 회원의 70% 이상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해당 항목별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6) 언론보도 및 가점

연구단체 명의로 세미나 활동 및 연찬회 등을 포함한 연구활동 전반에 대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보도된 실적에 대하여 10점을 부여한다.

- 지방지 기준 7건 이상 10점, 5건 이상 8점,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 방송·중앙지 보도 1건 이상일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시 신문 및 인터넷 등의 스크랩 내용이 있어야 한다.

(7) 연구활동의 합계점수

세미나 등의 연구활동 부문 합계점수는 30점 만점으로 하되, 가점 5점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

Ⅲ. 보칙사항

1) 동점자의 순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다득점 순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입법활동 점수

(2) 연구활동 점수

(3) 연구보고서 항목 중 '경기도에의 유용성'점수

2) 실적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1) 의원연구단체는 우수 추천 대상에서 다음 년도에 연구활동비 등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2) 평가결과 하위 3개 단체는 다음 년도에 연구용역비를 감액 지원할 수 있으며, 연속 2회 평가 하위 3개 단체는 연구용역비를 다음 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지원 제외할 수 있다.

(3)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대상 및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0.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항목	항목별 평점		실적	평가	비 고
			단 위	평 점			
연구보고서 (35)		연구의 창의성	A~D등급	8~2			
		내용의 우수성	A~D등급	8~2			
		연구의활용가능성	A~D등급	9~3			
		경기도에의유용성	A~D등급	10~4			
소 계							
입법 활동 (35)	제정조례안	제정 완료		35			최대 35점
		제정중		34			
	전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 완료		33			
		전부개정중		32			
	법령 개정안	법령개정안 제시		33			
	일부개정 조례안 (결의안 등 채택포함)	개정(채택)완료		31			
		개정중		30			
	정책제안	정책제안 제시		25			
소 계							
연구 활동 (30) *가점 별도 (5)	세미나 · 포럼 · 연찬회 개최(10)		1회 개최시	10			해당 항목에 회원의 7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외부전문가 참여시 가점 1점
	보고회 개최 (8)	착수보고	실시	3			
		중간보고	실시	3			
		최종보고	실시	2			
	현지출장조사(현장방문 포함), 설문조사, 자체 간담회(2)		실시	2			
	연구활동 참여도 가점(3)		실시	3			
	방송, 신문 등 언론보도(10)		지방지	10			7건 이상 10점, 5건 이상 8점, 3건 이상 5점, 1건 이상 3점
	언론보도 가점(2)		방송, 중앙지	2			1건이상 가점2점
소 계							
합 계							

○ 연구보고서 등급별 점수

- 연구의 창의성·내용의 우수성 A(8점), B(6점), C(4점), D(2점)
- 연구의 활용가능성 A(9점), B(7점), C(5점), D(3점)
- 경기도에의 유용성 A(10점), B(8점), C(6점), D(4점)

○ 연구활동 별도 가점(5점)

- 해당항목에 회원 70%이상 참여(2점), 외부전문가 참여(1점), 방송·중앙지 보도(2점)

별표2

연구보고서 평가표

○ 연구단체명 :

- 연구과제명 :

세부 평가항목	평 가 의 견	평가등급	평가점수
계			
연구의 창의성 (8점)			
내용의 우수성 (8점)			
연구의 활용가능성 (9점)			
경기도에의 유용성 (10점)			

※ 연구보고서 등급별 점수

- 연구의 창의성 : A등급(8점), B등급(6점), C등급(4점), D등급(2점)
- 내용의 우수성 : A등급(8점), B등급(6점), C등급(4점), D등급(2점)
- 연구의 활용가능성 : A등급(9점), B등급(7점), C등급(5점), D등급(3점)
- 경기도에의 유용성 : A등급(10점), B등급(8점), C등급(6점), D등급(4점)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 성 명 : (서명)

12.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

[시행 2025. 9. 19.] [의회예규 제21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규칙의 공포 사무와 훈령·예규의 작성 및 발령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7., 2025.7.15.>

제2조(준용)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과 「경기도의회 입법지원사무처리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17.>

제2장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7.2.17., 2025.7.15.>

② 법제과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병행하여 시· 군이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2025.9.19.>

[제목개정 2025.7.15.]

제4조(입법예고기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5일로 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2025.7.15.>

제5조(입법예고 절차) ① 각 부서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과장에게 입법예고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안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개정 2025.7.15., 2025.9.19.>

② 법제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도의회 공고번호를 부여받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7.2.17., 2025.7.15., 2025.9.19.>

[제목개정 2025.7.15.]

제5조의2(의견제출 방법 등) ①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동일 조례안에 대하여 1인 1회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입법예고를 의뢰한 부서로 송부한다.

[본조신설 2025.7.15.]

제6조(입법예고서류의 보존)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된 서류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법제과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5.7.15., 2025.9.19.>

제3장 의회규칙의 공포

제7조(공포명의) ① 의회규칙의 공포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 <개정 2017.2.17.>

② 법제과장이 의회규칙의 공포안에 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공포문에 의장의 서명을 동시에 받는다. <개정 2025.9.19.>

제8조(공포문의 작성) 의회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공포방법) 의회규칙은 도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제10조(공포절차) ① 디지털의사과장은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가 의결한 의회규칙안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법제과장에게 공포를 의뢰한다. <개정 2017.2.17., 2025.9.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회규칙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 의결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의장결재를 받은후 법제과장에게 공포를 의뢰한다. [신설 2017.2.17.] <개정 2025.9.19.>

③ 디지털의사과장으로부터 의회규칙안을 접수한 법제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17.2.17., 2025.9.19.>

④ 법제과장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의회규칙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도 홍보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를 요청한다. <개정 2017.2.17., 2025.9.19.>

제11조(공포번호 부여 등) ① 의회규칙의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의회규칙의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제4장 도의회 훈령 및 예규

제12조(훈령· 예규의 표기) ① 훈령은 「규정」으로 표기한다.

② 예규는 「지침」으로 표기한다.

제13조(발령명의) ① 훈령 및 예규의 발령은 의장 명의로 한다.

② 각 과장이 훈령 및 예규의 발령안에 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발령문에 의장의 서명을 동시에 받는다. <개정 2025.9.19.>

제14조(작성부서 등) ① 훈령 및 예규안의 작성은 해당 업무의 소관 과장이 한다. <개정 2025.9.19.>

② 훈령 및 예규안의 문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작성된 훈령 및 예규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제과장은 이를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5조(발령절차) ① 각 과장은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 또는 예규의 발령안 원본을 법제과장에게 이송하여 발령을 의뢰한다. <개정 2025.9.19.>

② 법제과장은 각 과장으로부터 접수한 발령안에 발령번호를 부여한 후 도 홍보담당부서로 송부하여 도보에의 게재를 요청한다. <개정 2025.9.19.>

제16조(발령번호 부여 등) ①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②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훈령과 예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④ 발령번호 부여대장은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한다.

제5장 공포 및 발령 서류의 보관

제17조(원본과 부속서류) ① 의회규칙의 공포원본(의장 직인이 날인된 공포문을 말한다)과 발령원본(의장 직인이 날인된 발령문을 말한다)은 기타의 부속서류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② 공포원본 및 발령원본에의 직인 날인은 「경기도의회의장」의 장자가 직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공포원본과 발령원본은 의회규칙, 훈령, 예규별로 구분하여 공포일자 또는 발령일자 순으로 편철한다.

④ 공포·발령과 관련된 기타 부속서류에는 공포원본 또는 발령원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편철한다.

⑤ 기타 부속서류는 의회규칙, 훈령, 예규별로 구분하여 공포일자 또는 발령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서류철 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제18조(공포·발령 서류의 보존) ① 공포원본·발령원본은 영구보존문서로 하고, 기타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의회규칙의 공포 및 훈령·예규의 발령관계서류는 법제과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5.9.19.>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제21호, 2025.9.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치분권 관련 정책 발굴,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치분권 관련 도민 의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 및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5.7.>

② 위원장은 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1명씩 추천하며 공동부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며, 공동총괄추진단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자치분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

다. 자치입법권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마.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관한 사항
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사. 자치분권 도민의식 제고 및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개정 2025.5.7.>
가. 정부 및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및 관계기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다.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사항
마.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7.>
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사목에서 이동 <2025.5.7.>]
3. 인사행정 분과위원회 [신설 2025.5.7.]
가. 지방의회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다. 감사제도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
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마.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3호에서 이동 <2025.5.7.>]
가.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개편 및 지방재정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마.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8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법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정책자문단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관계 공무원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촉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8.7.>

[제목개정 2023.8.7.]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7. 18.] [경기도조례 제8546호, 2025. 7. 1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정책 실효성을 확대하고 경기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경기도의회에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은 공동단장 2명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동단장 등) ① 공동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단장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단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단장은 추진단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단 운영의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원발의 조례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원발의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원발의 조례 시행 진단, 권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조례 추진 관리카드 등을 통한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
6. 추진단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추진단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공동단장은 추진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공동단장은 추진단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① 추진단의 심의안건은 공동단장과 위원이 제출한다.

② 심의안건은 추진단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단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간사)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포상 등) ① 추진단은 매년 1회 의원발의 조례 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은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②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 사업 추진 우수부서 및 실무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지원) 경기도의회 의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의원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경기도 주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의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5.5.7.>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5.7.>

제3조(비치자료) 도서관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비치한다.

1. 행정간행물 및 행정자료
2. 각종 법령집, 자치법규집, 예규집
3.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4. 도서, 잡지 및 정기간행물(월간지, 주간지 및 일간지 등)
5. 향토자료 및 참고문헌
6. 의회 의정활동 기록
7. 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
8. 그 밖에 활용 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

제4조(관리 운영) ① 도서관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1. 자료의 수집, 보류, 보관, 폐기에 관한 사항
2. 비치 자료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배치한다.

제5조(자료 수집) ①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1.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출자·출연 기관의 자료는 납본에 의하여 수집한다.

2. 중앙부처, 타 시·도 연구기관, 공공단체, 그 밖의 단체 발행자료는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

②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관리와 분류) 자료는 전산화된 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한다.

1. 국내외 일반도서와 행정자료, 시청각자료 : 한국십진분류법(KDC)에 따라 분류
2. 그 밖의 자료 : 이용과 관리가 편리하도록 분류

제7조(자료의 점검) ① 도서관의 담당직원은 다음 사항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 상황
2. 자료의 대출 상황
3. 자료의 배열 상황
4. 해충 발생 및 훼손 상황
5. 실내 청소 및 화기 상태

② 사무처장은 다음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보존과 대출 자료의 회수 실태
2. 폐기대상 자료의 색출

제8조(자료의 이관·폐기 및 제적) ①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보존 장소가 협소하여 보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열람·대출 대상과 시간)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대상은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 및 도민으로 한다.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가 개회 중일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열람 장소)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과 반납)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대출 회원증을 도서관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도서관 자료의 대출 한도 및 기간 등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대출 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반납요구서의 반납요구 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대출자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 자료를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이를 반

납하여야 한다.

⑤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기 전에는 다른 자료를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대출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일단 도서관에 반납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① 열람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과 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자료
2. 정책자료 및 희귀자료
3. 그 밖에 열람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② 대출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회의록
2. 귀중 도서, 시청각자료,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3.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제13조(변상)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한 사람은 현품 또는 자료구입 만큼의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무처장이 그 책임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변상 절차) ① 제13조에 따라 분실되거나 훼손된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현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비매품인 경우와 동일한 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유사한 자료나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자료 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료의 변상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상자는 자료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자가 자료구입 만큼의 금액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자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구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을 의회사무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도서관 운영)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이용 편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열린 도서관운영) 사무처장은 도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열린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

부칙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9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경기도와 시·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기도보, 도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개정 2023.7.18.>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① 의장은 법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및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신설 2023.7.18.]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제1호에서 이동 <2023.7.18.>]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2호에서 이동 <2023.7.18.>]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7.1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2.] [경기도조례 제8247호, 2025.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2022.1.6.>

제2조(검사위원의 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0.>

②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9.06.18.]

③ 검사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18.]

[제목개정 2024.1.10.]

제2조의2(검사위원 선임 의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 결산처리 일정의 협의와 함께 검사위원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① 검사위원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도지사와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검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5.1.2.>

[전문개정 2016.1.4.]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4.>

③ 제1항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20., 2016.1.4., 2022.1.6.>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2020.01.13.>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1.4.>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1.4.>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11., 2016.1.4.>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3.11.11.]

⑥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1.4.>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4.>

제5조(겸직금지와 결격) ① 검사위원은 도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01.13.>

[전문개정 2016.1.4.]

② 도와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4.>

③ 도 및 교육청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다수 의견을 제출한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6.1.4.>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으면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그 의결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4., 2022.1.6.> [후단삭제 2022.1.6.]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6.1.4.>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신설 2013.11.11.] <개정 2016.1.4.>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1.10.20.][제목개정 2016.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4.>

1. 세입과 세출의 결산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도와 교육청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6.1.4.>

③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20.] <개정 2016.1.4.>

제8조(검사의 협조) 도지사와 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6.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결산검사의견서(이하 "검사의견서"라 한다)는 검사위원이 작성한다.

② 검사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1. 계산의 잘못 여부
2.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3.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4. 개선·권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검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검사위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검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실무지원 임시 전담조직 구성 등 결산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려면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

제10조(실제비용 보상)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4.1.10.]

② 제1항의 실제비용 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단서삭제 2025.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

1. 결산검사 시작일 전 사전교육에 참여한 경우
2.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⑤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5.1.2.>]

[전문개정 2016.1.4.]

제11조 삭제 <2016.1.4.>

제12조 삭제 <2016.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사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제10조 관련)

구분	금액
수당	200,000원/1일
여비	45,000원/1일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회 의장 (인)

2.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자(이하 "자문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의회 의원 <개정 2021.3.16.>
2. 의회사무처 <개정 2021.3.16.>

② 자문의뢰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2.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2021.3.16.>
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기금운용계획·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2. 3년 이상 개업 중인 세무사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도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5. 도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6. 그밖에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임한 사무가 있는 경우 그 사무의 종료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3.16.>

제5조(고문의 운영) 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예산분석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9.26.>

② 의회 의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제6조(자료관리) 예산분석과장은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전문개정 2021.3.16.]

제7조(자문료의 지급) ①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②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에게는 해당 월에 1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1. 서면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6.]

부칙 <2025.9.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경기도조례 제8652호, 2025. 9.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 계획안 분석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주요시책 사업 재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 재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전문개정 2024.10.11.]

제3조(구성) 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13명(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예산·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3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분석과장이 된다. [신설 2021.5.20.]
<개정 2025.9.26.>

[제2조에서 이동 <2024.10.11.>]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0.11.>]

④ 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2024.10.11.>]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안·결산 제출시기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11.>]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1.]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5.20.]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8652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5. 27.] [경기도조례 제8486호, 2025.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지원관 임용, 복무,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을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 및 의회사무처장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
6.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7.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8.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행사의 참석· 발언 또는 기고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 지원
9.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1.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
12.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13.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정책지원관을 선정하여 모범정책지원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5.5.7.>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의회 분석요구 및 회답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5. 9. 19.] [의회예규 제21호, 2025. 9.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분석 및 회답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요구”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원이 도정 및 교육 정책 등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석회답”(이하 “회답”이라 한다)이란 분석요구에 대하여 분석한 사항을 회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정지원과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19.>

1.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책과제 및 연구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의회 쟁점 안건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 재정지원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요구권자) 위원회 또는 의원은 도정 및 교육 정책 등에 관하여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요구방법)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이 분석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제목
2. 요구의 내용
3. 활용계획
4. 요구자 및 연락처

제6조(접수 및 분류방법) 분석요구서를 접수한 의정지원과장은 접수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분석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7조(요구서의 보완요구 및 반려) ① 의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권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1.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2. 요구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요구의 내용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요구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② 의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요구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요구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본다.

제8조(요구의 철회 등) ① 요구권자는 요구를 변경 또는 철회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요구 변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정지원과장은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회답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철회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9조(회답의 방법 및 기한) ① 분석회답서를 송부할 때에는 읽기 전용의 전자문서(PDF파일 등)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모사전송 또는 방문으로 회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답의 기한은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20일로 하되, 회답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공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요구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를 거쳐 회답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정지원과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회답 기한 내에 회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권자와 협의하여 회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0조(회답의 원칙) 회답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1. 호응성 : 요구자의 의도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것
2. 정확성 :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바탕을 둘 것
3. 간결성 : 가능한 압축적이고 짧게 작성할 것
4. 명확성 : 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5. 객관성 :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
6. 중립성 : 이념적·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함을 견지할 것

제11조(회답의 제한) ① 의정지원과장은 회답의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답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1. 국가기밀에 속하거나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 소요 등의 사유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5.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관심사항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의정지원과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19.>

② 의정지원과장은 회답의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회답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회답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회답제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요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 요구권자가 제2항에 따른 회답제한 의견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정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정지원과장은 회답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요구권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9.19.>

④ 요구권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기도의회 의장은 회답제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요구권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출처의 명시) 회답을 작성하는 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 ① 요구에 대한 회답으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회답을 작성한 의정지원과에 귀속된다. <개정 2025.9.19.>

② 요구권자는 제1항의 저작물을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의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저작물이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4조(외부전문가 활용 등) ① 의정지원과장은 회답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의정지원과장은 요구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15조(협조의무) 위원회·의원 및 의정지원과장은 회답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이 지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해당 회답의 요구권자 및 주요내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회답내용의 비공개) 회답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른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요구권자가 회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였거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3. 원본이 공개된 자료의 번역물에 해당하는 경우
4. 외국의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미 해당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자료의 관리) 의정지원과장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석요구와 회답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부칙 (기구 조정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기도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제21호, 2025.9.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시행 2024. 5. 16.] [경기도조례 제8058호, 2024. 5. 16.,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적·효율적·효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이란 주민자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통 주체 상호 간 활발한 대화를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통 주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를 말한다.
3. “소통 분야”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2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주체 간의 정책형성 과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통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소통 주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마다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경기도의회 소통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경기도의회 소통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의장이 소통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소통 주체 간 정례적·체계적 소통 지원 방안
2. 도민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보 제공 및 활성화 방안
3. 도의원 대상 소통 교육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소통 과정을 통해 발굴된 소통 내용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에게 권고하고, 권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위촉한다.

1. 도의원 및 시군의회 의원
2. 경기도 및 시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소통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통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통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전담부서)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방안 연구, 위원회 지원, 관계자들 간의 소통 관련 요구 취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 2025. 8. 12.] [경기도조례 제8581호, 2025.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2.5.11., 2019.7.1., 2022.1.6.>

제2조(사무처) ①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두며, 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2.5.11., 2025.8.12.>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1., 2025.5.7.>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8.12.]

1. 의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2. 의회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의 지원
3.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지원
4.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의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의회의 의원외교활동 등 교류협력 지원
7.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의회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9.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의장 및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의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7.1.>

[전문개정 2001.6.11.]

제4조(교섭단체의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직원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한다.
<개정 1995.6.15., 2014.2.28.>
[본조신설 1995.3.13.]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2.1.6.]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 2014.10.21.>
[전문개정 1998.9.28.] [제목개정 2011.3.29.]

제7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21.>
[제목개정 2011.3.29.]

제8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01.6.11.][제목개정 2011.3.29.]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8581호, 2025.8.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처장 1명과"를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두며, 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2. 의회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의 지원
3.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지원
4.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의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의회의 의원외교활동 등 교류협력 지원
7.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의회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9.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의장 및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2.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8. 12.] [경기도규칙 제4159호, 2025. 8.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25.1.31., 2025.8.12.>

제2조(사무처장) ①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7.1., 2025.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제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두고, 의정국 밑에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4.3.21.] <개정 2024.7.18., 2025.1.31., 2025.8.12.>

② 의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인사과장·언론홍보과장·디지털의사과장·법제과장·의정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공간정보화과장·예산분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5.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2항에서 이동 <2025.8.12.>] <개정 2025.8.12.>

④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별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4.9.24., 2019.7.1., 2023.3.3., 2024.7.18., 2025.8.12.> [제2항에서 이동 <2017.12.29.>] [제3항에서 이동 <2025.8.12.>]

제4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문서보안과 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3.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2024.7.18.>
4.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7.18.]
5.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사무처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24.7.18.>

6. 의전과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8.12.>

8.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9.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련 사항 <개정 2019.4.19.>

10. 의원에 대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항

11. 물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개정 2025.8.12.>

12. 삭제 <2025.8.12.>

13. 국내외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4. 민원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5. 청원 접수 분류와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6.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7.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8.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9. 지역상담소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20. 서울사무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5.8.12.>]

<개정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제5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공무원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평정, 평가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보수·연금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일하는 문화 개선, 신규공무원 적응 지원 등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 직원의 복무(비상근무 및 당직 관련 제외)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반부패·청렴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13.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14.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15.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16.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7.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본조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5.8.12.]

제6조(언론홍보과) 언론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언론(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3. 간행물과 의정백서 발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4.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5. 삭제 <2022.1.13.>
6.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8.12.>
8.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9. 미디어홍보 전략기획 및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출입기자 취재지원 및 브리핑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13.>
12. 삭제 <2022.1.13.>
13. 삭제 <2025.8.12.>
14. 삭제 <2025.8.12.>
15. 도민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전문개정 2019.4.19.]
[제5조에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5.8.12.]

제7조(디지털의사과) 디지털의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 2025.8.12.>

1. 회기운영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정기회·임시회의 소집공고와 의사진행을 위한 지원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3. 본회의장의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4. 의원의 대외업무참여에 관한 협조(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섭단체와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청가(請暇)에 관한 사항
7.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참관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처리와 의결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9. 의안의 접수, 회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10. 삭제 <2018.10.1.>
11. 각종 위원회 의안의 처리와 회의상황의 종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12. 삭제 <2020.6.19.>
13. 회의록의 작성·발간 및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14.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개정 2022.1.13.>
15.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6. 의안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7. 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9. 경기도의회 사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20. 경기마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21. 삭제 <2025.8.12.>
22. 삭제 <2025.8.12.>
23. 삭제 <2025.8.12.>
[제6조에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5.8.12.]

제8조(공간정보화과) 공간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사 시설 기획에 관한 사항
2.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무처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의 영상·음향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회 인터넷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제9조(법제과) 법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삭제 <2012.3.5.>
2. 삭제 <2012.3.5.>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조사·분석·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정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에 관한 사항 등
6.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발의 안건 등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이나 검토에 관한 사항
9. 지방의회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0.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11.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12. 의회관련 쟁송업무의 처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6.30.] <개정 2010.7.1.>
13. 삭제 <2017.9.29.>
14.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5.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6. 의정지원정보센터(도서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7.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제10조(예산분석과) 예산분석과장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3.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4. 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개정 2020.6.19.>
5.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개정 2020.6.19.>
6.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2020.6.19.>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9.기타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10.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9.]

[본조신설 2012.3.5.]

[제9조에서 이동 <2018.10.1.>]

[제목개정 2025.8.12.]

제11조(의정지원과) 의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지원관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3. 정책지원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책 제안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6. 교육청 소관 민원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7. 삭제 <2025.8.12.>

[본조신설 2025.1.31.]
[제목개정 2025.8.12.]

제12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5.>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3.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5. 소속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6. 소속위원회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7.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8. 그 밖에 소속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23.3.3.]

1. 광역의회 발전방안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및 교육행정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정 및 교육행정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및 도민단체 등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원교육, 연찬회, 워크숍,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섭단체 일반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8. 교섭단체 등이 요청한 정책현안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특별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개정 2012.3.5.> [제2항에서 이동 <2023.3.3.>]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 [제11조에서 이동 <2025.1.31.>]

[제목개정 2012.3.5.]

부칙 <2025.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31.] [경기도조례 제7474호, 2022. 10.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도민의 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5.,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입법예고 등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실·국·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전문개정 2013.2.25.]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13.2.25.]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2.25.]

④ 주관 실·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2.25.] <개정 2013.2.25.>

⑤ 법무 업무담당 과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실·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 실·국장은 입법예고문을 도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 업무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경기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실·국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 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 실·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 실·국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⑤ 주관 실·국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5.]

⑥ 주관 실·국장은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3.2.25.] <개정 2018.10.1.>

⑦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제7조(공청회) ① 주관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제3장 삭제 <2012.5.11.>

제8조 부터 제11조 삭제 <2012.5.11.>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2조(공포방법 등) ① 자치법규는 경기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5.1., 2015.4.30., 2018.10.1.> [단서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군의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조례의 공포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13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제14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경기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경기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1.11.8., 2018.10.1.> [단서개정 2022.10.31.]

②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22.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 6. 9.] [경기도규칙 제4152호, 2025.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의 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실·국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② 관계 실·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2025.6.9.>] <개정 2025.6.9.>

③ 주관 실·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2025.6.9.>] <개정 2025.6.9.>

제4조(조례·규칙 공포번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록한다. <개정 2015.3.6., 2025.6.9.>

부칙 <20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경기도조례 제749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12.2.>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경기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

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12.2.>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투입이 필요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5.4.30.>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의안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후단개정 2022.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3. 20.] [경기도조례 제7929호, 2024.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3.13., 2022.1.6.>
   가. 삭제 <2022.1.6.>
   나. 삭제 <2022.1.6.>
   다. 삭제 <2022.1.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회의원이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

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도의회의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도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회 협력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2.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3.2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8.>

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8.> [단서신설 2020.10.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20.10.8.]

제11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10.8., 2024.3.20.>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929호, 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31.] [경기도규칙 제3878호, 2019. 10.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①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17.>

② 보상금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망 및 장애·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7.]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전문개정 2017.7.17.] <개정 2019.10.31.>
2. 장애·상해의 경우 :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및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전문개정 2017.7.17.]

③ 도지사는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①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78호, 2019.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경기도 법제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5. 6. 9.] [훈령 제1600호, 2025. 6. 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입안 및 처리절차, 의견조회 및 보고, 공포·발령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3. “훈령”이란 윗기관이 아랫기관에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재의요구”란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 또는 응급 복구 경비를 줄이는 경우
   라. 「지방자치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재의 요구 지시한 경우
6. “입안”이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7. “발의안”이란 해당 사무의 소관 부서에서 자치법규등을 입안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관계 서류를 말한다.
8. “원안”이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후 도지사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관계서류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규율범위) ① 조례는 도의 고유사무와 국가가 도에 위임한 사무에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2. 비용부담 및 예산수반사항
3. 도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행정기구 및 자문기관의 설치, 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도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8.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개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4조(규칙의 규율범위) ① 규칙은 도지사의 고유사무와 국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국가위임사무의 재위임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개별 법령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2장 입안 절차

제5조(입안 유의사항) ① 자치법규등을 입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 초안을 작성한다.

② 자치법규등은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등의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 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제6조(발의안 작성) ① 발의안은 별표 1의 자치법규등 입안 시 검토사항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관계, 제정·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소관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은 소관 실·국·본부장, 중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보내 온 참고 자치법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문서로 한다.

제7조(사전협의 및 의견조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되, 승인신청은 소관 실·국·본부장 등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 심사
2. 「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감수(監修)
4.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④ 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작성된 발의안을 해당 사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발의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조례나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발의안과 함께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시군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시군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도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의 소관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자치행정과장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의 장은 검토결과를 발의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⑨ 자치법규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그 밖에 자치법규등의 입안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자치법규등 사무의 세부처리절차에 따른다.

제8조(재의요구 절차) ①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담당업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발의한다.

② 소관 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법무담당관이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하거나 법무담당관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③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는 재의요구안을 제9조에 따른 발의안의 심사에 준하여 법무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재의요구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별표 2의 자치법규등 사무의 세부처리절차를 따른다.

⑤ 도지사의 결재를 마친 재의요구안은 조례안의 인쇄 및 제출 절차의 예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3장 발의안 등의 심사

제9조(발의안의 심사) ① 법무담당관이 발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등의 입법형식의 적정성 여부
2.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의 완료 여부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합 여부

② 자치법규등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초안심사 :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참고하여 작성한 초안을 법무담당관이 심사하는 단계
2. 본심사 : 소관 부서에서 초안심사, 사전협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친 후 작성한 최종안을 법무담당관이 심사하는 단계

제10조(참고 자치법규안의 심사) ① 도에서 작성한 조례 또는 규칙의 참고 자치법규안을 시군에 통보하려는 때에는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는 법제업무 담당 사무관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한다.

제4장 보고

제11조(조례안의 보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개폐상황 보고에 도의회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안의 보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결재가 끝난 규칙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개폐상황 보고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군 자치법규 사전보고) ① 법무담당관은 시군이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부서가 없거나 법무담당관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 자치법규 검토결과의 회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접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

보할 수 있다.

제15조(재의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에 따른다.

제16조(제소결과의 보고)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에 따른다.

② 판결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제5장 공포·발령 및 원안 등의 관리

제17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도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되면 소관 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공포여부를 법무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발의하여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자치법규등의 공포·발령) ① 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려는 때에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③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훈령·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④ 훈령·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19조(원안 등의 관리) 자치법규등의 원안 등의 보존·보관 방법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자치법규등 정비 및 법제 교육

제20조(자치법규등의 정비) ① 자치법규등의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른 입안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자치법규등의 정비 대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등의 제정·개정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 사항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반영 사항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등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중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

당 자치법규등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법제교육)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등 법제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법제지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자치법규등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22조(자치법규 시스템의 구축·운영) 도지사는 경기도민 등에게 자치법규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자치법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자치법규등 전산정보의 관리) 도지사는 자치법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와 현행 자치법규가 대법원의 무효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자치법규 시스템에 그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25.6.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치법규등 입안 시 검토사항(제6조제1항 관련)

검 토 사 항
Ⅰ 자치법규등 제·개정 등의 필요성
1. 조례(또는 규칙, 훈령, 예규)로 제·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전부개정(또는 일부개정, 폐지 등)이 적절한가?
Ⅱ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 상충성
1. 개정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과 조항은 정확한가?
2. 일부개정의 경우 개정 외의 부분에서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
Ⅲ 입법의도의 명확성
1.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항호의 배치순서는 적절한가?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하였는가?
Ⅳ 시행일 등 부칙규정 적정성
1. 조례 시행시기와 시행규칙의 시행시기가 일치하도록 조치하였는가?
2.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규정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는가?
3.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등 관계자치법규의 동반개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Ⅴ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준수성
1. 사전협의 절차는 이행하였는가?
2. 관계 부서 의견조회는 하였는가?
3.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는가?

별표 2

자치법규등 사무의 세부처리절차(제7조제10항 및 제8조제4항 관련)

순서	구 분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조례	규칙	훈령·예규	비고
1	방침결정	소관 부서	◦ 소관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그 방침이 경미한 사안은 소관 실·국·본부장의 전결, 중요한 사항 및 재의요구안은 도지사 결재	○	○	○	
2	초안작성	소관 부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작성				
3	초안심사	법무 담당관	◦ 조문형식, 법규용어, 한글맞춤법, 구성체계, 표현의 적절성, 내용 등의 실질적 심사				
4	사전협의	소관 부서 (과장결재)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과)	○	○		제·개정 한정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규제개혁과) ◦ 부패영향평가(감사총괄과) ◦ 국어책임관 감수(문화정책과) ◦ 인권영향평가(인권담당관) ◦ 조직과 관련된 사항(기획담당관) ◦ 예산이 수반되거나 수반이 예상되는 사항(예산담당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자치행정과)	○	○	○	
5	의견조회	소관 부서 (과장결재)	◦ 그 외 관계 부서와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해당 부서)	○	○	○	
			◦ 시군 자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시군 의견조회 결과(자치행정과)	○	○		
6	사전협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소관 부서 (과장결재)	◦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발의안에 그 결과를 첨부	○	○	○	
7	입법예고 및 결과반영	소관 부서 (실·국장 결재)	◦ 소관 실·국장 등의 전결로 입법예고 도보게재 의뢰 (20일 이상) *초일을 산입하지 않음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작성하여 도보업무 담당부서 및 법무 담당관에 송부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 등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발의안에 그 결과를 첨부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실시	○	○		
8	본심사	법무 담당관	◦ 소관 부서는 초안심사에서 변경된 내용과 사전협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후 심사 요구 ◦ 문제점의 도출 및 검토, 위법성 여부 중점 심사	○	○	○	
9	심의안 제출	소관 부서 (실·국장 결재)	◦ 소관 부서는 실·국장 등의 결재를 받은 후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				

순서	구 분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비고
10	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법무 담당관 (소관 부서)	◦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위원이 배석하여 질의에 답변 ◦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참조	○	○	○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 부서 및 각 실·국 주무부서에 통보				
			◦ 수정가결된 경우에만 소관 실·국장 등의 전결로 수정된 발의안을 소관 부서에서 법무담당관 으로 공포(발령) 의뢰		○	○	
11	최종결재	소관 부서	◦ 조례 발의안 및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도지사 결재	○			
		법무 담당관	◦ 규칙 · 훈령 · 예규 발의안에 대하여 도지사 결재 (공포 · 발령 병행)		○	○	
12	조례안 제출	소관 부서	◦ 조례안을 인쇄하고, 의회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인쇄물 제출	○			
13	조례안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 소관 실 · 국장 등이 상임위원회에 제안설명, 질의에 답변 ◦ 질의 · 토론 · 의결	○			
14	본회의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본회의	◦ 상임위원장이 심의결과 검토보고 ◦ 소관 실 · 국장 등이 질의에 답변 ◦ 질의 · 토론 · 의결	○			
15	조례안 이송·접수	경기도의회	◦ 의결된 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의회업무 담당부서 및 법무담당관으로 이송	○			
16	이송 조례안 공포여부 회신	소관 부서	◦ 도의회에서 조례가 이송되면 소관 부서의 장은 공포여부를 법무담당관에게 회신 ◦ 도지사가 발의하여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경우 제외	○			
17	공포전 보고	법무 담당관	◦ 조례공포안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보고 서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	○		
18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법무 담당관	◦ 법무담당관이 조례공포안을 작성함 ◦ 소관 부서는 경기도의회 이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례규칙심의회에 재의요구안 제출 ◦ 재의요구 시 소관 실 · 국장 등이 배석하여 질문에 답변	○			
19	공포안 결재	법무 담당관	◦ 법무담당관이 조례공포안 도지사 결재	○			
20	공포(발령) 번호 부여	법무 담당관	◦ 공포(발령)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발령)번호 및 일자를 기입	○	○	○	
21	도보 게재 및 공포(발령)문 시행	법무 담당관	◦ 법무담당관은 공포(발령)문을 도보업무 담당부서에 게재 의뢰하고, 도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발행 · 배포 ◦ 공고번호는 공포(발령)번호로 대체하고, 별도의 공고번호 미부여 ◦ 공포(발령)문을 시행하고 도 전체 부서에 공포사항 안내 ◦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공포사실 통지				

II

헌법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

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

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

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 3. 5.>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통합특별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통합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2026. 3. 5.>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26. 3. 5.>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3. 6. 7.>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

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
2.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26. 3. 5.>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3.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종전의 읍으로 환원하는 경우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4. 1.]

제2장 주민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 2026. 10. 15.]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

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21조제12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1조제1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 : 해당 감사 결과나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제4호 : 해당 이행 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⑥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 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2항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⑮ 법원은 제14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감사 청구에 연대 서명한 다른 주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⑯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3.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 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

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24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종이공보”라 한다)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공보(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③ 공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공보와 전자공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3절 권한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소집과 회기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개정 2023. 3. 21.>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절 회의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

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절 청원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절 의원의 사직 · 퇴직과 자격심사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절 질서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절 징계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에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26. 3. 5.>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한다.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1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 3. 5.>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 4명으로 한다.
3.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 3. 5.>

1.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시·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5.>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5절 교육 ·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

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50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

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

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절 행정협의회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1.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다.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4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 요구 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 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개정 2026. 3. 5.>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

제197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 3. 5.>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3. 5.>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포함된 규약에 대하여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제202조(규약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구성 지방자치단체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위치
6.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8.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및 의원의 선임방법
9.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조직, 운영 및 장의 선임방법
10.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1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3조(기본계획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절 운영

제206조(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8조(가입 및 탈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209조(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와 직원의 재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법률에서 시·도 또는 시·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

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

축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로 한다.

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그 밖에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다.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⑯ 법률 제211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한다.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7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㉑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㉒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

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㉓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㉖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㉗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㉘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를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를 "특별시·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㉙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㉚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와 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㉛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부속용지, 연접도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가 도로, 하천 등으로 나머지 지역과 현저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해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4.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과 주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요구서에 행정구역 변경조서 및 변경도 등을 첨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정 신청 요구를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신청 요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경계변경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2. 관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3. 관계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
4. 관계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
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경계변경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

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 시·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 읍·면·동

제9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명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③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과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검토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세부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9.]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과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서명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나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의 계산과 서명 요청 기간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따른다.

제14조(전자서명 요청절차)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려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주민감사청구대표자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방법을 포함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8세 이상의 주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③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한 사람이 그 서명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해야 한다.

제16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의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7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 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連署)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주무부장관 : 해당 부처,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2. 시·도지사 : 해당 시·도,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

②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청구요건 심사)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다.

제19조(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감사 청구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청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그 청구를 처리할 주무부장관을 지정하고, 그 주무부장관에게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 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감사 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가 끝나면 그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23조(공표 방법 등)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제20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9. 9.>

1.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공표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3. 일간신문

제24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2. 법 제21조제13항과 이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6항·제20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4.>

③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⑤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0. 4.>

제26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조례와 규칙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공고와 고시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공고 또는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의 고시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과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제31조(공포일) 법 제33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이 영 제30조에 따른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말한다.

1. 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신설·증설이나 용도폐지·변경

2.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해당 공공시설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

③ 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요 재산과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5조(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의회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참고인으로서 증언·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

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1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대리 출석·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① 지방의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① 법 제1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4조(사무인계) ① 법 제119조에 따라 퇴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그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 그 퇴직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

제65조(사무인계의 방법) 제64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에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 등 재산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 수입·지출의 현재 상태를 계산한 표) 및 잔액증명
4. 기획 중이거나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7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사무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제1항 또는 제1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70조(선결처분)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⑥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2024. 12. 31.>

1.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부이사관
2.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이사관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4.>

1. 매해 말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할 것

3.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

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7. 7.>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③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5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재무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하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은 분쟁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신청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법 제

1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나 같은 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제89조(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0조(간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9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9조(회장) 법 제170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한다.

제100조(회의) ① 행정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가 행정협의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협의회의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10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도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②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연합체의 명칭
3. 협의체·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6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의 양쪽이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당사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07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8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할 안건을 협의·조정하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법제처차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9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2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8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8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명한 경우
3. 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명령·처분에 대하여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4. 법 제18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5. 법 제188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한 경우
3. 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이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하거나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6. 법 제18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주무부장

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7. 법 제18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 제120조제1항 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20조제3항 및 제19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9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와 제1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

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해당 시·군·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2. 해당 시·군·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120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절차) ①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요청서에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한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등은 지체 없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특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례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 날부터 120일이 지났음에도 협의가 완료되

지 않았거나, 특별시장등이 특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지정 사실과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6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11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례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특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5년마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⑫ 제6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군·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군·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2조(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9조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특례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3. 그 밖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제123조 및 제124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④ 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 또는 복수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3조(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며,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③ 제122조와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4조(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특례심의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의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

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41>부터 <313>까지 생략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 교육자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제2장 삭제 <2016. 12. 13.>

제1절 삭제 <2016. 12. 13.>
제4조 삭제 <2016. 12. 13.>
제5조 삭제 <2016. 12. 13.>

제2절 삭제 <2016. 12. 13.>
제6조 삭제 <2016. 12. 13.>
제7조 삭제 <2016. 12. 13.>
제8조 삭제 <2016. 12. 13.>
제9조 삭제 <2016. 12. 13.>
제10조 삭제 <2016. 12. 13.>
제10조의2 삭제 <2016. 12. 13.>
제10조의3 삭제 <2016. 12. 13.>

제3절 삭제 <2016. 12. 13.>
제11조 삭제 <2016. 12. 13.>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 삭제 <2015. 6. 22.>

제13조 삭제 <2015. 6. 22.>

제14조 삭제 <2015. 6. 22.>

제15조 삭제 <2015. 6. 22.>

제16조 삭제 <2010. 2. 26.>

제17조 삭제 <2015. 6. 22.>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22조(교육감의 선거)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26.]

제23조(겸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13.>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21. 3. 23.>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 13.>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21. 1. 12.>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본조신설 2010. 2. 26.]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 3. 23.>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 3. 23.>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26., 2013.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개정 2010. 2.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⑦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1., 2010. 2. 26., 2021. 1. 12., 2021. 3. 23.>

1.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③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 2. 26.>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의안의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②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제출·심사·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29조의3(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 5. 11., 2021. 1. 12.>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11. 11.>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11. 11.>

④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11. 11.>

⑤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25. 11. 11.>

[제목개정 2013. 12. 30.]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 2025. 11. 11.>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 12. 20., 2021. 3. 23., 2025. 12. 23.>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영유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1. 3. 23.>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 3. 23.>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해당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3. 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6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 2. 26.>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5조(선거구)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13.>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14. 2. 13.>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그 추첨을 시작하는 시각까지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해당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

2. 13.>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은 그대로 둔다. <개정 2014. 2. 13.>

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본조신설 2010. 2. 26.]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8조의6,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 제85조, 제86조(제2항제2호 단서·제3호 및 제6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87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8조의2, 제10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제135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35조의2, 제146조, 제146조의2,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149조의2, 제151조부터 제159조까지,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66조의2, 제167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91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5조의2, 제266조부터 제270조까지,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1조의2, 제272조, 제272조의2, 제272조의3,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 제277조의2, 제278조, 제279조 중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9.>

②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의 벌칙 외의 규정 중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벌칙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 3. 23., 2022. 4. 20.>

1.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5호 중 "증명서류"는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2.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제3항 전단 및 제4항제1호의2 중 "증명서류"는 각각 "증명서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로 본다.

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4항제2호 중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국회의원후원회의 사무소"로 본다.

7. 「공직선거법」 제65조제9항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으로 본다.

8.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본다.

9.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교육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직무상의 행위,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10.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상장(부상은 제외하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본다.

11. 「공직선거법」 제14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감선거와 공직선거를 동시선거로 본다.

12.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3항, 제135조의2제2항·제4항, 제262조의2제1항, 제264조, 제266조제1항, 제267조제2항, 제268조제1항 본문, 제272조제1항·제5항 전단·제7항 전단, 제273조제1항의 "죄" 또는 "범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각각 포함하며, 「공직선거법」 제260조제1항 중 "제259조"는 "제25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본다.

13. 「공직선거법」 제18조제2항, 제269조 본문, 제270조, 제270조의2제1항의 "선거범"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71조제1항 전단, 제271조의2제1항, 제272조의2제5항, 제272조의3제1항·제2항·제4항의 "이 법"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2. 26.]

제50조의2(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23. 4. 18.>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8.>
1.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4. 18.>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8.>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3. 4. 5.]

제7장 삭제 <2016. 12. 13.>

제51조 삭제 <2016. 12. 13.>
제52조 삭제 <2016. 12. 13.>
제53조 삭제 <2016. 12. 13.>
제54조 삭제 <2016. 12. 13.>
제55조 삭제 <2016. 12. 13.>
제56조 삭제 <2016. 12. 13.>
제57조 삭제 <2016. 12. 13.>
제58조 삭제 <2016. 12. 13.>

제8장 벌칙 <신설 2010. 2. 26.>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13., 2019. 12. 3.>

[본조신설 2010. 2. 26.]

부칙 <법률 제21487호, 2026. 3.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교육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292호, 2026.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 6. 11.>

1.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 8. 9.>
4. 교육감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 6. 11., 2022. 8. 9.>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9.>

⑤ 삭제 <2022. 8. 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22. 8. 9.>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2016. 8.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 8. 2.>

③ 삭제 <2016. 8. 2.>

④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 8. 2.>

[제목개정 2016. 8. 2.]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 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본조신설 2010. 6. 29.]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개정 2026. 5. 6.>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③ 삭제 <2026. 5. 6.>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전문개정 2016. 12. 13.]

[제목개정 2026. 5. 6.]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6.>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29.]

[제목개정 2026. 5. 6.]

제7조 삭제 <2008. 10. 20.>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28.]

부칙 <대통령령 제36292호, 2026.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69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68조·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29.>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3. 29.>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이 영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급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장 시·도의 기구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시·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4. 3.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9조의2 삭제 <2024. 3. 29.>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시·도자치경찰위원회)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설치기준과 공무원의 직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 등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소방본부장·사업본부장에 한한다)·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국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으로, 담당관·과장은 팀장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이나 담당관·과장으로 본다.

제3장 시·군·구의 기구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2024. 3. 29.>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2024. 1. 16.>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그 밖의 시·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③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 5. 20.>

④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 5. 20.>

⑤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20.>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2025. 5. 20.>

1. 시·도의 경우 :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2025. 5. 20.>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6. 12. 30.>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6. 29.>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

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지방공립대학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는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는 교무처·학생처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대학의 교무처·학생처 등이나 사무국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22. 4. 19.>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과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개정 2022. 4. 19.>

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학생수·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8. 25., 2022. 2. 1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1. 총장·학장
2. 교수·부교수·조교수
3. 조교

제18조(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8.>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지구·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⑤ 시·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⑥ 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2. 4. 10.,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급 이상인 경우 시·도에서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2024. 1. 16., 2024. 3. 29.>

1. 한시기구 : 시·도 2급, 시·군·구 3급
2. 소속기관 : 시·도 3급, 시·군·구 4급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

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4. 1.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26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 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

로 보고,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1. 12. 21., 2012. 9. 21.>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
2. 삭제 <2013. 11. 20.>
3. 삭제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

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2. 16.>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직위 밑에 다른 담당관 직위를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 직위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담당관 직위의 직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위 및 직무, 임용예정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상당계급 등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2. 20.>

1. 시·도 : 3급 이상
2. 시·군·구 : 4급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실·국·본부 및 실·국(전년도 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한시기구는 제외한다)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4. 3. 29.>

[본조신설 2016. 12. 30.]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 8년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 10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29.]

제6장 보칙

제33조(시정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과 이 영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② 제1항과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24. 1. 16.>

제34조(조직분석·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분석·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⑤ 제4항에 따른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5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4. 3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제35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직이 균형되고 규모가 적정하도록 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 등 그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제목개정 2020. 3. 10.]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3.29.>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 4.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4. 30.>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9. 4. 3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제40조(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2019. 4. 30., 2024. 3. 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4. 30., 2024. 3. 29.>

[본조신설 2014. 3. 5.]

부칙 <대통령령 제36069호, 2026.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제4조(정원 책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課) 또는 담당관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분석·진단)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2.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3.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5.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6.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7.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⑥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분석·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2.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직분석·진단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분석·진단 계획의 수립
2. 조직분석·진단 기준 및 지표의 설정
3. 조직분석·진단 결과의 확정 및 동기 부여
4.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5. 조직관리 개선 권고안의 채택
6.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조직분석·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㉟ 부터 <64>까지 생략

8.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

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3조의2 삭제 <1981. 4. 20.>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12. 11.]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8. 12. 31.>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

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3. 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

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도의회의 사무처장,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8.>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21. 10. 8.>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2. 3. 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 3. 2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 7.>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본조신설 2012. 3. 21.]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

명한다. <개정 2021. 10.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 삭제 <1991. 5. 31.>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에 임용권자(시·도의회의 의장 및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8.]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 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지방의회의원 및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8.>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4.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3. 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5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4조제2항 단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檢證)이나 감정(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 3. 21.,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 5. 23., 2021. 6. 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1.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3., 2021. 6. 8.>

1. 심사청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⑧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21. 6.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①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본조신설 2011. 5. 23.]

제20조(결정의 효력)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소청 절차) 소청의 제기, 심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 12. 31.>

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 12. 31.>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2024.12.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10. 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5. 23.]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5조의4(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2021. 6. 8.>

②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 5. 18.>

③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2012. 3. 21.]

[제목개정 2021. 6. 8.]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제25조의6(차별금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2017. 7. 26., 2018. 3. 20., 2024. 12. 31.>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 5. 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4. 1. 7.>
⑤ 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23., 2012. 3. 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 삭제 <1981. 4. 20.>

제29조의2(전직)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8.]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4. 12. 3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10.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21. 6.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2. 12. 27.>

[본조신설 2014. 1. 7.]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8.>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7·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7·8·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2. 12. 11.>

③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임용예정직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 5. 23., 2021. 10. 8.>
⑤ 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직위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응하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그 직위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⑥ 시·도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⑦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8.>
⑧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9.>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수험자격) 각종 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35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은 그 합격자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③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④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⑤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그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⑦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 제3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8.>

③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의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또는 교육감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그 순위에 따라 직위별로 3배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추천받으면 요청한 인원을 선택하여 임용하고, 그 결과를 임명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추천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⑥ 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2022. 12. 27.>

1.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74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2024. 12. 31.>

1. 공개경쟁승진시험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1. 10. 8.>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임용권자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2024. 12. 31.>

⑥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시·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21. 10. 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2024. 12. 31.>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4. 12. 31.>

③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4. 3. 19.>

1.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

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④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4. 12. 31.>

1.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 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12. 29., 2021. 6. 8.>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의2 삭제 <1981. 4. 20.>

제41조의3 삭제 <1981. 4. 20.>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8.>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의5 삭제 <1981. 4. 20.>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5장 보수 <개정 2008. 12. 31.>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

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14. 1. 7.>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1. 5. 23.]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장 복무 <개정 2008. 12. 31.>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 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장 신분보장 <개정 2008. 12. 31.>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8. 10. 16., 2022. 12. 27., 2024. 12. 31.>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12. 12. 11.]

제62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6. 5.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나.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다. 예산이 감소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5. 제65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6.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5. 18., 2015. 12. 29., 2017. 7. 26., 2021. 6. 8., 2024. 12. 31., 2026. 6. 2.>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

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2. 11., 2020. 1. 29.>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9., 2018. 3. 20., 2021. 6. 8.>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5.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6.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2. 12. 11.>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3.]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5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 12. 31.>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22.>

② 임용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4. 3. 1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보충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⑥ 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개정 2018. 10. 16.>

⑦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⑧ 공무원은 제3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8. 12. 31.]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8.>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

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8.>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장애·분만·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장 징계 <개정 2008. 12. 31.>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8.>

③ 삭제 <2021. 6. 8.>

④ 삭제 <2021. 6. 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

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0. 3. 22.]

[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69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

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 29.]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7.,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4. 1. 7., 2015. 12. 29.>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2. 29.>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14. 1. 7.>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4. 1. 7.>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4. 3. 19.>

⑦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4. 3. 19.>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

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21. 6. 8., 2024. 3. 19.>

⑨ 삭제 <2021. 6.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0. 8.>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22.>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 6. 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장 능률 <개정 2008. 12. 31.>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0. 8.>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5조(훈련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80조(국가공무원과의 교류) ①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에 상응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거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1. 5. 23.>

③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경력계산을 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시·군·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12. 31.]

제81조의2(수수료)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2장 벌칙 <개정 2008. 12. 31.>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 1. 14.>]

제83조(벌칙) 제42조·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12. 31.]

[제82조에서 이동 <2014. 1. 14.>]

부칙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9.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 5. 29.>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 삭제 <2016. 5. 29.>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2025. 11. 11.>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8. 4.]

[법률 제13283호(2015. 5. 13.)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2017. 12. 26., 2025. 4. 1., 2025. 12. 30.>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도시철도법」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공항시설법」
8. 「신항만건설 촉진법」
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3. 「지방공기업법」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택지개발촉진법」
1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본조신설 2014. 5. 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4조 삭제 <2020. 6. 9.>

제15조 삭제 <2016. 5. 29.>

제16조 삭제 <2016. 5. 29.>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7조의2 삭제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5. 1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3. 8.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 2025. 10. 1.>

1.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8. 1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29., 2023. 8. 16.>

[본조신설 2011. 8. 4.]

[제목개정 2023. 8. 16.]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8. 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7. 1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27조의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29.]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4.]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12. 31., 2021. 12. 7., 2026. 2. 5.>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 5. 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 2. 20., 2026. 2. 5.>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시·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법률 제18546호(2021. 12. 7.)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 2026. 2. 5.>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2024. 2. 20.>

[본조신설 2014. 5. 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3. 4. 11.]

제30조 삭제 <2014. 5. 28.>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의2 삭제 <2021. 1. 12.>

제32조의2 삭제 <2021. 1. 12.>

제32조의3 삭제 <2021. 1. 12.>

제32조의4 삭제 <2021. 1. 12.>

제32조의5 삭제 <2021. 1. 12.>

제32조의6 삭제 <2021. 1. 12.>

제32조의7 삭제 <2021. 1. 12.>

제32조의8 삭제 <2021. 1. 12.>

제32조의9 삭제 <2021. 1. 12.>
제32조의10 삭제 <2021. 1. 12.>
제32조의11 삭제 <2021. 1. 12.>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14. 5. 28.]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3. 4. 11.>]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23. 4. 11.>]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본조신설 2014. 5. 28.]

[제37조의3에서 이동 <2023. 4. 11.>]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6. 9.]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8.]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장 결산

제51조 삭제 <2016. 5. 29.>

제51조의2 삭제 <2016. 5. 29.>

제52조 삭제 <2016. 5. 29.>

제53조 삭제 <2016. 5. 29.>

제53조의2 삭제 <2016. 5. 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 삭제 <2016. 5. 29.>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재정위기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3.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1. 3. 8.]

[제목개정 2018. 3. 27.]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2023. 8. 16.>

[본조신설 2011. 3. 8.]

[제목개정 2018. 3. 27.]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3. 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1. 3. 8.]

제56조 삭제 <2023. 8. 16.>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5. 28.]

[제목개정 2015. 5. 13.]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본조신설 2014. 5. 28.]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5. 12. 29.>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8(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의9(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장 수입

제61조 삭제 <2016. 5. 29.>

제62조 삭제 <2016. 5. 29.>

제63조 삭제 <2016. 5. 29.>

제64조 삭제 <2016. 5. 29.>
제65조 삭제 <2016. 5. 29.>
제66조 삭제 <2016. 5. 29.>

제7장 지출

제67조 삭제 <2016. 5. 29.>
제68조 삭제 <2016. 5. 29.>
제69조 삭제 <2016. 5. 29.>
제70조 삭제 <2016. 5. 29.>
제71조 삭제 <2016. 5. 29.>
제72조 삭제 <2016. 5. 29.>
제73조 삭제 <2016. 5. 29.>
제74조 삭제 <2014. 5. 28.>
제75조 삭제 <2016. 5. 29.>
제76조 삭제 <2016. 5. 29.>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 삭제 <2016. 5. 29.>
제78조 삭제 <2016. 5. 29.>
제79조 삭제 <2016. 5. 29.>
제80조 삭제 <2016. 5. 29.>
제81조 삭제 <2016. 5. 29.>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 5. 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5. 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 5. 2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 5. 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 5. 28.>]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 5. 28.>]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 삭제 <2016. 5. 29.>

제90조 삭제 <2016. 5. 29.>

제91조 삭제 <2016. 5. 29.>

제92조 삭제 <2016. 5. 29.>

제93조 삭제 <2016. 5. 29.>

제94조 삭제 <2016. 5. 29.>

제95조 삭제 <2016. 5. 29.>

제13장 보칙

제96조 삭제 <2016. 5. 29.>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제14장 벌칙 <신설 2014. 5. 28.>

제97조 삭제 <2021. 1. 12.>

제98조 삭제 <2021. 1. 12.>

부칙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28., 2020. 4. 28., 2025. 12. 2.>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제2조 삭제 <2016. 11. 29.>

제3조 삭제 <2016. 11. 29.>

제4조 삭제 <2016. 11. 29.>

제5조 삭제 <2014. 11. 28.>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 11. 28.>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28., 2025. 12. 2.>

1.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 40억원
2.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 20억원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4. 28.>

④ 삭제 <2020. 4. 28.>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4. 2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4. 28., 2021. 12. 1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4. 28.>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8.>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납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6. 11. 29.>

제28조 삭제 <2016. 11. 29.>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

제30조의2 삭제 <2014. 11. 28.>

제30조의3 삭제 <2014. 11. 28.>

제30조의4 삭제 <2014. 11. 28.>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5. 12. 30.>

[제목개정 2014. 11. 28.]

제35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 한다) 상정 안건과 관련된 중앙관서로서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미리 지정하는 중앙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1. 9., 2025. 12. 30.>

② 삭제 <2014. 1. 17.>

③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7., 2024. 1. 9.>

④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2024. 1. 9.>

[전문개정 2012. 1. 31.]

[제목개정 2024. 1. 9.]

제35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1.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 9.>

④ 위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5. 10. 6., 2017. 7. 26., 2024. 1. 9.>

⑦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9.>

[전문개정 2014. 1. 17.]

[제목개정 2024. 1. 9.]

제35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부차관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부담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위기관리에 대해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9.]

제35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통보한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 17.]

제35조의5(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 ① 법 제27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3. 9. 26.>

1. 국내·국제경기대회 및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

가. 시·도 : 30억원

나. 시·군 및 자치구 : 10억원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6. 28., 2017. 7. 26.>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총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35조의5는 제35조의7로 이동 <2014. 11. 28.>]

제35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 등) ①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는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평가항목, 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27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6.>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4. 11. 28.]

제35조의7(지방세 감면의 제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3. 3., 2021. 12. 16.>

1.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기재된 수납액
2. 해당 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과세 적용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당 연도의 지방세 특례 적용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할 때 1천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0. 6., 2017. 7. 26., 2020. 3. 3.>

1. 2017년까지 : 100분의 15
2. 2018년 : 2017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3. 2019년 : 2017년과 2018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4. 2020년 이후 :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3.>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2010년 감면 결산액인 3조4천775억원 초과분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20. 3. 3.>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액

[본조신설 2012. 1. 31.]

[제35조의5에서 이동 <2014. 11. 28.>]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1. 일반조정교부금 :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2. 특별조정교부금 :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③ 일반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8. 29.>

④ 삭제 <2016. 8. 29.>

⑤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8. 29.>

[제목개정 2014. 11. 28.]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 3. 3., 2020. 12. 31., 2021. 12. 31.>

1. 특별시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2. 광역시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같은 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같은 장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

②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다.

③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37조 삭제 <2021. 7. 13.>

제37조의2 삭제 <2021. 7. 13.>

제37조의3 삭제 <2021. 7. 13.>

제37조의4 삭제 <2021. 7. 13.>
제37조의5 삭제 <2021. 7. 13.>
제37조의6 삭제 <2021. 7. 13.>
제37조의7 삭제 <2021. 7. 13.>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장 예산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29.]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3. 2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전문개정 2014. 11. 28.]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본조신설 2011. 9. 6.]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7.>

1. 시·도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7.>

1.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도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 1. 7.>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전문개정 2024. 1. 9.]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4로 이동 <2024. 1. 9.>]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본조신설 2024. 1. 9.]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2024. 1. 9.>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8.]

[제41조의2에서 이동 <2024. 1. 9.>]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8. 10. 20.>

제44조 삭제 <2014. 11. 28.>

제45조 삭제 <2014. 11. 28.>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28., 2020. 3. 3., 2021. 1. 5., 2021. 12. 31.>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 31., 2021. 1. 5.>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6.>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삭제 <2025. 12. 2.>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1. 28.]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8.]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

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28.]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3., 2011. 9. 6., 2012. 2. 29., 2014. 3. 5., 2025. 12. 2.>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삭제 <2025. 12. 2.>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23. 9. 26.>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15. 12. 4., 2023. 9. 26.>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4., 2023. 9. 26.>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2.>

제4장 결산

제59조 삭제 <2016. 11. 29.>

제59조의2 삭제 <2016. 11. 29.>

제59조의3 삭제 <2016. 11. 29.>

제60조 삭제 <2016. 11. 29.>

제61조 삭제 <2016. 11. 29.>

제62조 삭제 <2016. 11. 29.>

제62조의2 삭제 <2018. 12. 31.>

제62조의3 삭제 <2016. 11. 29.>

제63조 삭제 <2016. 11. 29.>

제63조의2 삭제 <2016. 11. 2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6., 2014. 11. 28., 2021. 12. 16., 2025.12.2>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

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8. 12. 31.]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2025. 12. 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2025. 12. 2.>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18. 12. 31.>]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18. 12. 31.>]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1. 시·도의 경우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1. 9. 6.]

[제65조의4에서 이동 <2018. 12. 31.>]

제66조 삭제 <2024. 1. 9.>

제66조의2 삭제 <2024. 1. 9.>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18. 12. 31., 2023. 9. 26.>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 11. 28.>

④ 삭제 <2014. 11.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신설 2016. 6. 28.>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

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본조신설 2016. 6. 28.]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도의 경우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6. 6. 28.]

제6장 삭제 <2016. 11. 29.>

제73조 삭제 <2016. 11. 29.>

제74조 삭제 <2016. 11. 29.>

제75조 삭제 <2016. 11. 29.>

제76조 삭제 <2016. 11. 29.>

제77조 삭제 <2016. 11. 29.>

제78조 삭제 <2016. 11. 29.>

제79조 삭제 <2016. 11. 29.>

제80조 삭제 <2016. 11. 29.>

제81조 삭제 <2016. 11. 29.>

제82조 삭제 <2016. 11. 29.>

제83조 삭제 <2016. 11. 29.>

제84조 삭제 <2016. 11. 29.>

제84조의2 삭제 <2016. 11. 29.>

제7장 지출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23. 9.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

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1. 28.>

제86조 삭제 <2016. 11. 29.>

제87조 삭제 <2016. 11. 29.>

제88조 삭제 <2016. 11. 29.>

제89조 삭제 <2016. 11. 29.>

제89조의2 삭제 <2014. 11. 28.>

제90조 삭제 <2016. 11. 29.>

제90조의2 삭제 <2016. 11. 29.>

제91조 삭제 <2016. 11. 29.>

제92조 삭제 <2016. 11. 29.>

제93조 삭제 <2016. 11. 29.>

제94조 삭제 <2016. 11. 29.>

제95조 삭제 <2016. 11. 29.>

제96조 삭제 <2016. 11. 29.>

제97조 삭제 <2016. 11. 29.>

제98조 삭제 <2014. 11. 28.>

제99조 삭제 <2014. 11. 28.>

제100조 삭제 <2016. 11. 29.>

제101조 삭제 <2016. 11. 29.>

제8장 삭제 <2016. 11. 29.>

제102조 삭제 <2016. 11. 29.>

제103조 삭제 <2016. 11. 29.>

제103조의2 삭제 <2016. 11. 29.>

제104조 삭제 <2016. 11. 29.>

제105조 삭제 <2016. 11. 29.>

제106조 삭제 <2016. 11. 29.>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3. 9. 26.>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17. 7. 26., 2021. 1. 5.>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제목개정 2014. 11. 28.]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

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

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 11. 15.>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제10장 삭제 <2016. 11. 29.>

제134조 삭제 <2016. 11. 29.>

제135조 삭제 <2016. 11. 29.>

제136조 삭제 <2016. 11. 29.>

제137조 삭제 <2016. 11. 29.>

제138조 삭제 <2016. 11. 29.>

제139조 삭제 <2016. 11. 29.>

제11장 보칙

제140조 삭제 <2016. 11. 29.>

제141조 삭제 <2016. 11. 29.>

제142조 삭제 <2016. 11. 29.>

제143조 삭제 <2016. 11. 29.>

제144조 삭제 <2016. 11. 29.>

제145조 삭제 <2016. 11. 29.>

제146조(재정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1. 28.]

[종전 제146조는 제147조로 이동 <2014. 11. 28.>]

제14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016. 11. 29.>
2. 삭제 <2016. 11. 29.>
3. 삭제 <2016. 11. 29.>
4. 삭제 <2016. 11. 29.>

5. 삭제 <2016. 11. 29.>

6. 법 제87조에 따른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삭제 <2016. 11. 29.>

[본조신설 2014. 8. 6.]

[제146조에서 이동 <2014. 11. 28.>]

부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부터 <176>까지 생략

1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 지방경비부담규칙)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2022. 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고, 별표에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②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7. 11. 14., 2007. 12. 31., 2021. 9. 7.>

제3조(기준부담률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1. 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 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 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 11. 9.,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9. 7.>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06. 3. 3., 2021. 9. 7., 2021. 12. 28.>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2022.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7., 2026. 6. 2.>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말한다.
2. “균형성장”이란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성장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성장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균형성장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성장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

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제목개정 2026. 6. 2.]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균형성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2.>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 6. 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 6. 2.>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시·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 6.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개정 2026. 6. 2.>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개정 2026. 6. 2.>

제12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6. 2.]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장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균형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균형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성장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균형성장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 6. 2.]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제목개정 2025. 5. 27.]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등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②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27.>

[제목개정 2025. 5. 27.]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단지 내에서의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협력 사업

(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

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6. 2.]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①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稅目)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주민참여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대응 효율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주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②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③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성장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통합에 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2.>

⑤ 제3항에 따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제1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

제4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45조(시·군·구의 통합절차)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제10호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에 따라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제2항에 따른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 실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을 적용한다.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 ① 제4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공동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① 공동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관한 권고안을 해당 공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를 의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와 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50조(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직접 사용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편성·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제51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지정할 때 통합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관할 구역의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부터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매년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의 요건·기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제54조(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의장 1명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의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의장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1명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장 및 부

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6조(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 선거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等價性)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5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운임과 요금에 대한 기준 및 요율은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 기준 및 요율에 따른다. 다만,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통합 전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용되던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폐지한다.

③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기준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에도 군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

④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부업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에 그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개정 2026. 3. 5.>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7. 1.] 제58조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제6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68조·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례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6. 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6. 2.>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특별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제11조의3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0. 1., 2026. 6. 2.>

②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6. 2.>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6. 2.>

1. 성평등가족부장관
2. 법제처장
3.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또는 균형성장 등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6. 2.>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2.>

⑦ 위촉위원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 지방시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8조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한다.

⑨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2.]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2.>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6. 2.>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5. 10. 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

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3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2026. 6. 2.>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2026. 6. 2.>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

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0. 1.>

제88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89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91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4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90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11.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

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1. 25.>

[제목개정 2025. 11. 25.]

제4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규모(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도계획, 부문별 계획 또는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8조(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

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4조(시·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시·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19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1.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유치 지원
3.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 인구감소지역등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제공·활용·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등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⑤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을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⑦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1. 25.]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21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3.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시·도지사의 의견
6.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후보 입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발전,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5. 시·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2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융복합단지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1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③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 요구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구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구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 및 처리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32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신청 대상 행정구역 및 사업 참여 경제주체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단기·중장기 기대효과
4.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으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실제 조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제 조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 실제 조사, 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3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개정 2025. 10.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 10. 1.>

⑧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29조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효과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41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 ①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8조제6항의 지역혁신지원센터, 제69조제4항의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제69조제5항의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로 하여금 초광역협력사업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이 조에서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해야 한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관계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43조의2(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조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배분 현황의 조사,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제44조(이양 권한·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제45조(시·군·구의 통합 건의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連署)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에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text{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frac{(A \times 6) + (B \times 2) + 1}{\text{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A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B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공동위원회의 회의)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0조(통합지원단)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소속으로 통합추진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공동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통합지원단의 단장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통합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경비 부담 및 수당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제49조에 따른 자문위원, 통합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공동위원회 운영세칙)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의 조정)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때에는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특화·전략사업, 교육·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시설·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제58조(예산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4년의 범위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1조(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12. 30.>

1. 기획예산처,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국가행정 및 국가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법 제63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지방시대위원장 또는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전문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5.>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도 내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군·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3.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은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은 지방시대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방시대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된 과제 추진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단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지방시대기획단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교류·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시대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이하 “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0. 1.>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3.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4.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5.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7.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8.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업무

9.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의 의견을 들어 담당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30.>

1.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2.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3.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지방시대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⑤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0조(수당 등)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기획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2조(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73조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방시대 종합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83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0.>

1.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

⑦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0.>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2조(권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

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3조제3항제1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1항, 제62조제3항제2호, 제76조 전단·후단,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93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6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4>부터 <313>까지 생략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제7조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2. 조례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 방법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임자를 포함한다)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서나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포함한다)나 그 사본

④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명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의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③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서명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서명을 한 청구권자가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에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2026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집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경기도의회사무처 법제과
법제과장 박경순
법제정책팀장 김회경
법제정책팀 주무관 조경진

문 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T. 031-8008-7284
F. 031-8008-7289

※ 본 자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